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

신윤정 박세경 최성은 김필숙 최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저출산정책팀

## 머 리 말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최근에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아동 양육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현재의 아동 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까지에는 수십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으며 그러한 세월동안 많은 논란과 시행 착오를 거쳐 오늘날의 정책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아동 양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서구 선진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의 발전 그리고 현재 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던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었지만, 유교적인 보수적 전통 문화와 외환 위기등 우리나라가 특수적으로 직면하였던 문제 역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데 원인으로 작용한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아동 양육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이러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에서 논의 되어 온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담론과 주요 쟁점 사항을 모색하고,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과 유형별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자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정책 사례를 고찰하고 이들 국가의 정책과 국내 정책을 정책의 기본구조, 정책 대상, 생애 주기별로 비교 분석하

였다. 이러한 외국 정책과의 비교 분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주리라 평가된다.

우리 나라에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지향점이 수립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운영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아낌 없는 조언을 제공해 주신 조남훈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검독을 맡아 주신 조애저 박사와 이삼식 박사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 목 차

|                                    |     |
|------------------------------------|-----|
| Abstract .....                     | 11  |
| 요약 .....                           | 13  |
| 제1장 서론 .....                       | 28  |
|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 28  |
|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 29  |
| 제2장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 .....       | 32  |
|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 .....      | 32  |
| 제2절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주요 쟁점 .....       | 36  |
| 제3절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 .....           | 50  |
| 제3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화 및 정책 사례 ..... | 78  |
|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화 .....         | 79  |
| 제2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별 추진 사례 .....   | 93  |
| 제4장 주요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 120 |
|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가별 분류 .....      | 120 |
| 제2절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 125 |
| 제3절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 146 |
| 제4절 일본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 164 |

|                                  |     |
|----------------------------------|-----|
| 제5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간 비교 분석 ..... | 170 |
| 제1절 기본 구조 비교 분석 .....            | 170 |
| 제2절 정책 대상별 비교 분석 .....           | 175 |
| 제3절 생애 주기별 비교 분석 .....           | 180 |
| 제6장 결론 .....                     | 190 |
|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     | 190 |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 196 |
| 참고문헌 .....                       | 198 |

## 표 목 차

|          |   |    |
|----------|---|----|
| 〈표 2- 1〉 | 한국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51 |
| 〈표 2- 2〉 |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 휴가 지원액               | 52 |
| 〈표 2- 3〉 |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 55 |
| 〈표 2- 4〉 |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 55 |
| 〈표 2- 5〉 | 기타 보육료 지원액                                | 58 |
| 〈표 2- 6〉 |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 60 |
| 〈표 2- 7〉 |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 60 |
| 〈표 2- 8〉 |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 61 |
| 〈표 2- 9〉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63 |
| 〈표 2-10〉 |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급 한도액                        | 64 |
| 〈표 2-11〉 | 농업인 영유아 교육비 지급 한도액                        | 64 |
| 〈표 2-12〉 |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금액                        | 67 |
| 〈표 2-13〉 | 현행 소득세제상의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 72 |
| 〈표 2-14〉 | 현행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 77 |
| 〈표 3- 1〉 | 자녀연령 및 자녀수별 평균양육비 및 가구 총소득 대비<br>자녀양육비 비중 | 83 |
| 〈표 3- 2〉 |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분담 비중(2001)               | 84 |
| 〈표 3- 3〉 |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설치 및 이용아동 현황(2005)             | 84 |
| 〈표 3- 4〉 | 보육서비스 이용 희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br>못하는 이유    | 85 |
| 〈표 3- 5〉 |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의 특징                          | 88 |
| 〈표 3- 6〉 | 자녀수별 핀란드 아동수당 급여수준(2004~2006)             | 95 |

|          |   |     |
|----------|---|-----|
| 〈표 3- 7〉 | 핀란드 아동수당제도 급여수준 및 수급규모(1993~2004) …                 | 95  |
| 〈표 3- 8〉 | 일반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등록 아동의 연령대별 아동 분포                    | 107 |
| 〈표 3- 9〉 | 스웨덴 공공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                          | 107 |
| 〈표 3-10〉 | 독일의 보육서비스 체계 ……………                                  | 112 |
| 〈표 3-11〉 |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환산표(2003) ……………                    | 116 |
| 〈표 3-12〉 |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감축(2003) ……………                  | 116 |
| 〈표 3-13〉 | 근로세액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                         | 118 |
| 〈표 4- 1〉 |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                              | 133 |
| 〈표 4- 2〉 |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지출한 비용 (2004~2006)                 | 133 |
| 〈표 4- 3〉 | 스웨덴의 아동 수당 및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원금액<br>(2007년 8월 현재) …………… | 136 |
| 〈표 4- 4〉 | 스웨덴의 부부 공유 다자녀 가족 보조금액(2007년 8월 현재) ·               | 137 |
| 〈표 4- 5〉 | 스웨덴의 주거수당 급여액 (2001년 1월 현재) ……………                   | 143 |
| 〈표 4- 6〉 | 프랑스 가족 수당의 개관 ……………                                 | 149 |
| 〈표 4- 7〉 | 프랑스의 자녀 양육 수당 수급 조건 소득 한도(2005년 연소득)                | 152 |
| 〈표 4- 8〉 |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소득 상한 …                      | 154 |
| 〈표 4- 9〉 |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월간 최대 지급액수                   | 155 |
| 〈표 4-10〉 | 프랑스의 인기받은 보육담당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                   | 156 |
| 〈표 4-11〉 | 개학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 ……………                       | 160 |
| 〈표 4-12〉 | 프랑스의 가족 보조금 소득 제한 조건 ……………                          | 162 |
| 〈표 4-13〉 | 편부모 수당의 월간 최대 액수 ……………                              | 163 |
| 〈표 5-1〉  | 각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별 비교: 수당 정책                    | 177 |
| 〈표 5-2〉  | 각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별 비교: 육아 휴가<br>관련 정책 ……………     | 179 |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2-1]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행 절차 .....       | 66  |
| [그림 2-2] |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시행 절차 .....     | 69  |
| [그림 3-1] | 아동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화 틀 .....          | 81  |
| [그림 4-1] | 가족 지원 정책의 유형별 모델 .....           | 121 |
| [그림 4-2] | 생계부양 정책 모형에 따른 가족 정책 지표 .....    | 123 |
| [그림 5-1] |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 구조 .....         | 171 |
| [그림 5-2] |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        | 172 |
| [그림 5-3] | 프랑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        | 173 |
| [그림 5-4] | 일본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         | 174 |
| [그림 5-5] | 한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         | 175 |
| [그림 5-6] |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 | 181 |
| [그림 5-7] | 프랑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 | 184 |
| [그림 5-8] | 한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  | 189 |



# Abstract

Directions for Childcare Polic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is study reviews childcare policy of foreign countries and compare it with Korean policy in order to suggest directions for childcare policy for Korea which is expected to suffer problems of aging society. This study contributes to solve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secure manpower by developing childcare policy.

First of all, it discusses necessity and points of disputes related to childcare in Korea. This study defines and classifies childcare policies and reviews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ies of Sweden and France which are famous about their childcare and family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the policy of Japan. Based on this, it compares foreign policies with Korean policy with respect to structure, recipient, and life-cycle point of view.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childcare policy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establish aim and goal of childcare policy in order to have competitive power in the future.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good quality childcare services and allowances and support work-life balanced policy.



##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은 출산률 회복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는 서구 국가의 정책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음
-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며 현재 국가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서구 국가에서 오늘날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까지는 수십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양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 사회에 건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제1장에서는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함
- 제2장에서는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과 그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한 고찰함. 어떠한 맥락에서 아동양육지원정책 담론이 출발하고 있는가를 모색하며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해 정리함
- 제3장에서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유형화하고 각 정책 유형별 사례를 검토함.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유형화 한 후 유형별 정책 사례를 검토함
- 제4장에서는 스웨덴의 국립사회보험청에서 지원하는 정책,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이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함
- 제5장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각 국의 아동양육지원 정책을 기본 구조, 정책 대상, 생애 주기별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 분석함
-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국내 아동양육 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지적함

## 제2장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

### 1.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

- 안으로 아동 양육 관련 지원이 모든 계층에 걸쳐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사회 양극화 및 가족해체 심화로 인해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며 이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제도 준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국내의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국면에서의 대응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음. 현재의 저출산 사회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인가, 출산율을 어느 정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선택·고려·평가되고 있는 현실임
  -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이 그 책임을 갖고 아동양육을 둘러싼 각 주체와 수요자의 적정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 관련 지원을 협소하게 사고할 것이 아니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고를 달리 할 것이 요청됨. 연령이나 계층 구분 없이 전체 아동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전반에 걸쳐 필요함

## 2.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주요 쟁점

- 우리사회의 양육부담을 분담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배하는 정책은 여전히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양상으로 사고되며 표출되는 경향이 있음
  -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 구도하에서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 내 여성의 모성권 및 양육지원방안 또한 형평성 있고 공공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아동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공히 인정하되, 양육 지원 정책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부담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양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질적 서비스가 보장된 영아보육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음
- 그간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가족의 기능 중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보살핌(돌봄)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 중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부과되어 있던 부분으로 변화된 젠더 관계와 맞물려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젠더관계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통의 이해 아래, 복지 주체를 재상정하고 새로운 주체를 고안함에 있어서 이는 여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여성’을 탈각시키는 조작적 작업이 필요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아니라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받는 개인이 없도록 사회의 직종과 직업, 근로조건,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야하며, 양육과 보육의 사회분담화로 행복하고 축복받는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임
- 아동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은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에서 차별이나 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규모와 분담정도를 섬세화 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줄여 초저출산이라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현재의 정부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혈연중심 가족과 정상 가족만을 상정한 지원과 제도들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와 다양한 가족 문화 가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정부의 정책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 또는 유지하는 결과를 초

래하지는 않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가치관 및 형태의 변화와 성역할의 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이 요청됨

### 3.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

-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크게 모성 휴가, 보육·교육·양육 지원, 주택 지원, 세제 지원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모성 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시 휴가와 함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유산·사산 보호 휴가 급여 지원, 육아 휴직 급여 지원이 있음
- 보육·교육·양육 지원은 보육료·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 지원, 입양아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 짐
  - 보육료·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만 3~4세아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기타(시간연장,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료 지원, 영아(0~2세) 보육 기본 보조금 지원
  - 농어업인 자녀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입양아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혜택 부여,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지급, 입양양육수당 지원, 공무원 입양 휴가제
- 주택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입주, 주택공급, 주택 자금 대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혜택 부여(2자녀 이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3자녀 이상), 주택 특별 공급(3자녀 이상),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3자녀 이상),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시 금액 한도 상향 조정(3자녀 이상)

- 세계 지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주로 소득 공제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 자녀 양육비 소득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자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 공제,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 제3장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유형화 및 정책 사례

- 본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지원 정책을 저출산 현상에 대한 구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개별 가정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함
- 아동 양육지원 정책은 자녀의 출산·양육에 따르는 직접비용의 감소 정책, 간접적 비용의 보전 방식, 고용지원측면에서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아동 양육지원 정책 가운데 직접적 양육비용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동수당, 양육부담의 간접적 보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조세감면제도, 그리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존재를 전제로 제공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임
  - 지급대상의 범위에 따라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와 사회부조형 아동수당제도, 그리고 고용관계에 기반한 아동수당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동발달계좌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 후 사회진출에 대비하여 교육자금, 기술습득, 자립기반 조성 등의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



- 비용을 마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 보육서비스는 아동이 그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 시간동안을 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조세감면제도들임
  -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별 추진 사례를 고찰하기 위하여 정책별로 대표적인 국가 사례를 고찰함. 아동 수당: 영국, 핀란드, 독일; 아동 발달 계좌: 싱가포르의 자산기초정책, 영국의 아동신탁기금, 캐나다의 교육저축프로그램, 미국의 아동투자 및 발달지원저축; 보육서비스: 스웨덴, 영국, 독일; 조세감면제도: 미국, 영국, 독일

#### 제4장 주요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본 장에서는 광범위한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과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의 정책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함
-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 혹은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저출산 정책을 펼쳐 온 일본의 사례도 고찰함

### 1.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스웨덴 가족 지원 정책은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소득조사(means-tested) 혹은 욕구조사(needs-tested) 수당 세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음
  - 보편적 수당: 아동 수당, 다자녀 가족 보조금; 사회보험: 육아 휴직 급여, 병간호휴가, 아동연금, 임신출산급부, 보육기간 연금권; 소득조사 혹은 욕구조사 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주거수당, 아동보호수당
- 아동 수당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정 거의 모두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그리고 적은 수의 자녀를 둔 가정과 많은 수의 자녀를 둔 가정 사이에서 재원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육아 휴직 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재정적으로 보상하려는 정책으로, 여성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남녀평등을 증진시키며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정에 남아 자녀를 돌봄으로써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병간호휴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혹은 아픈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잠시 머무르는 부모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임신출산급부는 임신 중에 태아에게 위험한 작업을 함으로써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소득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정책임
- 주거 수당은 소득 조사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 지급하는 수당제도임
- 한부모가족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지원을 하는데, 상호간에 이혼 합의를 보지 못한 부모에 대해 양육비를 책정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만성질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동보호수당,

보조자수당, 차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며, 만성질병 혹은 장애아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음

## 2.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임신부터 출산이나 입양, 양육, 교육 까지 부모들이 경제적인 근심 없이 애들을 낳고 키우는데 국가가 재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프랑스의 ‘가족수당금고(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가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과 함께, 경우에 따라 보조금도 지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자녀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아이의 출생 이전인 임신부터 시작되어 출산, 보육, 취학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데 자녀는 반드시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피부양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매우 유연한 피부양자 개념을 보여주고 있음
- 보육수당으로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일을 계속하면서 보육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지급되는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과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장애아 자녀를 키우고 보살피기 위해 지급되는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수당’ 등이 있음
- 또한 자녀들의 개학 시에 부모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해주기 위한 개학수당, 장애아의 교육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장애아 교육수당’ 등이 있음
- 이 밖에도 재원이 적은 가정의 주택보조금(이사특별수당, 주거개선을 위한 대출, 학생수당), 성인장애자 수당, 편부모 수당, 사회적응

을 위한 최소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다양한 수당 내용이 ‘가족수당’에 포함되어 있음

### 3. 일본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일본에서 아동수당제도는 미래 사회의 주체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을 도모하는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아동 양육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키는 소득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음
- 육아 휴직 제도는 육아 또는 가족간호를 하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신청 자격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아동이 1세에 이를 때 까지 희망하는 기간에 신청이 가능함
- 한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자립지원시책, 세제상 조치를 지원하고 있음. 소득 보장으로 아동부양수당지급, 국민연금지급, 후생복지자금의 대부, 과부복지자금의 대부가 있음. 세제상 조치로는 소득공제,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이자비과세제도가 있음

## 제5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간 비교 분석

### 1. 기본 구조 비교 분석

-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보육 서비스, 아동 수당, 육아 휴직의 세가지 기본 구조 하에서 소득수준, 자녀 연령, 가정의 특성, 자녀의 특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을 다양화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 외에 아동 수당과 육아 휴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육아 휴직, 병간호휴가, 아버지휴가, 임신출산급부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보육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스웨덴과 유사하지만 육아 휴직 측면에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아동 수당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입양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비교하여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임. 또한 수당 정책과 모성 휴가 정책의 혜택 범위도 프랑스와 스웨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적 지원이 보육 서비스 제공에 치우쳐져 있고 육아 휴가 정책은 기본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수당 정책은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 정책 대상별 비교 분석

-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평가됨
  - 우리나라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부모가 아닌 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어 수당 정책적인 성격에서 거리가 멀
- 스웨덴의 경우 각종 수당 정책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취약계층 등에 지급하는 수당은 프랑스 보다 다양하지 않음
- 프랑스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 계층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급

하는 수당은 부모가 직업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임신부 등에 특별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당 정책이 출산률 회복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입주권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주택 자금 대출에 있어서 우대 금리와 대출 상한액 상향 조정을 해주고 있어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프랑스와 스웨덴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출산 관련 휴가일수와 급여 수준은 프랑스,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육아 휴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웨덴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스웨덴, 프랑스,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에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음

### 3. 생애주기별 비교 분석

- 스웨덴의 경우,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정책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면서 취약 계층 혹은 다자녀 가정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음
- 보편적인 수당으로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2자녀 이상인 경우 다가족수당,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 연금,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 지원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금, 자녀가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수당을 지급함
- 육아 휴직 정책 역시 이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아버지 휴가, 임신출산 급부, 병간호휴가 등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를 띄고 있음

-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중복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반면, 프랑스의 경우 각 지원 정책간 중복적인 성격이 강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강함
  - 프랑스의 경우 특히 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가족지원정책은 다른 조건 없이 부양 자녀가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지원하는 정책,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의 세가지로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수당정책은 여성이 임신한 순간부터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가족 수당을 자녀 연령 20세가 될 때 까지 지급함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라면 보편적인 성격으로 소득 계층에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서 프랑스의 아동 수당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크게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 출산·육아 휴가, 입양 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보육료/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녀 연령 5세가 될 때 까지만 지급되며, 장애아인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5세 까지만 지원이 됨. 다만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 18세 까지 지원이 되고 있음
  - 육아 휴직은 과거에 자녀의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 최대 1년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08년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는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이 될 때 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음
  - 출산 전 혜택에 대해서는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한해 휴가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전후 휴가로서 산후에 45일 이상을 포함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6장 결론

-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의 지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미래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하여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극복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지향점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문화지체적인 측면에서 유도된 바가 적지 않으므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지향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소득층과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수당 정책 등 추가적인 지원이 요청됨
- 기본적인 수당 외에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당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 수당 지원 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육아 휴직 정책은 모성 보호를 위한 측면과 여성의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측면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별도의 휴가



-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 출생 후 영아와 산모의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추가적인 휴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됨
-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을 위해 육아 휴직의 급여 수준을 보다 높  
이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휴직 기간을 자녀 연령 3세에서 자녀가 보  
육이 필요한 연령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을 위한 정책은 많은 부처가 혼재되어 담당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 대한 정비가  
요청됨
    -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처가 일관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 수준이 변화되어야  
할 것임
    -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뿐만아  
니라 일가정 양립, 양성 평등적인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흥  
보가 필요함
    -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적극  
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최근까지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 혹은 장애아 등 주로 요보호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소득보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양육 지원이 이러한 요보호 대상 아동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형태로 모든 아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출산률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화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 증가에 따른 여성의 자아 실현의 욕구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같은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유래 없이 급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분위기에 비해 보수적인 전통이 이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회학적인 측면에도 그 원인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가와는 다른 측면에서 심화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관련한 세부 추진 사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1차 기간인 2006~2010년 동안 약 32조 746억원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지출할 계획이며, 특히 출산·양육 지원에 18조 8,998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은 출산률 회복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는 서구 국가의 정책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오랜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 문화

적인 특수성에 기초하여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확고한 국가적인 철학 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모성권 보호에 강조를 두어 풍부한 아동 수당과 가족 수당을 보편적인 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노동권 보호에 근거하여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휴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며 현재 국가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서구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갖가지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 오늘날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까지는 수십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양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 양육 지원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최근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이 나아갈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 사회를 위한 건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제1장에서는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

구 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과 그와 관련된 쟁점 사항을 고찰하였다. 국내 논의들의 지형과 제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맥락에서 아동양육 지원정책 담론이 출발하고 있는가를 모색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유형화하고 각 정책 유형별 사례를 검토하였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저출산 현상에 대한 구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개별 가정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직간접적 양육 비용 경감 정책과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지원 정책으로 유형화 한 후 유형별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표적인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육지원정책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 스웨덴의 국립사회보험청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이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각 국의 아동양육지원 정책을 기본 구조, 정책 대상, 생애 주기별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책이 보육서비스, 수당정책, 육아 휴가 정책 세가지 구도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살펴 보았으며, 정책 대상별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적용되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각 정책들이 여성이 임신하는 시점부터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대부분 18~20세)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 제2장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

###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 치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온 잔여적 복지의 특성을 가져왔다. 때문에 주요한 지원대상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나 시설보호사업, 서비스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양육과 보육지원 서비스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취약계층 이외의 대상을 위한 복지 지원은 미약한 편이었으며,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양육과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통합적 인식이나 공감대 형성 역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는 우리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시각이 취약계층을 위한 시혜적인 것으로 사고하게 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화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아동 양육 관련 지원이 모든 계층에 걸쳐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편적인 형태의 아동 양육 지원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며 그만큼 국가적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아동 양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 양육과 관련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아동 양육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아동양육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IMF 외환위기와 저출산·고령사회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 뿐만 아니라 가족문화와 개인의 생활상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젠더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적, 제도적 측면의 변화속도에 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되어 이는 한국 사회와 가족의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원인 동력이 되고 있다(손승영, 2007). 이렇듯 사회의 변화 발전 양상에 따라 가족의 정의, 범주, 가치, 구성 행위, 유형들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체계화가 시작된 것은 국가가 저출산·고령사회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양육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고, 때문에 이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되었다.

우리의 경우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전 국가의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은 여성의 육아 시간과 비용의 부담노력이라기 보다는 특정 계층에 제한된 역할과 기능만을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와 지원 방안,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접근을 매우 미흡하게 하고 있었다. 공보육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상교육의 성격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제공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보육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기반 위에서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민간보육의 수준은 보육욕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며, 보육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개별가족의 경제적 지위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보육의 질 등이 제한되었다.<sup>1)</sup> 우리의 경우 이러한 담론의 지형아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앞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이 양극화가 진행될 경우 우리 사회에 분열을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양극화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2년 현재 한부모가정의 빈곤율(27.7%)은 전체가구(9.8%)의 3배에 달하며 이혼가정의 68%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 향후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심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 위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령화시기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노동력인 아동이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노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해당 가족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빈곤의 대물림을 고착화시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제도정비는 시급히 요구된다.

국내의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국면에서의 대응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다. 어떠한 양육지원 정책이건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의 저출산 사회에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인가, 출산율을 어느 정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선택·고려·평가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결혼, 가족, 자녀 등과 관련된 개인 가치관의 변화 및 미혼율의 상승, 결혼 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등을 촉발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제도적·구조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며, 출산을 지연하고 기피하는데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즉

1)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 보호자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육(교육) 비용 부담' 57.7%,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미흡)' 23.0%, '긴급 상황 시 도와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 9.1%, '배우자 및 가족의 협조가 없어서' 8.5% 등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음에 역점을 두어 이의 해결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양육관련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박세경, 2006).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양육에 대한 국가적·시민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들의 경우만 보아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양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현금급여 방식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정당화 논리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또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양육지원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가적 시민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특히 복지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child benefits·family allowance)의 시작이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와 출산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한다면 부모의 소득이나 취업여부와 관련 없이 일정 연령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자녀양육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출산율이 상향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중산층도 자녀 양육부담으로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출산·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출생 이후 부모의 사회적 격차로 인한 차별이나 차이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열악한 계층에 대한 특별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비용지원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소득, 자

녀수 2인 이상, 농어업인 자녀, 장애아동에 따른 차등 보육·교육료를 지원할 뿐이다.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이 그 책임을 갖고 아동양육을 둘러싼 각 주체와 수요자의 적정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을 둘러싼 주체는 국가 사회 부모 아동이다. 각 주체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주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을 제고를 위한 양육 관련 지원을 협소하게 사고할 것이 아니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고를 달리 할 것이 요청된다. 아동에 대한 돌봄과 양육 비용의 부담 등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며, 일정 시점에만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여 출산과 양육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이나 계층 구분 없이 전체 아동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제2절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주요 쟁점

### 1. 모성권과 노동권의 양자택일에 대한 논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범주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sup>2)</sup> 자녀양육 지원정책은 출산율의 양적 제고를 위한 인구정책이나 소득재분배정책(예, 가족수당, 소득세공제), 또

2) 이경희 외(1996)는 가족복지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개입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을 다음의 3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둘째,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셋째,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이다.

는 자녀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족보호(입양 등)-피부양자의 지원적, 대리적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의 일부로 보아왔다. 이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잔여적, 소극적 그리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족정책이든 사회정책이든 커다란 정책 범주로서 선택이 되는 경우에, 모든 정책 영역, 즉 조세, 여성, 사회보장(사회복지), 인구정책 등도 자녀양육을 위한 가족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접근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가족정책의 범주로서 모성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성정책은 “임신·출산 및 양육과정에 관련된 사회정책”으로 정의된다. Kamerman & Kahan(1999)은 모성정책의 세 가지 핵심요소로 시간·비용·서비스의 분담을 제시한다. 출산하는 모(母)에게 노동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의 대체 그리고 복직이후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모성정책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결국 모성정책은 노동권과 모성권 두가지 권리를 기반으로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요구가 상호교차하고 있다.

노동권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위해 모성의 책임과 노동을 일정부분 가족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모성권은 노동자이면서 어머니로서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 모성의 권리와 책임을 위해 일정기간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성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는가에 따라서 두가지 방식의 해법이 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성권을 보장하게 된다면 “탈가족화”가, 모성권을 위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일정기간 독립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제공한다면 “탈상품화”의 차원으로 진행된다(홍승아, 2005).

이러한 논의에 따라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유산·조산·사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육아휴직,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입양휴

가,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은 포괄한다. 또한, 휴가기간, 휴가기간동안 급여 수준, 고용 보장 여부 등도 대상이 된다. 보육의 사회적 지원 형태로서 직접보조금, 간접보조금, 세금감면, 공보육, 유치원 의무교육,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등도 자녀양육 분담의 대상이 된다. 그 외 의료급여, 건강보호, 작업장내 보호, 비차별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아동 양육 지원에 관한 담론은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서비스하는가에 따라 대개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으로 일축될 수 있다. 이는 한국적 맥락과 그 특수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사회에서 성역할 구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전히 여성이 지고 있다는 데에 한국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다른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 지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현실은 남성/여성의 구분과 성역할 구분, 그로 인한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상도 달라지고 개인의 다양한 선택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 사회에서 여성 고유의 역할이었고, 여자라면 당연히 수행하여야 했던 일들(결혼, 임신, 출산, 양육)이 더 이상 자연적으로 선택되고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sup>. 한국 사회의 문제는 “변하려하지 않는 남성과 급격히 변하는 여성의 문제”이며, “성역할 고정관념의 위기”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한국 사회의 강한 가족주의 전통과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평성(gender equity)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가족 내 역할의 책임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은기수, 2005).

가족 내 역할의 책임과 부담은 자녀 양육부담은 물론 가사노동에 대한

3) 현모양처, 커리어우먼, 슈퍼우먼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결혼적령기를 넘기고 가임기 이후에 결혼을 선택하기도 하고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여성으로 살기도 하는 ‘개인’으로 사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담까지도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가부장적이긴 하였으나 이에 희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존재하였기에 유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강한 가족주의적 요소들은 더 이상 여성들에게 운명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남성과 비견될만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력 등의 인적 자원의 상승은 이를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책임과 부담이 과하여 힘듦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삶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고민은 하더라도 결혼과 가족 형성 행위, 출산과 출산으로 인한 양육부담 등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된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가족의 현실을 변화시켰으며, 성별분업의 규범은 이미 도전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전략은 출산 지연 또는 소자녀 출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의 제반 변화양상에 따라 일과 결혼 중 양자 택일을 하거나 일과 양육 중 양자택일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한편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노동과 양육(모성)간의 양립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재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출산과 양육을 중요한 사회보험(부모보험)으로 수용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모성과 노동의 양립을 복지모델의 중요한 기반으로 구축하여 노동과 양육에 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양육부담을 분담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배하는 정책은 여전히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양상으로 사고되며,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점차로 유연화 되는 글로벌 시장경제와 가족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성별 분업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전통적인 성역할을 재정의 함으로써 가족 내 역할의 남성 참여를 유도하고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재경, 2005).

더 이상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으로 양육분담 방식이 논의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서구복지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지구화와 탈규제화된 노동시장 그리고 표준가족 모델이 쇠퇴하고 있으며, 완전고용, 평생직장의 보장, 남성가장중심의 가족모형, 남성 1인 생계 부양자들은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노동권과 모성권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공사 영역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고 일과 가족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지 않는 정책과 제도는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일의 영역에 있어서 노동강도 또는 노동시간 등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녀양육을 위한 절대적 시간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만큼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수행해야 하는 여성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2인 생계 부양가구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요구는 남녀 누구도 노동시장의 조건과 양립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이재경, 2005). 노동시장에서 여성 취업에 대해 폐쇄적이며,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양육과 일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스페인 등 전통적인 가톨릭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불리한 환경으로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이 동시에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서 출산율과 취업률 모두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근로자의 기본적 복지욕구로 수용하는 노동시장의 인식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일과 가족의 이중 역할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은 더 이상 양육의 책임을 혼자 감당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이재경, 2005). 이는 노동시장의 분화와 다양화가 산업사회의 노동 중심적 가치와 남성노동자를 모델로 한 표준적 노동자상에 도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권과 모성권의 경합은 계층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학력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는 대가족 네트워크 내에서 또는 시장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해결하면서 노동권과 모성권을 동시에 지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들 여성들의 노동권과 모성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재경, 2005).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는 성별 분업을 기초로 한 일과 가족의 근대적 조합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시각은 여전히 노동시장과 가족을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며,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재경, 2005).

핵가족의 쇠퇴 및 여성노동참여의 일상화 등으로 이전의 일인부양자 가족모델에서 이인부양자(dual-earner) 가족모델로의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이인부양자가족모델에서 어머니와 노동자, 즉 모성권과 노동권은 더 이상 상호배타적인 역할이 아닌 병행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홍승아, 2005).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임신·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각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여성, 남성, 가정과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평등과 효율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요컨대,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 구도하에서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내 여성의 모성권 및 양육지원방안 또한 형평성 있고 공공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고려될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이혼, 사별, 한부모, 나홀로가족, 미혼부모가족, 입양가족, 동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이 포괄되어야 하며,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처우와 비경제활동인력의 양육지원기능 또는 양육지원서비스 수급필요성 등에 대해서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육지원정책은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이 동시에 보장되도록 함이며, 아동에게는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생 초기 공평한 출발을 지원하는 기본적 국가 정책이다. 선진국들의 양육정책은 불평등, 빈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핵심정책임을 일찍이 인식하고 국가의 양육지원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적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육아정책포럼, 2007). 이는 여성들이 일과 출산·양육을 양자 택일의 상황에 놓지 않고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으로 가지 않아야 할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공히 인정하되 양육지원 정책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부담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양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질적 서비스가 보장된 영아보육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공보육 국가들의 공적재정투자 규모는 매우 크다. 우리의 경우 2006년 GDP대비 0.35%에 그친데 비해 스웨덴은 1.7%(2004년), 프랑스는 1.0%(2004년)이다. 아동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아동 양육지원의 중요성과 국가 성장 동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의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모성권과 노동권의 양자택일 구도 하에 여성을 놓지 않는 국외 사례들의 경우를 감안할 때, 아동 양육 경제적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아동 보육·교육비의 지급, 보조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세혜택 뿐만 아니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아동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에 포함하여 본다면 현재 우리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방안과 비경제활동 인력의 양육지원기능 또는 양육지원서비스 수급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 2. 젠더 관계 변화에 따른 돌봄 노동에 대한 논의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면서 복지 제공주체의 측면에서 국가에 치중되었던 복지 자원 부담은 다른 주체들로 분산·위임되어 가족과 다양한 민간주체로 확대되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정보혁명, 지식기반경제의 등장, 지구자본주의의 세계화 등 거시 환경변화가 진행되었고, 이런 변화는 또한 인구고령화와 탈가부장주의 요구와 결합하고 전후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약화하면서 주체의 다각화를 보이고 있다(이혜경, 2004).

복지국가재편 과정의 핵심에서 젠더와 돌봄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수용한다면,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서 제시하는 변화된 패러다임은 주목할 만하다. 복지국가 재편론에는 기본적인 사회권보장을 기초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강화,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경쟁력 강화, 완전고용보다 유연성강화, 그리고 남성부양자가족모델에서 양성평등가족모델로 이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 21세기 경제의 지구화, 거버넌스의 변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대와 가족형태의 변화라는 큰 변화의 축이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대와 이러한 여성 역할의 변화로 인해 수반되는 다양한 변화들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구성 행위와 형태의 변화는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핵심적인 관점의 변화

를 요하는 것이다.

자녀양육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가족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고려한다면 양육부담의 과부하를 줄이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가족형태와 부모의 인적자원 등 제반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을 가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국가가 개입하거나,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해소한다하더라도 시장의 영역은 사적 돌봄(private care)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장혜경 외, 2005). 따라서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해결방안을 갖지 못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게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갖게 하고,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지 주체로서 가족 sector를 포괄하여 고려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전 지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gender 관계와 이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동, 개별 주체들의 행위 양식, 가치관 등이 변화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비단 가족이 안정을 잃어가고,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이 저하되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상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변화해 가기 때문이며, 가족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가족의 기능 중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보살핌(돌봄)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 중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부과되어 있던 부분으로 변화된 젠더 관계와 맞물려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살핌, 사회 복지의 부족 또는 공백, 미흡한 부분은 그 공백을 말없이 메꾸어 오던 여성들의 변화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녀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가족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여성의 일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된다. 즉, 여성의

책임을 덜어주고, 부담을 남성과 사회와 나누고, 비용을 서비스하는 것이라 사고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여성들이 잘 수행해 왔고, 잘 수행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왔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보살핌의 본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상정되어 왔으며 그럴 수 있도록 강화(empowering) 받아 왔고, 오랜 기간 수행해 온 know-how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잘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가 보살핌의 윤리를 훈련에 의해 습득 할 수 있으며, 전 사회의 구성원이 보살핌의 윤리를 체화(embodiment)하여 실현하고 그 책임을 나누고 보살핌의 보람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젠더관계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통의 이해 아래, 복지 주체를 재상정하고 새로운 주체를 고안함에 있어서 이는 여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여성’을 탈각시키는 조작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 주체로서의 가족을 사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공동된 이해 하에 일-가정의 양립, 평등한 일·출산·양육, 사회 복지의 분담주체로서의 가족, 안정을 되찾는 가족 등이 효과적으로 논의 되어질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아니라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받는 개인이 없도록 사회의 직종과 직업, 근로조건,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양육과 보육의 사회분담화로 행복하고 축복받는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은 양성 모두의 책임이고 양성이 직면한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라는 성별분업 체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가족(정상가족, 건강가족)을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모형이 잔존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어 양성 평등적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돌봄 노동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며 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보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러나 돌보는 이는 그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착취에 취약하게 하는 무거운 책임의 짐을 떠안게 된다(Nancy Folbre, 2001). 지금까지의 돌봄의 노동을 상당 부분 가족이 담당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만이 담당해 온 것이 문제다.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사회 속의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여성들이, 가족을 돌보는 주요한 책임을 떠맡기던 전통적인 노동 분업과 가족가치에 대해 재협상을 하기 시작했으며, 돌봄의 책임을 부당하게 지는 대신에 돌봄 노동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Nancy Folbre, 2001).

돌봄 노동을 남녀가 공평하게 나누고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분담(가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족 내 여성의 과부하를 줄이고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가족에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개별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위험을 경감하는 정도의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 가족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위험(관료주의와 비효율성, 비용 삭감의 시장압력)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회의 위기는 가족의 위기와 연관되며 또한 가족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로 이어진다.

### 3. 아동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경제적인 부담과 비용의 문제로 환원되어 사고되는 측면이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지위가 낮을수록 아동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 체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아동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은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에서 차별이나 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규모와 분담정도

를 섬세화 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줄여 초저출산이라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양극화는 소득계층별로 하위에 위치해 있는 경우의 아동 양육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아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한계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 방지임과 동시에 국가적인 손실로 볼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의 모든 사안을 가족성원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현대 사회 특히 핵가족 모델의 2인생계부양가족의 형태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자녀양육의 많은 사안들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직업으로 분업된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자녀양육 서비스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는데 구매력은 소득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1인자소득모형가족에서 남성의 소득만으로 필요한 자녀양육 서비스 모두를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소득 감소와 불안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제체제는 가족과 일상생활에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고용불안에 의한 가계 경제의 위축,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르는 시간적, 심리적 압력 등은 일상적인 가족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다(이재경, 2005).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비용이 남성 소득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이 자녀양육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돌봄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게 된다. 이와 같이 2인부양가족의 형태로 전환하여야 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모델에서 자녀 돌봄을 대신 해 줄 가족자원을 찾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sup>4)</sup>

따라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확보한 임금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돌봄서비스를 구매하고 차액을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예를 들어, 자녀를 위한 의료비, 의복비, 주거비 등)를 구매코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돌봄을 포기한 대신 얻어진 임금이 돌봄 서비스 구매 가격에 못 미치거나 그 차액이 아주 적어 다른 자녀양육서비스를 만족할 만큼 또는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sup>5)</sup> 한편, 여성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또는 돌봄과 양립이 가능하도록 특정한 형태의 일(예를 들어, 시간제근무 등)을 가지게 된다.<sup>6)</sup>

#### 4. 다양한 가정 지원에 대한 논의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한부모 가족, 비혼 동거가족, 동성애 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든 사회에 있어 출산 그 자체는 사회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지만 그 요구의 방향과 강도는 사회적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혼인, 자녀, 가족의 중요성과 그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적 기획으로서의 출산 장려는 출산 행위자의 개인 상황별 출산 수준의 차이,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가족제

- 
- 4) 고학력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는 대가족 네트워크 내에서 또는 시장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해결하면서 노동권과 모성권을 동시에 지키려고 시도한다.
  - 5) 주재선(2006)은 최근 3개월간(6-8월) 월 평균 임금기준(경제활동인구조사, 2005-2006)을 분석하여 정규직 남성의 임금(222.6만원)과 비정규직 남성(147.0만원)에 비해 정규직여성(137.5만원) 특히 비정규직여성(93.1만원)의 임금이 아주 낮다고 지적하였다.
  - 6) 1995년 여성취업자 중 59.6%가 비임금근로자이며 40.4%가 임금근로자이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0년 60.8%, 2005년 6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개념)의 비율은 1995년 57.2%에서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2000년 69.7%로 급상승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61.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연령별로 비정규직 비율은 20대 45.5%, 30대 59.0%, 40대 70.5%, 50대 76.2% 이다.

도 및 규범의 영향, 혼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의 다각적인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식’의 해결책만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쉬운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의 과정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제 상황(setting)들을 정상화 시키는 소위 ‘정상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념과 가족 제도, 혼인 문화, 출산 지형 등을 더 ‘건강’하게 만듦으로 회귀하는 방식인 것이다. 즉 소위 정상적인 가족, 출산, 성역할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구성된 가족, 출산, 성역할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규범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가족 개념과 형태가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혼인 밖에서의 출산은 여전히 낙태로 이어지고,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역시 자녀가 걸림돌이 되고 제한적인 입양 행태, 혈연 중심에 입각한 불임가족 지원, 동성 가족을 인정하지 않거나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거나 등의 상당히 단일한 가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가족 개념과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가족은 억압적일 것이고 차별의 온상이 될 것이다. 성역할 구분과 관련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가족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모든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감수성 훈련(돌봄에 대한 이해, 돌봄 공동체, 차이에 대한 감수성, 차별 감수성 등)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 즉 가족이 출산·자녀양육 분담 주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 가족 형태와 특정 성에 의한 출산·자녀양육만을 강화하거나 정상화하지 않는 인식이 상정된 분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sup>7)</sup>.

7) 가구들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서로 간에 의사친족적 연결망(fictive kin network)을 만들어 가구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하는 것도 가족의 기능 중 장점을 가족 바깥의 공동체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은아, 마경희, 2006).

정부 정책들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 및 자녀양육의 책임이 특정 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 및 가족 내 성평등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혈연중심 가족과 정상 가족만을 상정한 지원과 제도들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와 다양한 가족 문화 가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 모유수유 장려, 불임부부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은 생물학적 어머니 됨과 관련하여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 또는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 가치관, 가족 형태 및 성역할의 변화를 사회 전체가 인식한 속에서 가능하다.

### 제3절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크게 모성 휴가, 보육·교육·양육 지원, 주택 지원, 세제 지원의 네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모성 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시 휴가와 함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육·교육·양육 지원은 보육료 지원, 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 지원, 입양아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 주택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입주, 주택공급, 주택 자금 대출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제 지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주로 소득 공제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표 2-1> 한국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분야          | 내용   |
|-------------|--|
| 모성 휴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li> <li>- 유산·사산 보호휴가 급여 지원</li> <li>- 육아휴직 급여 지원</li> </ul>   |
| 보육·교육·양육 지원 | <p>&lt;보육료 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li> <li>-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li> <li>-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li> <li>-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li> <li>- 기타 (시간연장,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료 지원</li> <li>- 영아(0-2세) 보육 기본 보조금 지원</li> </ul> <p>&lt;교육비 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li> <li>-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li> <li>-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li> <li>-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li> </ul> <p>&lt;농어업인 자녀 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li> <li>-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li> </ul> <p>&lt;입양아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아동 의료급여 혜택 부여</li> <li>-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li> <li>-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지급</li> <li>- 입양양육수당 지원</li> <li>- 공무원 입양 휴가제</li> </ul> |
| 주택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혜택 부여 (2자녀 이상)</li> <li>-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3자녀 이상)</li> <li>- 주택 특별 공급 (3자녀 이상)</li> <li>-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 (3자녀 이상)</li> <li>-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시 금액 한도 상향 조정 (3자녀 이상)</li> </ul>   |
| 세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양육비 소득 공제</li> <li>- 다자녀 추가 공제</li> <li>-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소득 공제</li> <li>-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li> </ul>   |

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2006)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2006: 출산과 육아,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모성 휴가

### (1) 산전후휴가

사업주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통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간 최대 405만원을, 대규모기업의 경우 30일간 최대 13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간 통상임금을 2회 지급하여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 받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30일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대기업의 경우 휴가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표 2-2〉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 휴가 지원액

| 구분       | 지급기간 | 지원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 최대 405만원 |
| 대규모기업    | 30일  | 최대 135만원 |

자료: 노동부(2007) “산전후휴가 급여제도”

## (2) 유산·사산 휴가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유산·사산 휴가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자는 임신주수, 자연유산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부여 위반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지는데,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21주 이내의 경우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27주 이내의 경우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된다. 유산·사산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급여신청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 (3) 육아 휴직 급여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180일) 가입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산전후 휴가를 제외한 10.5개월을 육아 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1세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나,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휴직기간 동안 육아 휴직 급여로서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절차로 육아휴직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2. 보육·교육·양육 지원

### (1)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이다. 보육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부모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에 매월 보육료를 일괄 신청하며, 시군구청장은 아동의 신청일(입소일)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전용 입금 통장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 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은 만 0세~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③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등이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2007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달리 측정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 1층~5층을 선정하고 있으며, 각 층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정부지원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표 2-3〉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 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 1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         |
| 2층 | 116만원이하     | 144만원이하 | 168만원이하 | 193만원이하 |
| 3층 | 165만원이하     | 184만원이하 | 197만원이하 | 217만원이하 |
| 4층 | 231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69만원이하 | 288만원이하 |
| 5층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표 2-4〉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비고              |
|----|---------|---------|---------|---------|---------|-----------------|
| 1층 | 361,000 | 317,000 | 262,000 | 180,000 | 162,000 |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
| 2층 | 361,000 | 317,000 | 262,000 | 180,000 | 162,000 |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
| 3층 | 288,800 | 253,600 | 209,600 | 144,000 | 129,600 | 정부지원단가의 80% 지원  |
| 4층 | 180,500 | 158,500 | 131,000 | 90,000  | 81,000  | 정부지원단가의 50% 지원  |
| 5층 | 72,200  | 63,400  | 52,400  | 36,000  | 32,400  | 정부지원단가의 20% 지원  |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②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 만 4세 이하의 둘째아에 해당된다.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첫째아가 취학 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정저소득층(1층) 및 차상위계층(2층) 보육료,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차등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까지 지원한다.

농림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70%)”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지원한다. 기타 보육료(시간 연장, 야간, 휴일, 시간제)에 대해서는 둘째아에 대한 지원이 없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수 3인까지 334만원 이하, 4인까지 369만원 이하, 5인까지 384만원 이하, 6인까지 411만원 이하이다. 소득인정액으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만0세는 181,000원, 만 1세 159,000원, 만 2세 131,000원, 만 3세 90,000원, 만 4세 81,000원이 지급된다.

### ③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아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만 5세아도 지원이 된다. 취학 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 아동이 만 4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만 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과 동일하다. 가구원수 3인까지 334만원 이

하, 4인까지 369만원 이하, 5인까지 384만원 이하, 6인까지 411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162,000원을 지급한다.

#### ④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 5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의 경우도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아(만 0세~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만 1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취학유예 및 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장애아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애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교사 대 아동비율 1 : 3을 준수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월 361천 원이 지원된다. 교사대 아동비율 1 : 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해당 반별 보육료 (만 2세이하의 정부지원 단가, 3세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를 지원한다.

## ⑤ 기타 보육료 지원

기타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일시적 이용), 24시간(일시적 이용), 휴일, 시간제 보육료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한다.

〈표 2-5〉 기타 보육료 지원액

|          | 단위: 원  |          |         |         |         |
|----------|--------|----------|---------|---------|---------|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 방과 후 보육료 | 81,000 | 81,000   | 64,8000 | 40,500  | 16,200  |
| 시간연장보육료  | 2,000  | 2,000    | 1,600   | 1,000   | 400     |
| 시간제 보육료  | 2,500  | 2,500    | 2,000   | 1,250   | 500     |
| 비 고      | 기준액    | 기준액 100% | 기준액 80% | 기준액 50% | 기준액 20% |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시간연장 보육료는 기준시간 초과(19:30~24:00)에 대한 보육료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당 2,000원을 지급한다.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로 한다. 야간보육 시간은 19:30~익일 7:30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야간 보육료 지원은 연령별 주간 정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24시간 보육료는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를 지원한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평일 보육료의 150%를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며 기준단가는 연



령에 관계없이 시간 당 2,500으로 동일하다.

⑥ 영아(0~2세) 보육 기본 보조금

0~2세 영아의 경우 위의 보육료 지원 외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 수에 따라 기본보조금이 지급된다. 0세는 292,000원, 1세는 134,000원, 2세는 86,000원이 지급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0~2세까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지원되며 보조금은 신청한 시설장에게 지급된다.

(2) 교육비 지원

정부의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은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 확인 절차를 통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고 유치원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받은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① 만 3~4세 차등 교육비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육 비용을 각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구 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과 월 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6〉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지원대상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 1층 | 법정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아동복지시설 만3~4세 아동 등 |         |         |         |
| 2층 | 차상위계층<br>최저생계비의 120%수준    | 116만원이하                                  | 144만원이하 | 168만원이하 | 193만원이하 |
| 3층 | 도시근로자 가구<br>월평균소득 50% 수준  | 165만원이하                                  | 184만원이하 | 197만원이하 | 217만원이하 |
| 4층 | 도시근로자 가구<br>월평균소득 70% 수준  | 231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69만원이하 | 288만원이하 |
| 5층 | 도시근로자 가구<br>월평균소득 100% 수준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표 2-7〉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단위: 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 1층 | 법정저소득층                   | 100% | 3세 | 53,000  | 180,000 |
|    |                          |      | 4세 | ”       | 162,000 |
| 2층 | 차상위계층<br>(최저생계비의 120%수준) | 100% | 3세 | 53,000  | 180,000 |
|    |                          |      | 4세 | ”       | 162,000 |
| 3층 | 도시근로자 가구<br>월평균소득 50%수준  | 80%  | 3세 | 42,400  | 144,000 |
|    |                          |      | 4세 | ”       | 129,600 |
| 4층 | 도시근로자 가구<br>월평균소득 70%수준  | 50%  | 3세 | 26,500  | 90,000  |
|    |                          |      | 4세 | ”       | 81,0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br>월평균소득100%수준   | 20%  | 3세 | 10,600  | 36,000  |
|    |                          |      | 4세 | ”       | 32,40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 ②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53,000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162,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구원수별로 소득 인정액은 상이하나 소득층별로 지원액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표 2-8〉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 소득인정액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안내”

③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도시가구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 자녀 중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3·4·5층”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둘 이상 취원하고 있는 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하여 차등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외에 연령별 1층 지원액에서 연령별 차등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상한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53,000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만 3세 90,000원, 만 4세 81,000원으로 하고 있다.

④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 중 특수 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 교육 대상 유아 전원이다<sup>8)</sup>. 특수 교육 대상 유아라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따라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를 말한다.

또한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 교육 대상 아동에게 1년에 한해 일반 유치원 취원시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더라도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취학을 희망하나 거주지 관내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8) 유아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 학급, 단설 공립 유치원 특수 학급, 유아 특수학교가 포함된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무상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90,000원이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361,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애 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이 유치원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 교육 대상 유아 유치원을 선정·배치한다. 특수 교육 대상 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은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 교육 대상자 학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시군구청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를 지원한다.

### (3) 농어업인 자녀 지원

####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m<sup>2</sup>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여성가족부 혹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타부처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타 부처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 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 2-9〉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 양축인  | 임업인  | 어업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li> <li>- 50,000㎡미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li> <li>-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li> <li>- 돼지,개 : 1,000마리 미만</li> <li>-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li> <li>- 토끼, 친칠라, 밍크 : 10,000마리 미만</li> <li>- 가금 : 30,000마리 미만</li> <li>- 양봉 : 300군 미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소유규모</li> <li>- 1,000,000㎡미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li> <li>- 어선이 없는 자</li> <li>- 무동력선 사용자</li> <li>- 90MT이하 동력선 사용자</li> <li>-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li> <li>•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li> <li>•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미만</li> <li>• 가두리 2.0ha미만</li> <li>• 축제식 10.0ha미만</li> <li>• 육상수조식 0.2ha미만</li> </ul> |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수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이다(단, 5세아 이상은 100% 지원한다). 연령별로 지원액은 차등하여 지원하지만 보육료 지원과 교육비 지원과는 달리 소득층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표 2-10〉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급 한도액

| 연령별      | 연령 기준              | 월지급 한도액(원) | 월정부보육료지원단가(원) |
|----------|--------------------|------------|---------------|
| 0세       | '06.3.1 이후 출생      | 253,000    | 361,000       |
| 1세       | '05.3.1 ~ '06.2.28 | 222,000    | 317,000       |
| 2세       | '04.3.1 ~ '05.2.28 | 183,000    | 262,000       |
| 3세       | '03.3.1 ~ '04.2.28 | 126,000    | 180,000       |
| 4세       | '02.3.1 ~ '03.2.28 | 113,000    | 162,000       |
| 5세       | '01.3.1 ~ '02.2.28 | 162,000    | 162,000       |
| 6세(취학유예) | '00.3.1 ~ '01.2.28 | 162,000    | -             |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교육비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표 2-11〉 농업인 영유아 교육비 지급 한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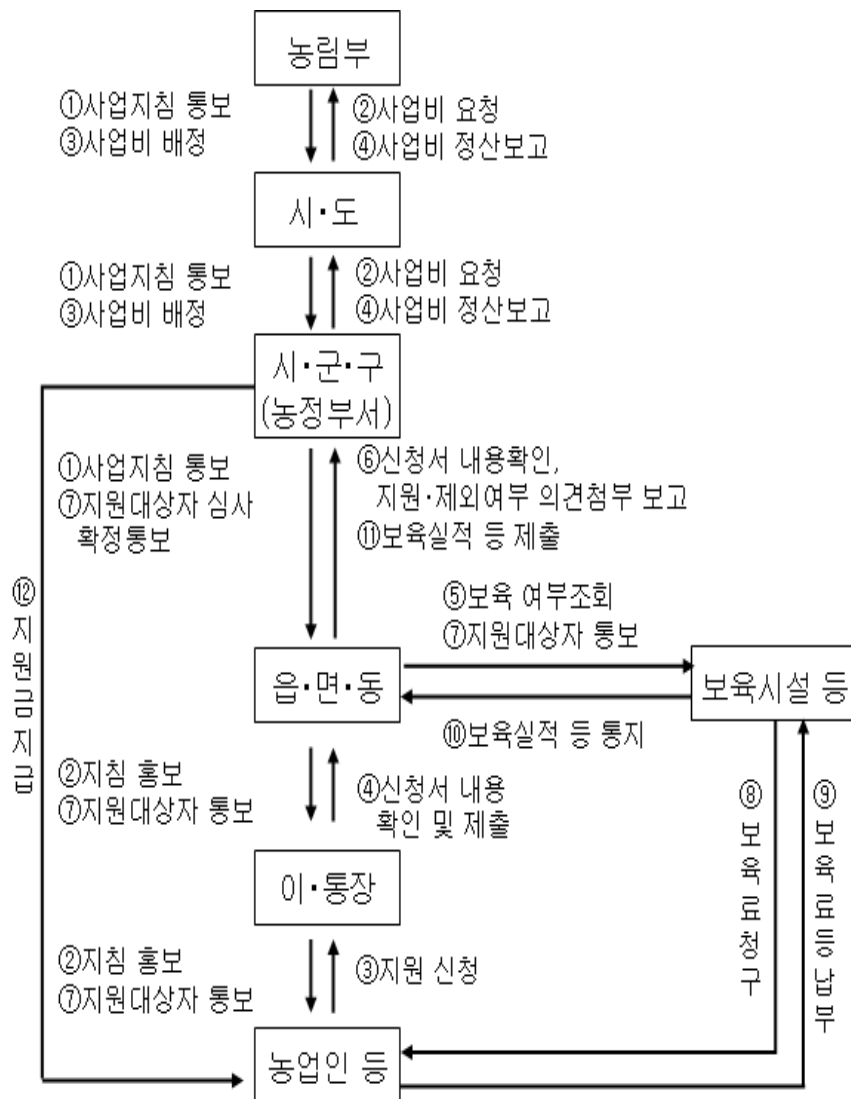
| 연령별      | 월지급한도액(원) |         |
|----------|-----------|---------|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3세       | 39,000    | 126,000 |
| 4세       | 39,000    | 113,000 |
| 5세       | 56,000    | 162,000 |
| 6세(취학유예) | 56,000    | 162,000 |

주: 만 5세아 이상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농업인 등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이·통장은 농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 사항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또는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고 그 결과가 시군구로부터 통보되면 이를 농업인(신청인) 및 보육시설 등에 통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심사하여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한다. 또한 사업시행연도 1월분부터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실적통지서를 근거로 농업인(신청인)에게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한다. 보육시설은 농업인(신청인)에게 보육료를 청구하며 농업인(신청인)은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납부한다.

[그림 2-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행 절차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②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m<sup>2</sup>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이다. 지원 여건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혹은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차 사업장(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이며, 단 5세 이상 아동은 50%를 지급한다.

〈표 2-12〉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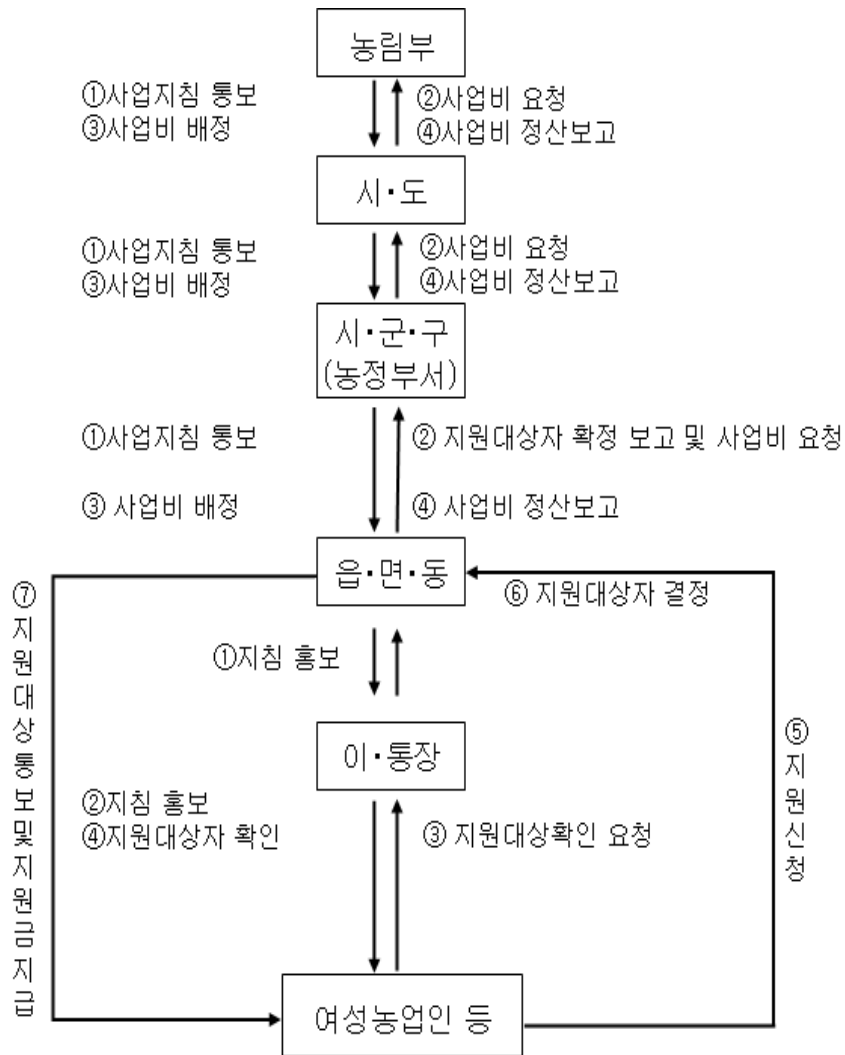
| 연령 | 5연령 기준             | 월지급액(원) | 월 정부보육료지원단가(원) |
|----|--------------------|---------|----------------|
| 0세 | '06.3.1 이후 출생      | 126,000 | 361,000        |
| 1세 | '05.3.1 ~ '06.2.28 | 111,000 | 317,000        |
| 2세 | '04.3.1 ~ '05.2.28 | 92,000  | 262,000        |
| 3세 | '03.3.1 ~ '04.2.28 | 63,000  | 180,000        |
| 4세 | '02.3.1 ~ '03.2.28 | 57,000  | 162,000        |
| 5세 | '01.3.1 ~ '02.2.28 | 81,000  | 162,000        |
| 6세 | '00.3.1 ~ '01.2.28 | 81,000  | -              |

자료: 농림부(200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농업인 등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이·통장은 농업인등 여부,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지원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기관 확인 사항 기재 등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사하여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적합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지도 감독한다.

사업비 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읍·면·동장은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신청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을 요청한다. 시·도지사는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를 신청한다. 농림부는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15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교부한다. 시도는 각 시·군·구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0일까지 시·도비 부담분을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한다. 시·군·구는 각 읍·면·동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매분기 25일까지 시군구의 부담분을 합하여 읍·면·동에 교부한다. 읍·면·동장은 지침상의 연령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매월 말까지 여성농업인 등(신청자)에게 계좌입금한다.

[그림 2-2]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시행 절차



자료: 농림부(2007)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 (4) 입양아지원

##### ① 입양아동 의료급여 혜택 및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입양장애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② 입양아동 양육지원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입양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입양아동이 13세 될 때까지 입양양육수당은 지급되며, 13세 이후 중고등학교 입학시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급되며 중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가 된다.

본 입양아동 양육 지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지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제공되는데, 이는 장애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 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으로 매달 55만 1천원이 지급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입양아동 양육지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지원은 입양 양육 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제공된다. 그리고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은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된다. 공무원이 입양할 경우 입양 전후 14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3. 주택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현금 지원 보다는 입주

권 및 대출 금리 등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혜택을 부여하여 2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동일 순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청약 통장 없이 특별 공급 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3자녀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정상금리에 비해 0.5%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3자녀 이상의 가정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세제 지원

##### (1) 부양자관련 인적소득공제제도 현황

세제 지원으로 먼저 부양자관련 인적소득공제제도를 살펴보면, 현행 소득세제가 출산관련 아동양육지원의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부양자관련 인적 소득공제 제도와 부양비관련 특별소득공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양자관련 인적공제제도로는 기본공제로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추가적으로 6세이하 자녀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100만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2007년 새로 개정된 소득세제하에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까지는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는 추가 1인당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표 2-13〉 현행 소득세제상의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 구 분              | 내 용              |  |
|------------------|------------------|--|
| 인<br>적<br>공<br>제 | 기본 공제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  |
|                  | 추가 공제            | ○ 경노우대자 : 100만원(70세이상 150만원)      ○ 장애인 : 200만원<br>○ 6세이하 : 100만원                                      ○ 부녀자세대주 : 50만원   |
|                  | 다자녀<br>추가공제      | ○ 기본공제대상인원이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이상인 경우 50만<br>원과 2인초과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
| 특<br>별<br>공<br>제 | 보험료공제 *          | ○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br>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br>-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br>- 장애인전용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                  | 의료비공제 *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br>- 연급여액의 3% 초과분<br>(500만원 한도, 당해거주자·경로우대자·장애인은 한도 없음)   |
|                  | 교육비공제 *          | ○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br>- 근로자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공제<br>-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유치원·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생은<br>연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 한도<br>○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
|                  | 주택자금공제 *         | ○ 무주택자·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소유자의 주택마련저축<br>불입금액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차입금상환액 : 저축불입액 또는<br>상환액의 40% 소득공제<br>○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1주택에 한함)으로서 3억원 이하인<br>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연 1,000만원 한도) |
|                  | 기부금공제            | ○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br>○ 자기명의로 지출한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범위내   |
|                  | 결혼·이사<br>장래비공제 * |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당 각각 100만원<br>-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혼인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장례<br>-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                  | 표준공제             | ○ 연 60만원(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br>-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중 선택<br>-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

주: \*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07) “조세 개요”

(2) 부양비관련 소득공제제도 현황

부양비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의료보험료는 전액공제가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지출된 의료비가 연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이나 보육시설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에 대해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연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지급된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한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는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중 체육도장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등 6개 종목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합기도 및 국선도 등의 유사 체육시설도 인정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교습과정상의 요건은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교습과정이어야 한다.

(3) 현행 상속세제하의 상속세 인적공제

현행 상속세제하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자녀 1인당 3,000만원의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로서, 20세미만의 자녀들의 20세 까지 잔여 연수당 추가 500만원의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유아의 경우 최고 9,500만원의 추가공제가 허용된다.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한 공제액과 일괄공제

액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적공제액이 3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인적공제가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 (4)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 (조세특례법 §85의 5)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보육시설을 처분하고 새로운 보육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 로 과세하는 조세감면조항의 추가이다. 특례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직장보육시설이며 처분 후 1년 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과세이연에 의한 조세감면혜택은 2년에 한하고, 일몰시한은 2009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다.

#### (5) 아동양육지원 관련 세제개편대상 소득세제도

##### ①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소득법 §52)

소득법 제52조에 의해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의 공제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의 제도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200만원이었으며,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의 공납금만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추가되었다. 이 개정안은 자녀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②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소득법 §51)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법 제51조에 따라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



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6) 현행 세액공제제도의 한계와 쟁점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를 통한 아동양육지원은 많은 경우 직접세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형태별로 보았을 때는 부양자 수에 따른 소득공제 형식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의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조세지원의 소득 역진성이다. 일례로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가구원 수 및 부양자수에 따른 보조를 지급하고 있어서, 현행방식대로 조세지원이 되는 경우는 해당 공제액에 대하여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역행이라는 조세지출제도의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같은 금액으로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추가적인 조세지원책의 마련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조세체제를 통한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의 형태에 있어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현행의 소득세제는 종합소득에 합산된 배당소득 및 간편장부대상자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기장세액, 재해 손실, 외국납부세액등에 대한 세액공제만 있을 뿐, 자녀부양비, 입양관련 수수료등에 관한 세액공제제도는 부재하다. 현행 소득세제상의 세액공제제도는 <표 2-14>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부양자녀수에 따른 기본공제는 일인당 100만원이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적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역진적 성격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 감소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세제구조가 복잡해 지는 등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있다. 부양자녀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부양자녀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출산 유인과 함께 조세지원방식의 약점을 많은 부분 극복할 수 있고, 소득세제를 좀 더 단순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에 대한 체감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세제 개편안에서 입양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수속에 따른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아직 미천한 실정이다. 입양수수료는 2005년 기준 200만원 수준에 이르는 만큼 상당한 금액이나, 이에 대한 국가의 보조는 현재 전혀 없이 전액 입양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의 경우는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아동 입양가정에는 여타의 지원이 없다. 미혼모 출산 자녀들이 입양아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광의의 양육지원책으로서 입양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세액감면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4> 현행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 구 분        | 공제대상   | 세 액 공 제 액  |
|------------|--|--|
| 배당 세액 공제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br>(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수입금액×15%   |
| 기장 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기장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 \times 10\%}{\text{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 (15\%)}$ <p>*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15%<br/>*조특법 §122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는 20%적용<br/>• 한도: 100만원</p>   |
| 근로소득 세액 공제 |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p>(1) 일반근로자의 경우<br/>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5%+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한도 : 연간 50만원)</p> <p>(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액 - 일 80,000원)×8%]×55%</p>   |
| 재해손실 세액 공제 |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 <p>(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p> <p>※ 재해상실비율 = <math>\frac{\text{상실자산가액}}{\text{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math></p> <p>(한도 : 재해손실액 범위내)</p>  |
| 외국납부 세액 공제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 <p>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중 선택</p> <p>(1) 세액공제방법<br/>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p> <p>┌ ①외국납부세액</p> <p>└ ②공제한도 = 산출세액 × <math>\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math></p> <p>*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 동안 이월 공제됨</p> <p>(2) 필요경비 산입방법<br/>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p> |

자료: 재정경제부 (2007) “조세개요”

### 제3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화 및 정책 사례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이후 다소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안정적 회복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쌍춘년 효과’ 또는 ‘황금돼지 해의 출산붐’ 등의 시기적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대응수준에 대한 우려와 급속한 경제·사회의 발전 이후 나타나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결혼-가족-자녀 가치관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직면하여 그 충격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8월에는 저출산·고령화의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특히, 새로마지 플랜에 포함된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총 3단계의 단계적 국가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을 시작으로 2010년에 완성되는 제1차년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세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어서 제2차년도(2011~2015)에는 점진적인 출산율의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며, 마지막 제3차년도(2016~2020)에 이르러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의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에 걸쳐 총 230개의 세부 정책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녀양육에 따르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충 및 보육료 지원, 임신·출산·입양에 대한 공공 지원의 확대, 아동수당의 적극적 도입 검토, 육아휴직의 확대, 가족친화적 경영 확산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의 보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관련 정책을 아동 양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가늠하고, 비교국가적 측면에서 정책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으로 앞서 밝힌바 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아동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구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개별 가정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아동 양육지원 정책을 유형화하고, 대표적 양육지원 정책으로서 아동수당, 조세감면제도,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정책추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화

### 1.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화 틀

인구구조의 왜곡 및 인구규모의 감소를 초래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저출산 문제가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야기하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이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져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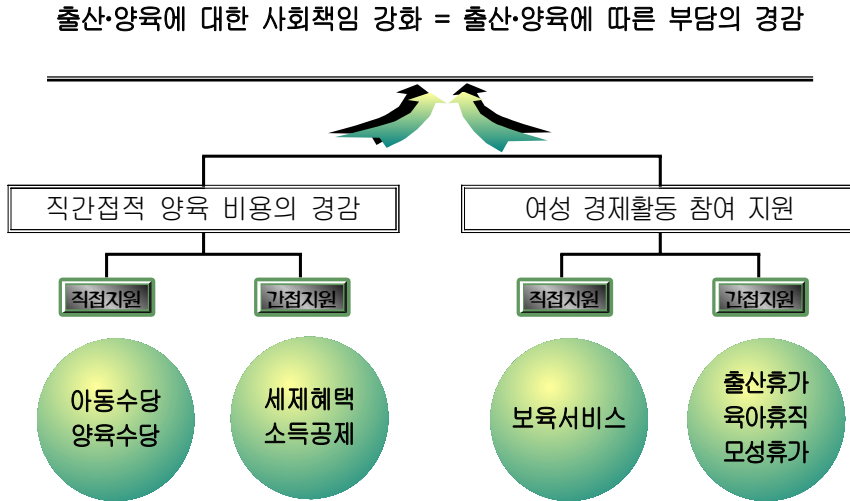
저출산의 과급효과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결과론적 상황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대응 정책의 수립 필요성이 탄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 체제 안정성을 제고하거나, 고령사회 대응정책 등에 관심이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 문제 자체보다는 저출산을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갖고 발생원인별 사전 대응적 차원의 제도와 정책을 발굴·수립하여 개별 가족의 출산과 양육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실제적인 정책논의에서는 접근방식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정책 또한 출산율의 전반적 저하에 따른 결과론적 상황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이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양방향 접근을 시도한다.

양육지원 정책의 경우에도 앞서 2가지 접근의 정책목표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방식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정책은 양육관련 경제적,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모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차원에서 자녀의 출산·양육에 따르는 직접비용의 감소 정책과 간접적 비용의 보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양육활동으로 파생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1] 아동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화 틀



류연규(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육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단위정책으로 평가할 경우 양육지원 정책이 구조적·거시적 수준에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증분석의 결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의 출산행위는 정책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계량화된 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가족가치, 자녀에 대한 가치, 문화적·관습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기본적인 실증연구 자체도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 2.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화 논의배경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양한 아동 양육지원 정책 가운데 직접적 양육비용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동수당, 양육부담의 간접적 보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조세감면제도, 그리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율의 하락 원인은 거시적 문제와 미시적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결혼, 가족, 자녀 등과 관련된 개인 가치관의 변화, 미혼율의 상승,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등을 촉발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제도적·구조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을 지연하고 기피하는 데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르는 비용부담, 즉 경제적 부담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박세경, 2006).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자녀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는데,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교육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전통 사회에서 자녀 출산은 가족이 생산적 경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노동력의 창출과 직결되는 강력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었으나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대부분 희석되거나 소멸되었고, 오히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경제적 효용 가치는 사라지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간접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시간적 비용부담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체계가 강화될수록 자녀양육과 관련된 선택의 폭이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모들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자녀양육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또는 일종의 강박관념까지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 가운데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출산한 자녀 수 자체보다 자녀양육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자녀양육의 고비용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 자녀연령 및 자녀수별 평균양육비 및 가구 총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비중  
(단위: 원, %)

| 자녀수<br>자녀연령<br>가구 소득수준 | 1자녀 가계            |                   |                   |                     |                                 | 2자녀<br>가계<br>평균   | 3자녀<br>가계<br>평균     |
|------------------------|-------------------|-------------------|-------------------|---------------------|---------------------------------|-------------------|---------------------|
|                        | 0~2세              | 3~5세              | 초등<br>학생          | 중고등<br>학생           | 0~18세<br>평균                     |                   |                     |
| 고소득 가계                 | 213,821<br>( 4.8) | 431,949<br>( 8.3) | 842,885<br>(16.0) | 1,027,201<br>(20.9) | <b>660,053</b><br><b>(13.6)</b> | 898,290<br>(19.3) | 1,160,336<br>(23.0) |
| 저소득 가계                 | 151,755<br>( 8.2) | 333,120<br>(16.7) | 362,056<br>(17.0) | 562,008<br>(26.0)   | <b>371,935</b><br><b>(19.6)</b> | 504,811<br>(24.3) | 582,035<br>(26.7)   |

주: 2003년도 기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073,029원을 기준으로 고소득 가계와 저소득 가계를 구분하였음.

자료: 통계청(2003), 최병호 외(2006), p. 57에서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는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육간의 간극 등으로 인한 조기교육, 사교육 등을 위한 자녀양육의 고비용 사회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공공부분에서 부담하는 공교육비 수준은 GDP 대비 OECD 평균 6.2%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8%에 머물고 있다. 한편, 학부모 부담 부분은 GDP 대비 OECD 평균이 1.4%이나 우리나라는 3.4%로 파악된다. 아울러 높은 교육열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과 연계되어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사회통합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발표('05. 4)에 의하면 가계가 부담한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한 비율은 지난 2000년 26.6%에서 2004년에는 30.4%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분담 비중(2001)

(단위: %)

| 구분             | OECD<br>평균 | 한국  | 미국  | 캐나다 | 독일  | 영국  | 일본  |
|----------------|------------|-----|-----|-----|-----|-----|-----|
| 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 | 6.2        | 8.2 | 7.3 | 6.1 | 5.3 | 5.5 | 4.6 |
| 정부 분담 비율       | 4.8        | 4.8 | 5.1 | 4.9 | 4.3 | 4.7 | 3.5 |
| 학부모 분담 비율      | 1.4        | 3.4 | 2.3 | 1.3 | 1.0 | 0.8 | 1.2 |

자료: OECD(2004), 최병호 외(2006), p. 55에서 재인용.

한편,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로 집약된다. 특히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던 어린 자녀의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가구내 부부 경제활동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1990년 27.4%에서 2000년에는 35.4%로 증가하였다. 반면 남편 홀벌이 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61.2%에서 48.8%로 감소하였다.

〈표 3-3〉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설치 및 이용아동 현황(2005)

(단위: 개소, 명, %)

| 구분    | 계                         | 국공립               | 법인                | 민간               |                   | 직장보육 <sup>1)</sup> | 가정보육              | 부모협동          |
|-------|---------------------------|-------------------|-------------------|------------------|-------------------|--------------------|-------------------|---------------|
|       |                           |                   |                   | 법인·단체            | 민간                |                    |                   |               |
| 시설개소수 | <b>28,367</b><br>(100.0)  | 1,473<br>( 5.2)   | 1,495<br>( 5.3)   | 979<br>( 3.5)    | 12,769<br>(45.0)  | 263<br>( 0.9)      | 11,346<br>(40.0)  | 42<br>( 0.1)  |
| 이용아동수 | <b>989,390</b><br>(100.0) | 111,191<br>(11.3) | 125,820<br>(12.7) | 56,374<br>( 5.7) | 552,360<br>(55.8) | 12,985<br>( 1.3)   | 129,007<br>(13.0) | 933<br>( 0.1) |

주: 1)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의무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수를 포함하였음.

자료: OECD(2004), 최병호 외(2006), p. 55에서 재인용.

이로써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결과에 의하면 0~2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5%,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과 희망하는 형태의 서비스 부재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세 이상, 취학전 자녀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양육지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68.3%, 서비스 불만족 또는 희망 서비스 부재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6%였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가정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4〉 보육서비스 이용 희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 보육서비스를<br>이용하지 않는 이유  | 0~2세 |      |      | 3세~취학전 |      |      |
|-----------------------|------|------|------|--------|------|------|
|                       | 취업   | 비취업  | 소계   | 취업     | 비취업  | 소계   |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16.8 | 36.8 | 30.5 | 63.8   | 69.2 | 68.3 |
| 가까운 보육시설이 없어서         | 14.5 | 3.6  | 7.0  | -      | -    | -    |
| 원하는 형태의<br>보육서비스가 없어서 | 18.4 | 11.1 | 13.4 | 36.2   | 4.7  | 9.8  |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불만족       | 11.9 | 14.6 | 13.8 | -      | 5.8  | 4.8  |
| 어린이집에 보내기<br>너무 어려서   | 29.5 | 30.3 | 30.1 | -      | 4.9  | 4.1  |
| 기 타                   | 8.8  | 3.5  | 5.2  | -      | 15.5 | 13.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분석 결과임.

### 3.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별 특성

#### 가. 아동수당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존재를 전제로 제공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수당제도(family allowance of family benefit)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수당제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만을 위한 수당과 구분되기도 한다(Gauthier & Monna, 2002; OECD, 2004).

사회급여의 한 형태로서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녀가 없는 가정과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암묵적 정책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아동수당제도의 명시적 목적은 아동을 미래사회의 주인, 즉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일찍이 180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수단으로부터 발달한 아동수당제도는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미망인의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정책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성장의 둔화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우려에서 출발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적 방안으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이라기 보다는 아동수당제도를 통한 궁극적 정책목표의 달성, 즉 양육부담의 경감과 발달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05).

개별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시대적 여건에 따라 제도적 내용은 끊임

임없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아동수당제도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의 범위에 따라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와 사회부조형 아동수당제도, 그리고 고용관계에 기반한 아동수당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은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선주 외, 2006).

한편, 사회부조형 아동수당제도는 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조사를 통해 가구총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의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부조형 아동수당제도는 기존의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나 빈곤정책에 대한 보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관계에 근거한 아동수당제도는 부모 및 주양육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고용상태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임금근로자 가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수당제도의 국가별 특성은 재원조달의 방법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보편주의적 아동수당 및 사회부조형 아동수당제도는 일반 세입에서 제도 운용을 위한 총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고용관계에 기반할 경우 수당지급에 따르는 비용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고용주 분담금(employer contribution)을 통해 고용자가 분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제도의 지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규모 및 가구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3-5〉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의 특징

| 국 가  | 아동수당 급여 차등화의 기준      |         |          |                       |           |         |                |
|------|----------------------|---------|----------|-----------------------|-----------|---------|----------------|
|      | 제도 명칭                | 자녀 수 구분 | 자녀 연령 구분 | 연령제한 여부               | 지급 대상     | 급여변동 요인 | 급여에 대한 과세적용 여부 |
| 영국   | Child Benefit        | 있음      | 없음       | 만16세<br>(학생 19세)      | 주양육자      | 정부 결정   | 없음             |
| 프랑스  | Allocations Families | 있음      | 있음       | 만20세<br>(최저임금 55% 이하) | 양부모<br>합의 | 매년 상승   | 없음             |
| 스웨덴  | Barnbidrag           | 있음      | 없음       | 만16세<br>(학생 20세)      | 주양육자      | 정부 결정   | 없음             |
| 핀란드  | Lapsilisa            | 있음      | 없음       | 만17세                  | 모         | 정부 결정   | 없음             |
| 노르웨이 | Barnetrygd           | 없음      | 없음       | 만18세                  | 모         | 매년 상승   | 없음             |
| 네덜란드 | Kinderbijslag        | 있음      | 있음       | 만16세                  | 모         | 정부 결정   | 없음             |
| 덴마크  | Bornefamilieydelse   | 없음      | 있음       | 만18세                  | 양부모<br>합의 | 정부 결정   | 없음             |

자료: 이선주 외, 2006.

#### 나. 아동발달계좌

소득지원은 서민의 복지(well-being) 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택으로서의 보편적인 사회정책 도구가 되어 왔으나, 최근 소비를 위한 소득의 지출 이외에도 자산의 확보가 생애기회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Sherraden(1991) 그의 저서 『자산과 빈곤

층(Assets and the Poor)』에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지원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산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산의 확보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긍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의 경감 측면으로서는 정책적 성격이 다소 거리가 있지만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분담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 후 사회진출에 대비하여 교육자금, 기술습득, 자립기반 조성 등의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아동발달계좌 사업이다. 동 사업은 서구복지국가 재편기의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전통적 복지정책이 대응하지 못한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투자정책” 패러다임의 등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김연명, 2007).

#### 다.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는 아동이 그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 시간동안을 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육서비스는 부모의 또는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을 일부 대신하거나 보완해주는 일종의 보호서비스이다.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초기 보육정책은 가족정책이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본격적으로는 세계 제2차대전 당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인력 활용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욕구의 증가와 여성노동력 수요의 확대로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가나 사회가 자녀양육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이 확대되었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상당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여성임을 전제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하여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90년 아동권리협약 이후 보육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나 부모 등 성인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아동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아동 이익 최우선으로(Best Interests of Children) 하여 아동의 성장발달권과 차별금지 등 아동의 권리보장 사상에 기초한 아동복지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을 통한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기저에는 보육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고 아동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보육은 성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단순한 아동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지닌 발달특성과 이들이 처한 생활환경을 고려한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적 활동을 포함한 교육과 보호의 통합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1) 보육서비스의 주요 내용

보육서비스를 통해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영유아의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또래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영양적 측면에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며,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 영유아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안전의 측면에서는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다.

한편, 영유아의 부모에 대하여서는 보육서비스의 목표와 철학 등을 이해시켜 가정내보호와 기관보육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효과를 높인다. 또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는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가족복지를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을 거점으로 지역사회 교류기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아동발달의 사회적 공조 체계 및 책임분담을 도모한다.

## 2) 보육의 기능

일반적으로 보육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확대하고 아동발달에 긍정적 기여 및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즉, 보육은 가정이 그들의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가정이 지닌 가치와 목표에 맞게 자녀양육기능을 보충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보육서비스가 영유아의 발달에 주는 영향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은 보육이 다음과 같은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인지발달의 측면에서 언어습득, 상징과 문화개념 습득, 시간·공간·사물에 대한 개념 습득을 돕는다. 정서발달의 측면에서는 자아와 자율성 발달, 정체성 발달, 도덕과 개인적 권리개념 발달, 그리고 심리적 충동·죄악감·불안감·수치심 등을 다루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성발달의 측면에서는 또래와의 관계, 보육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 또래와의 관계를 만들고 유

지하는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통해 자녀양육에 따르는 개별가정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특히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아동, 장애아동,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보육은 아동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고, 활동 능력을 키워주고, 타인과 협동 및 집단생활이 훈련받게 하고, 규칙적 생활로 자주성·독립심을 키워준다. 그리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안심하고 사회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경제를 도우며, 사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육경험이 아동에게는 부모와의 분리불안, 집단생활에의 부정적 태도, 반복되는 일에 대한 거부감, 부적응, 공격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라. 조세감면제도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조세감면제도들이다. 조세감면제도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제를 통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세인 소득세제 하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직접세가 개인의 행동양식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주는 반면, 간접세의 경우는 보다 많은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기대효과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통한 조세지원들의 경우는 해당기업들의 가격설정 과정 등의 이유로 개인에 대한 유인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제2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별 추진 사례

### 1. 아동 수당

#### 가. 영국의 아동수당제도

아동급여(child benefit)는 소득조사가 아닌 보편적 형태이며, 소득공제 현금급여의 형태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 급여는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또는 학교를 다닌다면 19세까지 유효하며, 16세 또는 17세 아동이 학교를 떠나 직업 및 훈련 프로그램을 찾을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유효하다. 재정은 일반 예산에 의해 재정이 충당되며, 1992년부터는 임금에 포함시켰다. 이 급여는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증가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을 통해 지급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첫째 아이를 제외한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주당 5실링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1977년 4월까지 도입되지 못했다(김승권 외, 2003). 1991년부터 아동급여는 첫째 아이에게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같은 비율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1992년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첫째 자녀에게 주당 14.40파운드,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 당 주 9.6파운드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두 자녀 편모가족에게 지급된 아동급여 금액은 남성 평균 임금의 8%, 여성 평균임금의 13.4%에 해당하였고, 1992년 두 자녀 양부모 가족의 아동급여는 남성 평균임금의 6.5%이었다. 이러한 급여는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 명 또는 두 명의 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에는 높은 편이었으며, 대가족의 경우는 낮은 편이었다. 양부모의 경우 아동급여는 어머니에게 지급되므로 이 급여를 “어머니 임금(mother wage)”의 종류

로 간주되기도 한다. 현재 영국은 보편적인 아동급여를 기준으로 아동 및 가족지원을 통합하고 부모의 고용유지를 위한 부가적인 정부 급여를 매듭 짓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 나. 핀란드의 아동수당제도

핀란드의 경우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동복지 또는 가족 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함의가 보다 분명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와 전반적 경제상황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상 아동의 가족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형태를 기본 골자로 한다. 아동수당제도의 유지에 따르는 정부재정 부담의 확대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동 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사회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편주의적 제도운명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아동수당제도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국가들과 달리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수당액수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1자녀 가정은 월 100유로가 지급되었고, 2자녀는 110.50유로, 그리고 3자녀의 경우는 월 131.50유로가 지급된다. 다만, 보편주의적 형태를 가지면서도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성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지원, 소득격차의 완화 등과 같은 정책 목표가 내포되어 있다.

〈표 3-6〉 자녀수별 핀란드 아동수당 급여수준(2004~2006)

(단위: 유로)

| 자녀수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
|------------|-------|-------|-------|-------|---------|
| 아동수당 월 급여액 | 100.0 | 110.5 | 131.5 | 151.5 | 172.0   |

자료: KEL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2004.

〈표 3-7〉 핀란드 아동수당제도 급여수준 및 수급규모(1993~2004)

(단위: 유로, %)

| 연도   | 아동 1인당 수당액 | 전체 인구대비 수급 아동비율 | 전체 아동중 한부모 가정의 아동수당 수급 아동비율 |
|------|------------|-----------------|-----------------------------|
| 1993 | 71.0       | 21.6            | -                           |
| 1995 | 107.2      | 21.4            | 13.0                        |
| 1997 | 107.7      | 21.2            | 13.8                        |
| 1999 | 108.3      | 20.7            | 14.6                        |
| 2001 | 108.4      | 20.3            | 15.0                        |
| 2003 | 108.4      | 20.0            | 15.1                        |
| 2004 | 114.5      | 19.9            | 15.1                        |

자료: KEL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2004.

2004년 현재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의 규모는 전체 인구대비 19.9%이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가구는 총 570,413가구이며, 이 중에서 한부모 가족의 구성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핀란드에서는 아동수당제도의 운영으로 초래된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보험원(Kansanelakelaitokos)은 아동수당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1937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동 사회보험원은 아동수당 이외에도 총 100여 종류에 이르는 사회보장 관련 급여를 관리한다.

#### 다. 독일의 아동수당제도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제도의 유형은 크게 보편주의적 제도와 고용관계에 의한 제도로 구분된다. 보편주의적 제도는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편, 고용관계에 의한 제도는 아동기 자녀가 있는 임금근로자 또는 경우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수급자로서 피부양 아동이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한다. 재원은 고용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분적으로 국가의 보조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독일의 가족수당제도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뚜렷하다.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수당과 아동수당은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가족성과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소득분배를 가족을 위한 국가적 정책차원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아동수당(Kindergeld)과 자녀세금공제(Steuerfreibeträge)가 중심이 된다.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1954년 처음 입법화되었고, 1985년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의 부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며, 대상아동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임의로 사회봉사를 할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세법과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의 부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장 27세까지 연장 지급된다. 또한 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연령제한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자녀수에 따라 증액되는 아동수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에게는 138.5유로가 지급되고 세 번째 자녀에게는 매월 143유로가 지급되며 네 번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매월 178.95유로가 지급되고 있다(이진숙, 2002). 아동수당의 운영은 연방

정부의 재정부에서 총괄하고 가족기금의 명칭으로 노동청이 관여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의 재정은 전액 연방정부에서 국고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아동수당과 별도로 양육수당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1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하고 있는 부모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부모는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최고 307유로, 연간 7,368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규급여와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매달 최고 460유로, 연간 최대 5,520유로를 받을 수 있는 대안급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소득이 부부의 경우 51,130유로 이하이거나 한부모인 경우 38,350유로 이하이면 자녀의 생후 6개월까지 양육비 전액을 지원 받고 7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자녀가 한명일 경우에는 연간 총 소득이 16,470유로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16,470유로 이상 23,5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또한 둘째 자녀이상의 경우 2001년도 출생한 경우 연간 부부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이 18,924유로로, 한부모인 경우에는 15,952유로로 조정된다. 둘째 자녀가 2002년도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이 19,267유로, 한부모인 경우에는 16,295유로로 조정되며, 2003년도 출생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경우 19,610유로, 한부모인 경우 16,638유로로 조정된다. 즉, 2001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는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방주마다 각기 다른 액수와 기간에 대한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 2. 아동발달계좌<sup>9)</sup>

### 가. 싱가포르의 자산기초정책

현재 싱가포르는 출생 때부터 18세까지 아동이 대상이 되는 세 가지 보편적 자산수립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포괄적 평생 자산 수립 정책은 싱가포르의 매우 혁신적인 복지정책의 주된 내용이다. 출생 때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은 베이비 보너스 시책(Baby Bonus Scheme)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6세부터 16세까지는 교육저축계좌(Edusave Account)의 지급 대상이 되며, 이후 16세부터 18세까지는 고등교육계좌(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를 지급받게 된다. 이들 3개 유형의 계좌에서 미사용된 잔액은 퇴직 때까지 지속되는 중앙 장래준비기금 (Central Provident Fund, CPF)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최초의 보편적 아동 자산수립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교육저축시책(Edu-Save Scheme)은 교육기회를 최대화하고 균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6세부터 16세 사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993년에 시행되어 왔으며, 각 아동은 학교에 다니는 10년 동안 자신의 이자소득 교육저축 계좌(Interest-earning Edu-Save Accounts)에서 4천 싱가포르 달러(미화 2,530불)를 지급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저축 계좌의 기금은 아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싱가포르 교육부, 2005b). 2005년 정부는 자동으로 개설되는 각 아동의 교육저축 계좌에 160에서 200 싱가포르달러를 출자하였다(싱가포르 교육부, 2005a). 미사용된 교육저축계좌 잔액은 해당 아동이 16세가 되거나 중

9) 본 내용은 Loke, V. & Sherraden, M.(2006)의 Working Paper 『Building Assets from Birth: A Comparison of the Policies and Proposals on Children Savings Accounts in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Canad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George Warren Brown School of Social Work,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의 내용을 요약·발췌하였음.



등교육기관을 떠날 때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PSE) 계좌로 이전된다.

연간 출자와 더불어, 교육저축 시책은 학업 또는 교과병행활동(co-curricular activities)이 우수하거나 좋은 성과를 보인 학생들에게 교육저축 장학금(Edusave Scholarships)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가계조사에 의한 교육저축 보조금(Edusave Bursaries)을 통하여 연간 50에서 500 싱가포르달러(미화 31불에서 311불) 사이에서 제한 없이 인센티브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은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학교교육(미국의 사립학교교육과 동일)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학교의 최우수 학생들의 교육비도 교육저축 시책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저축 시책은 정부출자로 수립된 50억 싱가포르달러의 교육저축 기부기금(Edusave Endowment Fund)의 이자소득에 의해 지원된다(싱가포르 교육부, 2004).

한편, 2001년 싱가포르 정부는 여성의 가임률을 높이고 가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이비 보너스 시책을 도입하였다. 2004년 수정 후 시행되고 2005년에는 더욱 향상된 베이비 보너스 시책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는 소득계층과 상관 없이 모든 가정의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3,000 싱가포르달러(미화 1,875불)의 현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셋째와 넷째 자녀에게는 6,000 싱가포르달러(미화 3,750불)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금보조금은 저축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제2단계는 둘째부터 넷째 자녀까지의 아동발달 지원계좌(CDA)로 구성된다. 각 가정은 이자소득 CDA에 6년 이상 저축할 수 있으며, 둘째 자녀의 경우 6,000 싱가포르달러(미화 3,750불) 상한액까지 정부로부터 일대일 매칭출자를 받게 되고, 셋째와 넷째 자녀의 경우에는 각각 12,000 싱가포르달러(미화 7,500불) 상한액까지 받게 된다(Singapore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2006). 싱

가포르 수상 Goh Chok Tong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책에서 매칭출자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베이비 보너스 시책 하에서, 첫째 자녀는 3,000 싱가포르달러(미화 1,875불)를 받고, 둘째 자녀는 9,000 싱가포르달러(미화 5,625불)까지 받으며, 셋째와 넷째 자녀는 18,000 싱가포르달러(미화 11,250)까지 받게 된다. CDA에 있어 기금은 출생 때부터 6세까지 양육비, 유치원(보육원)비, 특수교육비, 조정 프로그램비, 의료보험비 등의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CDA의 경우 사용된 계좌의 잔액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PSE) 계좌로 이전된다.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PSE) 계좌는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데 있어 각 가정을 지원하고 모든 싱가포르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와 교육저축 계좌로부터 남은 돈은 현재 2.5%의 이자소득(영리은행의 0.3% 이하의 이자소득 대비)을 받고 있는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PSE) 계좌로 이전된다. 각 가정은 계좌보유자가 6세에서 18세 사이가 되면,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PSE) 계좌로 출자할 수 있다. 이러한 출자는 둘째 자녀의 경우 PSE와 CDA 계좌를 합쳐서 정부 출자액 6,000 싱가포르달러 상한액과 셋째와 넷째 자녀의 경우 12,000 싱가포르달러 상한액의 해당 저축에 대한 정부매칭을 얻을 수 있다. PSE 계좌의 기금은 고등교육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미사용된 잔고는 중앙장래준비기금(CPF) 계좌로 이전된다(싱가포르 교육부, 2005c).

#### 나.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CTF)

영국에서는 2002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신규 장기 저축 및 투자 계좌를 마련하는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CTF) 제도가

2005년 4월에 시행되었다.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CTF)의 정책목표는 일반 국민이 저축 및 투자의 혜택을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저축 습관을 갖게 하고 금융기관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울러, 장래에 모든 아동이 성인의 삶을 시작할 때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기간 동안 보다 현명한 금융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영국 의회, 2004).

아동신탁기금(CTF) 하에서, 정부는 아동신탁기금계좌에만 투자될 수 있는 바우처의 형태로 50파운드(미화 430불)의 초기출자를 수행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는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 50파운드가 추가로 지불된다. 또한 대상 아동의 7번째 생일에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 대한 추가 지급금이 발표되었으며, 9세가 될 때 또 다른 지불계획이 논의 중에 있고, 부모, 가족, 친구 등이 연간 총 200 파운드까지 아동신탁기금(CTF)에 출자할 수 있다.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서 이루어진 이자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는데,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서 기금은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에만 해당 자녀에 의해서 인출가능하며, 인출 후 아동신탁기금(CTF) 계좌 적립액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현재 3가지 유형의 CTF 계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저축(savings), 지분소유(stakeholder), 주식(shares)의 형태로서 이들 기금운용을 선택할 수 있는 70개의 서로 다른 제공자와 판매자가 있다. 가장 안전하고 단순한 선택은 이자소득 저축계좌로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입금하는 것이다. 반면, 풀(pool)에 투자하는 지분소유 계좌는 다양한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된 기금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식(shares) 계좌는 주식 기초 투자 및 보통 주주권을 갖는다.

다. 캐나다 교육저축프로그램(Canada Education Savings Program, CESP)

캐나다 교육저축프로그램(Canada Education Savings Program, CESP)은 캐나다 교육저축교부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과 캐나다 교육채권(Canada Learning Bond) 등 두 가지의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과세유예 저축수단인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을 아 동의 고등교육용 저축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교육저축교부금(CESG)을 통해 17세까지 각 자녀를 위한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대해 연간 출자 매칭 저축을 제공한다. 교육저축교부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는 해마다 자녀당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출자된 첫 2,000 캐나다달러 이하의 20%를 지불한다. 저소득층 가정이 저축을 증대시키도록 돕기 위해, 연간 순소득 35,000 캐나다달러 이하의 가정은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출자된 첫 500 캐나다달러에 대해 20%의 추가교부금을 받는 반면, 연간순소득 35,000~75,000 캐나다달러 사이의 가정은 출자된 처음 500 캐나다달러에 대해 10%의 추가교부금을 받는다. 지불된 총 CESG 금액(추가 및 기본 교부금)은 500 캐나다달러(미화 446불)의 연간 상한액과 7,200 캐나다달러(미화 6,430불)의 평생 최대한도액의 대상이 된다(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2006a).

한편, 교육채권(Canada Learning Bond, CLB)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해 저축하도록 돕기 위한 정부시책이다. 2004년에 발표되어 2005년 7월 시행된 캐나다 교육채권은 자녀의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대해 해당 자녀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경우, 500 캐나다달러의 초기 수급을 제공하며, 해당 가정은 국가 아동수당추가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의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해당 가정이 국가 아동수당추가보조금을 계속해서 받는 한, 그 자녀는 15세까지 100 캐나다달러의 추가연간지불금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당 캐나다 교육채권의 평생 최대한도액은 2,000 캐나다달러(미화 1,786불)이다. 각 가정이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첫 500 캐나다달러 채권과 함께 추가로 25 캐나다달러가 지불된다. 자격을 가진 가정 또는 아동이 21세가 될 때까지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교육채권(Canada Learning Bond, CLB) 수급권은 박탈된다(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2006b).

개인 출자로부터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에 축적된 돈은 캐나다 교육저축교부금과 캐나다 교육채권이 허가된 고등교육비에 대한 위약금 없이 인출하거나 (캐나다 교육채권의 돈이 없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명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의 저축이 고등교육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 교육저축교부금과 캐나다 교육채권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은 캐나다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2006c).

라. 미국의 아동투자 및 발달지원저축(Kids Investment and Development Savings, KIDS)

개인투자, 퇴직 및 교육을 위한 미연방 저축법(American Saving for Personal Investment, Retirement, and Education Act, ASPIRE Act)은 저축을

장려하고 금융교육을 촉진하도록, 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들을 위해 아동투자 및 발달지원저축(Kids Investment and Development Savings, KIDS) 계좌를 수립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108차 의회에서 2004년 처음 소개되었고, 추후 2005년 109차 의회에서 다시 소개된 법안은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 내에 아동투자 및 발달지원저축(Kids Investment and Development Savings, KIDS) 계좌기금을 수립하여 모든 아동에게 아동투자 및 발달지원저축(Kids Investment and Development Savings, KIDS) 계좌에 미화 500불 1회 출자를 제공하여 자동적으로 개설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는 미화 500불까지 추가 출자의 자격을 얻게 되며, 계좌에 적립된 개인 출자에 대한 추가 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매칭은 상원의회 법안에서는 출자된 첫 미화 500불에 상한을 두고 있고, 하원의회 법안에서는 첫 미화 1,000불에 상한을 두고 있다. 상원의회 법안은 반면, 국가평균 세후소득(AGI)의 100~105%, 이 소득의 가정에 대해서는 매칭되지 않는 반면, 하원의회 법안은 100~200% 사이 소득의 가정에 대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발적 개인 세후출자는 계좌보유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각 계좌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출자는 상원의회 법안에서는 연간 미화 1,000불로 상한을 두고 있고, 하원의회 법안에서는 미화 2,000불로 상한을 두고 있다. 정부 유가증권 기금, 고정소득투자기금, 보통주(common stock) 기금 등을 포함하는 공무원 연금의 저축플랜(Thrift Savings Plan)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유사하게, 투자선택의 범위는 계좌보유자 및 그들의 후견인에게 있다. 계좌보유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투자 및 발달지원저축(Kids Investment and Development Savings, KIDS) 계좌로부터 인출을 할 수가 없으며, 아동투자 및 발달지원저축(Kids Investment and Development Savings, KIDS) 계좌는 비과세 개인연금 적금(Roth IRA)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고 동일

한 이행 및 분배규칙에 의해 감독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처음 집 장만, 고등교육 등과 같은 선별된 퇴직 전 사용을 위해 위약금이 없는 인출을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 자동 출자액(미화 500불)에 상응하는 최소 잔고는 퇴직연령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초기 출자는 또한 계좌보유자가 30세가 되었을 때 재지불 된다.

### 3. 보육서비스

#### 가. 스웨덴의 보육서비스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가장 관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보육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도 단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Anttonen, 1990; Leira, 1994; Lewis, 1998). Sipilä(1997)는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가 갖는 특징을 공공영역이 지원하는 높은 서비스 접근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동질의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주요 정책집행의 책임을 지방정부가 맡고 세금부과 등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지닌다는 점으로 정리된다.

원칙적으로 스웨덴에서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추진 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어,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지침 수립 및 재정책임은 모두 스웨덴 교육부(교육과학부)에 속해있다. 보육 및 유치원의 구분은 1998년 학교법(School Act)의 제정과 동시에 사라졌다.

아울러 학교법은 유아학교와 여가센터(방과후 프로그램)를 충분히 제공하고, 유아교육과 보호서비스의 질을 감독하며, 충분한 자원을 공급할 의무를 시(市)에 넘겼다. 국립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전반적인 평가, 자료수집, 유아교육과 보호서비스의 개발

및 감독을 책임진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1993년 관련법의 제정으로 지방단위(municipalities)의 보육시설 공급이 의무화되었고, 주로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2세 아동까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취업 또는 학업중인 경우, 1~12세 모든 유아들은 유아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보육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센터에서 직접 제공되지만, 지방에서는 시(市)가 관리에 관여하는 가정보육서비스가 지역거주 전체 영유아의 약 12%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들은 보육료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20%까지 지불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양육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보살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15~18개월부터 시작된다.

1~6세 유아의 64%가 종일제 유아학교, 11%는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6~7세아의 91%가 유아학교 교실에 참석하며, 7%는 가정보육시설에 맡겨지며, 6~9세 유아의 70%가 여가센터에 등록되어 있다.

매일 몇 시간 동안 유아와 가족(중종 저소득 및 이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유아학교들도 있다. 시골지역에서는 이러한 방문(drop-in) 센터들 중 일부가 가족지원(family resource)센터로 변형되고 있다.

국립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이러한 센터들과 가정 보육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비용은 임금과 연계되어 책정된다(The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



〈표 3-8〉 일반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등록 아동의 연령대별 아동 분포  
(단위: %)

| 연도   | 전체(0~10세)<br>아동 대비<br>보육시설 등록<br>아동비율 | 전체아동 대비 보육시설<br>이용아동 비율 |      | 전체아동에 대비 가정보육<br>이용아동 비율 |      |
|------|---------------------------------------|-------------------------|------|--------------------------|------|
|      |                                       | 0~2세                    | 3~6세 | 0~2세                     | 3~6세 |
|      |                                       | 1981                    | 36   | 13                       | 50   |
| 1987 | 48                                    | 18                      | 58   | 13                       | 21   |
| 1990 | 51                                    | 19                      | 61   | 10                       | 18   |
| 1993 | 52                                    | 23                      | 63   | 9                        | 14   |

자료: Lehto, Juhani, Moss & Rostgaard, "Universal Public Social Care & Health Services", in Kautto et als. 1999, p.120에서 재인용.

〈표 3-9〉 스웨덴 공공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단위: %)

| 구분   | 수요    |                     |     | 공급                  |     |                     | 수급차이 |  |  |
|------|-------|---------------------|-----|---------------------|-----|---------------------|------|--|--|
|      | 수(천명) | 전체<br>아동<br>중<br>비율 | 수   | 전체<br>아동<br>중<br>비율 | 수   | 전체<br>아동<br>중<br>비율 |      |  |  |
| 1980 | 348   | 49                  | 211 | 30                  | 137 | 19                  |      |  |  |
| 1986 | 374   | 58                  | 299 | 47                  | 75  | 12                  |      |  |  |
| 1990 | 400   | 57                  | 337 | 48                  | 63  | 9                   |      |  |  |
| 1993 | 443   | 56                  | 386 | 49                  | 57  | 7                   |      |  |  |
| 1996 | 494   | 62                  | 444 | 55                  | 50  | 7                   |      |  |  |

자료: SCB, 1994 and 1997, Childcare at the Crossroad, 2002에서 재인용. URL; <http://www.scb.se>

#### 나. 영국의 보육서비스

영국의 보육시스템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산하의 유아원(preschool) 프로그램인 교육 및 사회복지와 보건부와 지방사회서비스국 산하의 주간보호센터, 보육시설(nurseries), 가정보육(child-minders)으로 나뉘어진 이원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4년에 아동법(Children Act)이 제정되면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로 일원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아원은 2.5~3세 이상의 모든 아동이 학교교육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간주되는 반면,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빈곤층 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이민가정의 자녀이거나,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 장애아동 등 욕구가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의무교육 대상 이전의 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이원적 교육 및 보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1994년에는 부모가 원하는 모든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33주 기준, 1일 2시간 30분, 주당 5회의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4세 유아보육에 대한 지불보 증제도(Nursery Voucher Scheme)를 도입하여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유아 1인당 1,130파운드를 지급하였다.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유아교육과 보호를 확대지원하고 체제 개편을 시도하고자 EYDP(Early Years Development Partnership)을 출범시켰다. 여기서는 유아기 서비스 증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중간수입의 1/2 이하인 빈곤 가정의 아동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양질의 유아교육기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1998년 이 기구는 EYDCP(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0~14세까지의 아동과 16세까지의 장애아를 위한 국가 보호전략을 발표하고, 총 4억 7천만 파운드를 할당하였으며 이 중 4천 4백만 파운드가 1999년에서 2000년도 보호시설의 확충에 투입되었다. 이

해에는 유아와 그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EYNTO(Early Years 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을 설립하였다.

영국의 의무교육(compulsory school)은 5세에서 시작되나 거의 모든 4세 아동이 학교에 입학한다. 이에 블레어 행정부는 학교에 4세를 모두 포함시키고 현재 3세의 아동입학을 2002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에 1999년 3세아 무상교육의 재원으로 총 3억 9천만 파운드를 확보하고 3세 아동 무상보호시설 66%를 확충하였다. 그러나 3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겠다는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다만, 미국의 Headstart나 Early Headstart와 비교할 수 있는 Sure Start라는 조기 아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유아원 프로그램이 3세 아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반일제나 반주간제(part-week) 프로그램에 다닌다. 소수집단 또는 “발달위험에(at risk)” 처하거나 여러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사회복지 주간보호센터에 다닌다.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아주 극소수가 시설보호를 받고, 대부분은 놀이집단(playgroups)이나 가정보육(가족주간보호제공자들)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현재, 영국의 보육 시스템은 철학, 교과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초점에 따라 매우 다양화된 프로그램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보육 관할 행정부의 위치가 사회복지로부터 교육으로 이동되었다. 1999년부터는 유아교육과 보호기관의 등록을 교육고용부 산하 교육표준청(OfSTED: Office for Standard in Education)이 관리하여 장학관이 공·사립 유아교육기관을 감사하게 하였다. 교육고용부는 2001년에 교육기술부로 바뀌었다. 한편 1998년 9월 이후 모든 4세 유아에게 무상의 보편적인 유아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부모가 원할 경우 3세 유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3~5세의 유아 보호는 보통 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 다. 독일의 보육서비스

독일의 보육정책의 중심은 출산장려주의를 조장하고 가족과 여성에 대한 남성부양자에 대한 의존과 전통적 성역할의 개념을 복지국가에 반영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의 일대 변화는 통일 이후 서독지역에서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통일 독일이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의 동·서독간의 편차에 기인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보육행정의 이원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의 아동보호를 위한 보육시설과 중산층의 조기교육을 위한 유치원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들 두 기관 모두가 사회복지교육시설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른 보육모형을 채택하고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관련 업무는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은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에서 담당하는 이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보육시설은 크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Kinderkrippen)과 4~6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Kindergarten), 그리고 7~11세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는 호르트(Hort)로 구분된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시설은 지역에 따라 각각 분리설치 되어있거나 통합아동보육기관(Kindertagesstätte 혹은 Kindertageseinrichtung)이라 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육시설에서의 연령혼합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통합아동보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유치원(Schulkindertarten),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으면서 2년 과정으로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첫해에는 유치원 교육

을 실시하고 다음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요구하는 교과중심의 학급을 운영하는 유아학교(preschool)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정부, 그리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와 같은 비영리복지단체가 주축이 되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이나 부모공동보육이 실시되고 있다(박정선, 1998).

부모의 요구에 따라 시간제와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기관들 가운데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보호와 사회화 및 조기교육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화와 교육기능을 강조한다. 보육시설(Kinderkrippen)의 경우 오전 7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명의 영아들이 하나의 반을 구성하고 교사대 영아의 비율이 약 1:3정도이다. 한편 유치원은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종일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오전·오후반의 경우 하루 4시간씩 운영되며 종일반은 보육시설(Kinderkrippen)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운영되며,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1:1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3).

그러나 전일제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반일제 시설을 이용하는 취업여성의 근로시간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보육정책의 기본이 전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양질의 조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기조가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Bettio & Prechal, 1998).

〈표 3-10〉 독일의 보육서비스 체계

| 구분                | 보육시설                       | 가정보육모                      | 유치원                |
|-------------------|----------------------------|----------------------------|--------------------|
| 부모에 대한 자산조사 실시 여부 | 빈곤가정                       | -                          | 빈곤가정               |
| 관할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지방정부 복지국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지방정부 복지국 | 연방 교육연구부, 지방정부 복지국 |
| 지도·감독기관           | 지방정부 시설관리 및 재정지원           | 지방정부에 등록 및 승인 필요           | 지방정부 시설관리 및 재정지원   |
| 주요 이용자            | 직업훈련 중이거나 취업 중인 부모         |                            | 일반가정               |
| 이용 아동연령           | 6개월~3세                     | 0~3세                       | 3~5세               |
| 재정                | 지방정부 지원, 부모부담              | 정부지원, 부모부담                 | 공공 80%, 부모 최대 20%  |

자료: 박정선, 『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 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 제5권, pp.64~96, 1998, 재인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주어지는데 주로 저소득층 취업부모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 혹은 학생부부의 자녀 등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부족한 독일에서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보육시설이용료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데 부모 부담분은 시설이용료의 최대 16~20% 정도이다.

#### 4. 조세감면제도

##### 가. 미국의 아동양육지원관련 소득세제

미국의 경우 아동양육지원요인과 관련이 있는 소득세제상의 제도는 크게 부양자수에 따른 소득공제인 인적공제 (exemptions)와 자녀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및 부양비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와 교육비세액공제(education credit)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제상의 자녀 및 부양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로 소득공제의 형태보다는 세액공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소득공제의 형태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1) 인적소득공제(exemptions)

미국 소득세제하에서는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에서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른 인적소득공제를 제한 후 과표기준이 책정된다. 인적공제는 우리나라의 기본공제와 비슷하나, 고소득층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낮은 공제액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일인당 \$3,30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총소득(AGI)이 \$112,875(부부가 따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2006년 기준)을 넘는 가정에 대하여는 각각 공제액의 차등을 두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피부양자 조건은 납세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동거인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피부양자를 위한 경비를 50%이상 지출하여야 한다. 19세 이상이나 24세 이하의 학생이 아닌 피부양자의 총소득이 인적공제액(3,300달러)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미국의 경우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와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로 구별되는데, 환급되는 세액공제의 경우는 공제액이 과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환불되는 것이고,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초과분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는 공제액이 과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 환불이 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미국시민의 자녀가 17세 이하여야 하고 미혼이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만의 부양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자격요건이 되는 자녀 1인당 \$1,000 (2006년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자녀세액공제는 부부합산의 경우 \$110,000까지의 소득, 독신자의 경우는 \$75,000달러까지의 소득에,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55,00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1,000달러 당 50달러의 혜택이 줄어든다.

### 3) 부양비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자녀나 부양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보육비등의 비용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부양비 세액공제는 13세 이하의 자녀나 일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부양인에 대하여, 가정 유지를 위하여 최소 50%의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 자격요건이 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가정관리, 간호, 요리, 탁아 비용이나 혹은 6명 이상을 돌보는 탁아소 위탁 비용에 한한다. 부양가족 1인당 \$3,000, 2인 이상은 \$6,000 달러 한도 내에서 위탁비용의 35%가 허용된다. 근로소득보다 많은 위탁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편의 근로소득보다 위탁비용이 큰 것은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회사에서 자녀위탁을 위한 지원금을 따로 받았을 경우, 이중 최대 \$5,000까지는 총소득(AGI)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지원금액은 세액공제에서 감하도록 되어있다.

부양비 세액공제는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총소득(AGI)이 \$15,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의 \$2,000달러당 1%씩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 공제비율은 20%로서 총소득(AGI)이 \$43,000를 초과하는 사람은 20%를 적용받는다.



4) 교육비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

부양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HOPE credit라는 프로그램과 Lifetime learning credi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HOPE program은 중등교육 이상의 학비에 대하여 교육과정 첫 2년간 2006년 기준 \$1,650 까지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비관련 제반 경비의 \$10,000까지에 한하여 교육경비의 20%를 lifetime learning credit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5) 근로세액공제(EITC)

근로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였을 경우라도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의 유형이다. 근로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여주는데, 이때 자녀수에 따라 공제 가능한 근로소득의 상한선 및 잠정 세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부양자녀수와 관련한 세제로 다루기로 한다. 세액공제의 혜택은 근로소득과 총소득(AGI)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개인과 일부 독신자에게 주어지는데, 자격요건이 되려면, 납세자와 반년 이상 같이 거주한 19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이어야 한다. 학생의 경우라면 24세 이하까지 자녀로 분류되고, 불구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나이에 제한 없이 부양자로 인정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미국 내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고 25~64세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면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되어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2003년의 경우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는 4,990달러의 소득액까지 7.65%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고, 1명인 경우 7,490달러의 소득액까지 34%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2명 이상인 경우 10,510달러까지의 소득액에 대하여 4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3-11〉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환산표(2003)

(단위: 달러, %)

| 자녀수   | 한계비율 | 공제가능한 최대근로소득 | 잠정세액공제<br>'06년도 감면액(억원) |
|-------|------|--------------|-------------------------|
| 없음    | 7.65 | 4,990        | 382                     |
| 1명    | 34.0 | 7,490        | 2,547                   |
| 2명 이상 | 40.0 | 10,510       | 4,204                   |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조세연구원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총소득(AGI)중 큰 쪽을 기준으로 보아 소득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세액의 감축이 발생하는 소득구간과 감축비율 및 소득 상한액은 근로자인지 기타 납세자인지의 여부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3-12>에 제시하였다.

〈표 3-12〉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감축(2003)

(단위: 달러, %)

| 자녀수    | 감축 출발점 | 감축비율  | 감축 종료점 |
|--------|--------|-------|--------|
| 부부합산   |        |       |        |
| 없음     | 7,240  | 7.65  | 12,230 |
| 1명     | 14,730 | 15.98 | 30,666 |
| 2명 이상  | 14,730 | 21.06 | 34,692 |
| 기타 납세자 |        |       |        |
| 자녀 없음  | 6,240  | 7.65  | 11,230 |
| 1명     | 13,730 | 15.98 | 29,666 |
| 2명 이상  | 13,730 | 21.06 | 33,692 |

주: 초과소득에 따른 출발 및 종료점은 근로소득과 조정된 총소득 중 큰 금액임.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조세연구원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 나. 영국의 아동양육지원관련 소득세제

영국의 경우는 소득공제에 관한 한 상당히 엄격한 경우이다. 따라서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공제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영국은 부양 아동수에 따른 소득공제가 없는 반면,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부양자수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는 총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일차세액을 구한 뒤 최고소득 세액공제(top slicing relief), 벤처기업투자조합, 대출 금이자, 부부, 배우자 잉여 이전분, 근로여부, 자녀 등의 요소를 감안한 조정을 거친다.

<표 3-13>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세액공제에 있어서 2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보육비조로 1주당 200파운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녀세액공제 자녀 당 1,445파운드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장애인 자녀는 2,155파운드의 세액공제를, 그리고 추가 장애인 자녀 1명당 865파운드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표 3-13〉 근로세액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 항목                    | 파운드/1년    |
|-----------------------|-----------|
| 근로세액공제                |           |
| - 기본요소                | 1,525     |
| - 부부요소                | 1,500     |
| - 30시간 요소             | 620       |
| - 장애근로자 요소            | 2,040     |
| - 추가장애근로자 요소          | 865       |
| - 자녀보육 요소(최고액, 2자녀이상) | 200파운드/1주 |
| 자녀세액공제                |           |
| - 가족 요소               | 545       |
| - 자녀 요소               | 1,445     |
| - 장애자추가 요소            | 2,155     |
| - 추가장애자녀 요소           | 865       |
| 공통특성                  |           |
| - 첫째 소득구간             | 5,060     |
| - 둘째 소득구간             | 50,000    |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조세연구원(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 다. 독일의 아동양육지원관련 소득세제

독일의 소득세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외로서 특별지출과 비경상적 부담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등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특별지출은 연금 및 연금형 저축에 대한 불입금, 보험료, 직업교육비등이 있다. 독일의 경우 특이한 점은 부양자녀수에 대한 소득공제와 자녀보조금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는 한 자녀당 2,904유로를 공제받도록 하고 있는데, 부부합산의 경우는 이의 두배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

면, 자녀보조금은 세 번째 아이까지는 한 자녀당 매달 154유로의 자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자녀보조금을 받게 되면 부양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독신가장이 한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는, 특별히 2,340유로의 가계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가주택 구입 및 건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상한선이 자녀수와 연동되어 있다. 199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된 건축물이나 1995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물에 한하여 자가주택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독신자의 경우 81,807유로 이하의 소득을, 부부의 경우 163,614유로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가정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 자녀 1인당 30,678유로씩 연소득의 한계가 높아진다.

## 제4장 주요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가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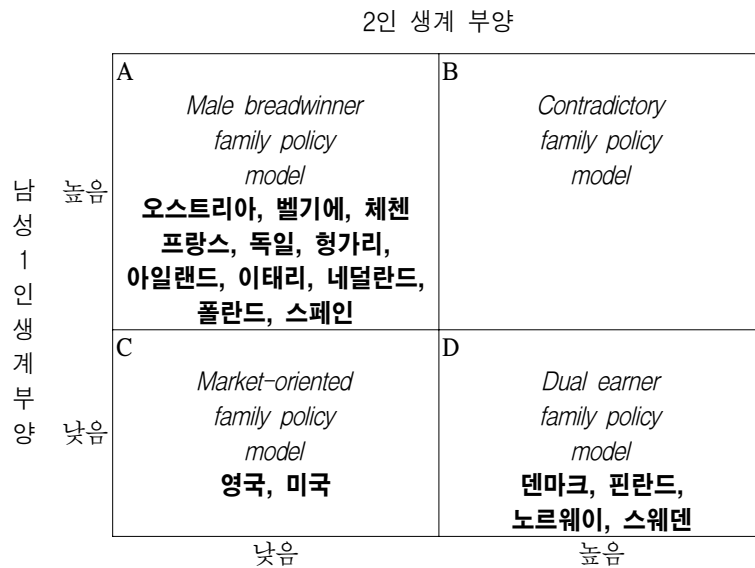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국가별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고 국가별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그 현황을 보다 면밀히 고찰해 보도록 한다. 개별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 국의 정책 철학 및 기초를 살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Korpi(2000)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가족 지원 정책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각국의 정책이 남자가 생계 부양자인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는가 혹은 부부가 모두 직업활동을 하는 2인 생계 부양자 가족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male breadwinner family policy model),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dual earner family policy model), 시장 지향적 가족 정책 모형(market-oriented family policy model)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은 가족 내의 아버지가 주요 수입 원천이며 어머니는 주로 가족의 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에서는 어머니가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와 가정 내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아버지에게도 가정내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정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결정하기 위하여 Korpi(2000)는 부모 출산 휴가의 혜택 범위, 가족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범위, 아동 수당이나 결혼 보조금 같이 현금 혹은 조세를 통해 지불되는 소득 보전 정책들을 고려

하여 유럽의 국가와 미국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혹은 부양자녀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 혹은 학령 전 유아(older pre school children)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3세 이전 영아에 대한 공공 보육 제공, 노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부모 보험, 아버지에 대한 유급 출산 휴가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가족 정책의 유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에서 횡축은 2인 생계 부양을 지지하는 강도를 나타내며 종축은 남성 1인 생계 부양을 지지하는 강도를 나타낸다.

[그림 4-1] 가족 지원 정책의 유형별 모델



자료: Korpi W. (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rtner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vol. 7(2): 127-191; Institute for Future Studies(2004)에서 재인용

위의 그림에서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는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은 남성 생계 부양에 대한 지지도는 높으나 2인 생계 부양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A 해당된다.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은 남성 생계 부양에 대한 지지도는 낮으나 2인 생계 부양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D에 해당된다. 가족에 대한 소득 이전 정책이 미흡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가 낮은 시장 지향적 가족 정책 모형은 남성 생계 부양과 2인 생계 부양 모두에 대해 지지도가 낮은 C에 해당된다. 남성 생계 부양에 대한 지지와 2인 생계 부양에 대한 지지가 모두 높은 정책은 실제적으로 상반된 이념을 동시에 지지하고 있어 상충되는 가족 정책 모형 (contradictory family policy model)이라 명하였다.

Korpi(2000)의 연구에서는 상충되는 가족 정책 모형에 속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을 위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인 생계 부양에 대한 정책도 함께 하고 있으며 (예: 프랑스, 벨기에), 반대로 2인 생계 부양에 대한 정책을 위주로 하면서도 남성 1인 생계 부양 관련 정책도 지원하는 국가가 있다(예: 스웨덴). 따라서 실제의 경우 개별 국가가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 이든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 이든 어디에 강조점을 두든지 이와 상반된 이념을 지지하는 정책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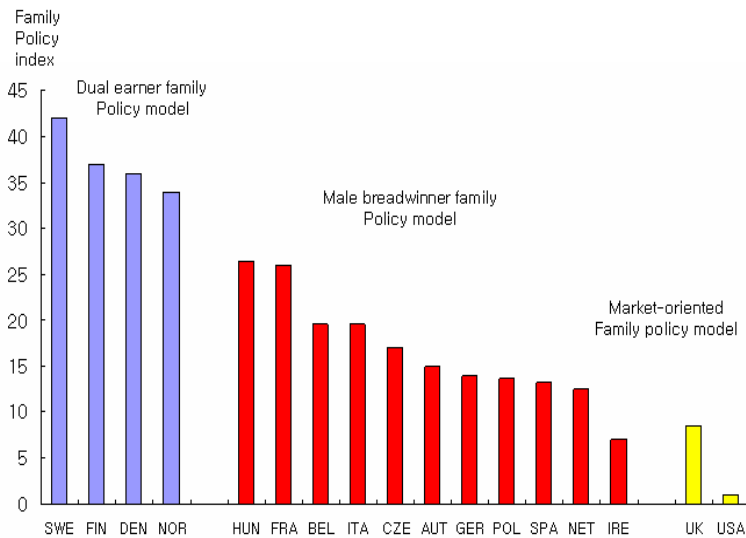
동 모형에 따르면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첸,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이며,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며, 시장 지향적 모형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Korpi(2000)는 아동 수당 정책, 출산 휴가 수당, 공공 보육의 수혜 범위를 고려하여 가족 정책 지표를 개발하였다. 아래 도표에서는 세가지 가족 정책의 모형별로 가족 정책 지표 점수를 도식화 하였다. 이 결과, 가족 정



책 지표 점수는 가족 정책의 모형과 큰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생계 부양자 모형을 지지하는 북구 유럽 국가는 노동과 연계하여 잘 발달된 부모 보험과 영아에 대한 광범위한 보육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아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림 4-2] 생계부양 정책 모형에 따른 가족 정책 지표



자료: Institute for Future Studies(2004) "Sustainable Policies in an Ageing Europe: A Human Capital Response"

1인 생계 부양 정책 모형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간 정도 수준의 가족 정책 지표 점수를 보여 주고 있었으며, 각 국가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모형을 지지하는 국가 중 헝가리와 프랑스의 경우 다른 국가 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일정 비율의 육아 휴직 급여와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국가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육아 휴직 급여와 아동 수당의 수준이 낮고 공공 보육 시설 역시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이었다.

시장 중심적인 모형을 지지하는 영국과 미국은 가족 정책 지표 점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는 모두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고 영국의 경우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은 낮지만 중상위 수준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유급 육아 휴직 제도가 미비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조세 혜택 수준도 중간 정도 수준이다<sup>10)</sup>.

본 장에서는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 시장 지향적 가족 정책 모형 중에서 광범위한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남성 1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 모형과 2인 생계 부양 가족 정책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의 정책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각 모형에 해당하는 국가 중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두 가족 지원 정책 모형의 사례를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국립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며, 프랑스의 경우는 가족수당금고(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스웨덴과 프랑스 외에도 우리나라와 지리적 혹은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저출산 정책을 펼쳐 온 일본의 사례도 추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0) 미국의 보육정책은 시장화전략과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공보육의 제공, 이원구조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적, 계층적 문제를 재생산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보육시장을 광범위하게 발달시켜 시장화 된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일반적인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복지 수급모(welfare mothers)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 제2절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1. 스웨덴의 출산률 현황

2007년 현재 스웨덴의 인구는 9백만명으로, 이 중 0~17세 연령은 2백만명,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수는 1백만 가정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1.9로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속한다. 스웨덴의 출산률은 과거 몇 십년동안 상당히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스웨덴의 출산률은 1960년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이후 각종 가족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 스웨덴의 합계 출산률은 2.13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의 하나에 이르렀으나, 다시 1999년 1.5로 하락하였다. 그 후 스웨덴의 합계 출산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1.65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스웨덴에서는 106,000명이 태어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5년도와 비교하여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 상태와 노동 시장 상황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출산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출산률은 근로 여성과 근로 남성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 경제활동 인구 사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을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고용 형태가 종일 고용(full-time)인지, 아니면 부분 고용 (Part-time)인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종일 고용 근로자가 부분고용 근로자에 비해 높은 출산률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도 출산률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부모가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를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출산률 회복을 정책의 효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와 정책 시행과정을 살펴 볼 때 취업 여성의 가정과 직장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출산 및 육아 관련 각종 휴가 정책 및 수당 제도, 아동 보육 서비스 등의 효과가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부모로 하여금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이외에도 경제 발전과 높은 여성 노동 비율 (25~44세 여성 노동 인구 비율 88%) 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특징

서구 선진국가의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일정 유형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정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 정책 유형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이 일인생계부양 가정이 독려되는 국가에서는 조세 체계나 가족 지원 정책이 부부 중의 한사람-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가사 일을 분담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이 이인생계부양가정을 독려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조세체계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부모 모두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스웨덴 가족 정책의 목적은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부의 재분배와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아동의 평등권과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정책 입안자들은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이 매일 매일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가족 정책은 양성 평등과 아동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력히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 가족 지원 정책의 표면적인 목적은 출산률 증가라기보다 재정적

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사회 보험 형태로 지원되는 가족 지원 정책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인 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은 국립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RFV)과 지역 사회보험 사무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스웨덴 가족 정책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성을 촉진하는데 있다. 표방된 목적 중의 하나는 가사일과 육아에 있어 남녀 모두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데 있다. 1960년대 복지 정책과 부의 재분배 정책이 확장될 무렵, 스웨덴의 가족 정책이 남자가 노동 시장에서 근로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일인생계부양가정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남녀 모두 노동 시장과 가사·육아에 있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인생계부양가정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이인생계부양가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인생계부양가정을 지지하는 정책이 가정을 경제적 유기체로 변질되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양육과 육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가족내에서 수행하던 일들이 정부의 일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스웨덴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성 평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인생계부양자 모형이 지지를 받았으며, 1970년대 동안 이러한 철학을 지지하는 많은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인생계부양자 모형은 이분적인 조세제도, 육아지원시설의 확대,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에 의해 현실화 되었다. 이분적인 조세제도는 1970년대 초에 도입되었는데, 개인 소득이 각각 분리되어 과세되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더 많은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

1974년 도입된 육아휴직제도는 소득과 연계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리고 출산과 더불어 휴직 기간을 갖고 다시 같은 직장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을 더욱 촉진하였다.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은 부모로 하여금 육아와 직장생활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육아 휴직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휴직 기간으로 6개월을 보장해 주었다. 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 경력에 있어 과도한 단절을 가져 온다고 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짧은 휴직 기간은 오히려 취약한 근로 활동과 승진 기회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야기 하였다.

스웨덴 가족 정책이 발달함에 따라 양육 및 노인 보호와 같이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수행되던 일들이 아웃소싱되었다. 그 결과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 근로할 수 있게 되었고, 보육과 노인 요양과 같이 전통적으로 가정내에서 수행하던 일들에 대한 노동 수요가 증가 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전에는 가정 내에서 수행하던 일들이 현재 대부분 공공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는 보육 시설이 확보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보육 시설의 확충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모가 직장을 갖기를 더욱 쉽게 하였다. 오늘날만큼 보육 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1970년대에 보육은 대부분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 졌다. 1995년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이 요구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 졌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출산률 증가는 1990년대 육아 일일 보호 센터(day-care center)의 증가를 가져왔다. 1998년 이후 육아 지원 시설 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산률의 감소와 더불어 취학전수업이 도입된 이래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법률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아버지

가 자녀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법이 1917년 통과 되었다. 1930년대 부터 아버지가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양육비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스웨덴 사회 정책이 자녀의 재정적인 복지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초기 형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재정적인 책임은 오랜 기간 정책의 한 부분이었지만, 자녀의 권리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였다. 육아 휴직 정책이 도입되고 나서 아버지들은 육아 휴직 기간의 50%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 받았다. 이것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부모간의 평등성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가 양부모를 만나고 함께 지낼 시간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바 있다.

스웨덴에서 남성은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책임이 있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그러하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가사일과 양육과 함께 가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만족감 역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스웨덴에서 남성들이 양육에 사용하는 노력과 시간의 증가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스웨덴의 정책 사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남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해서 여성이 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 3.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스웨덴 가족 지원 정책은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소득조사(means-tested) 혹은 욕구조사(needs-tested) 수당 세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주거지 연관된 급여(residence-related benefit)와 노동 연관된 급여(work-related benefit)로 구분된다. 주거지 연관된 급여는 수급자가 스웨덴에 거주한다는 조건하에 지급하는 급여이며, 노동 연관된 급여는 수급자가 스웨덴에서 근로한다는 조건하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스웨덴의 가족 지원 정책은 가정에 자녀가 없는 시기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 등 생애 주기별로 재원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소득 이전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자녀가 적은 가정에서 자녀가 많은 가정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수당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정 거의 모두에게 지원되는 정책이다. 아동 수당 정책은 1948년에 도입되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그리고 적은 수의 자녀를 둔 가정과 많은 수의 자녀를 둔 가정 사이에서 재원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재정적으로 보상하려는 정책이다. 육아 휴직 급여의 목적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4년 이래 점차로 변화되어 왔다.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여성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남녀평등을 증진시키며,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정에 남아 자녀를 돌봄으로써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최근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가 50%씩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육아 휴직 신청자 중 85%를 여성이 그리고 15%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 모두로부터 양육을 받을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병간호휴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혹은 아픈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잠시 머무르는 부모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에게 집에 머무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보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 도우미(child-carers)의 수를 증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 도우미는 가정으로 파견되어 근로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를 도와 자녀를 돌보아 주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녀를 돌보는 데는 부모가 최상이라는 의견이 주장되어 오늘날 병간호휴가 정책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병간호 휴가에 대한 권리는 제 3자에게 이전될 수 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그만 둔 사람은 병간호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신출산급부는 임신 중에 태아에게 위험한 작업을 함으로써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소득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정책이다. 임신출산급부는 태아에게 위험한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특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노동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임신출산급부를 받는 여성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머무르지만, 임신출산급부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대신에 병가수당(sickness cash benefit) 혹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 임신출산급부는 임신 중에 직장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임신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임신한 여성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단일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임신 말기 모든 여성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보상 제도 마련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주거 수당은 소득 조사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 지급하는 수당제도이다. 주거 수당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기본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표준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한다는 두가지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인 목적은 빈곤한 가정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표준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주거 수당은 주거 정책과 가족 정책 차원을 혼합한 차원에서 주거 비용에 대한 수당인 동시에 자녀에 대한 수당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60%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지원을 하는데, 상호간에 이혼 합의를 보지 못한 부모에 대해 양육비를 책정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은 한부모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혼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재정적 안정성이 위협 받을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도 있다. 수급 자격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결정된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한 한부모가족수당을 모두 되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은 자녀의 양육비를 전 배우자가 지불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성질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동보호수당(care allowance), 보조자수당(assistance allowance), 차 수당(car allowance)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만성질병 혹은 장애아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하여 노동을 할 기회가 부족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를 가진 여성은 더 많은 가사 노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를 가진 한부모는 실업자일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의 병가휴가와 영구적인 장애연금수당자로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표 4-1〉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 유형              | 내용   |
|-----------------|--|
| 보편적 수당          | - 아동 수당(general child allowance)<br>※ 다자녀 가족 보조금 (Large family supplement),<br>입양 수당 (cost-of-adoption allowance) 포함   |
| 사회보험            | - 육아 휴직 급여 (parental cash benefit)<br>- 병간호휴가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br>- 아동연금 (child pension)<br>- 임신출산급부(pregnancy cash benefit)<br>- 보육기간 연금권(pension right for childcare years) |
| 소득조사 혹은 육구조사 수당 | - 한부모가족지원(maintenance support)<br>-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br>- 아동보호수당(care allowance)  |

자료: 스웨덴국립사회보험청(2007)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Annual Report 2006"

〈표 4-2〉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지출한 비용 (2004~2006)  
(단위: 크로나)

| 구분              | 2004   | 2005   | 2006   |
|-----------------|--------|--------|--------|
| 사회보험            | 28,580 | 29,504 | 31,570 |
| 소득조사 혹은 육구조사 수당 | 10,017 | 10,024 | 10,272 |
| 보편적 수당          | 20,907 | 21,495 | 23,653 |
| 합계              | 59,505 | 61,022 | 65,495 |
| 행정비용            | 1,835  | 2,001  | 2,249  |
| 총비용             | 61,340 | 63,023 | 67,744 |

주: 사회보험: 육아휴직급여, 병간호휴가, 아동연금, 임신출산급부, 보육기간연금권,  
소득조사 혹은 육구조사 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주거수당, 아동보호수당, 보편적 수당: 아동수당, 다자녀가족보조금, 입양수당

자료: 스웨덴국립사회보험청(2007)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Annual Report 2006"

스웨덴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지출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 수당, 육아휴직급여, 병간호휴가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급여 비용 및 행정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1) 가족 및 아동 수당 제도 (Child and family benefit)

##### ① 아동 수당 (Child allowance)

스웨덴에서 지급하고 있는 가족 및 아동 수당 제도 중 아동 수당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수당의 종류는 기본아동수당(basic child allowance), 연장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 다자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의 세 종류가 있다. 모든 부모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달부터 혹은 스웨덴에 이주한 달부터 자녀의 연령이 16세에 이르는 분기까지 기본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액은 매월 20일까지 지급된다. 자녀의 연령이 16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연장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본아동수당과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다면 다가족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공동 법적 보호자인 부모는 부모 중 누구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한부모가 아동의 법적 보호자일 경우, 아동수당은 법적 보호자인 한부모에게 지급된다.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부부가 서로 결혼한 상태라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자녀의 공동 법적 보호자가 된다.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자녀의 공동 법적 보호자이며 부모권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복지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추후에 세무서에도 알려야 한다.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보험청이 이 부모가 자

녀를 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특별한 경우에 아동 수당은 부모가 아닌 제 3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특별히 지정된 보호자가 있는 경우나, 아이를 맡아 기르는 집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6세 이후 자녀가 상위 2차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National Board of Student Aid가 교육수당(study allowance)을 지급한다. 한편 16세 이후에도 자녀가 의무 교육 기관 혹은 정신지체아동의 의무 교육 기관에 계속 다니는 경우 연장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지원 절차 없이 수당이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최소한 2명의 자녀에 대해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부모는 자동적으로 다자녀 가족 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급받는다. 자녀가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사회 보험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자녀의 나이가 20세 되는 6월까지 지급된다.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함, ② 16세 이상인 경우, 상위 2차 학교, 의무 교육 기관, 장애 아동을 위한 의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어야 함, ③ 자녀가 미혼 상태이어야 함. 한편,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임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녀 2명 이상을 가지고 있고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결혼한 상태의 부부, 이혼 혹은 별거한 부부,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함께 낳은 경우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급 예시 1>**

John과 Emma는 재혼한 부부이다. John은 이전 부인 사이에서 Arvid와 Beata 두 명의 자녀를 갖고 있다. Emma는 이전 남편 사이에서 Cissi라는 자녀를 갖고 있다. John은 Arvid와 Beata에 대해 월 100 크로나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Emma는 자녀가 한 명인 이유로 다자녀 가족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다. 재혼 후에 부부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신청하여, Arivid, Beata, Cissi 세 자녀에 대해 월 454 크로나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John과 Emma는 두 부부 중 누가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급 예시 2>

Brian은 Anna와 결혼하고 Tom을 낳았다. Tom에 대한 아동수당은 Anna가 받고 있다. 두 부부는 두 번째 자녀인 Jerry를 낳았다. 부부는 Jerry에 대한 아동수당을 Brian이 받도록 결정하였다. 아동수당이 각기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부가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자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년 8월 현재 스웨덴에서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및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급액수는 아래의 표를 보면,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원액이 받고 있는 아동수당 지원액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표 4-3> 스웨덴의 아동수당 및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원금액(2007년 8월 현재)  
단위: 크로나

| 자녀수 | 아동수당액 | 다자녀 가족 보조금액 | 총 급여액 |
|-----|-------|-------------|-------|
| 1   | 1,050 | -           | 1,050 |
| 2   | 2,100 | 100         | 2,200 |
| 3   | 3,150 | 454         | 3,604 |
| 4   | 4,200 | 1,314       | 5,514 |
| 5   | 5,250 | 2,364       | 7,614 |

주: 자녀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함.

자료: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alder/>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부모는 아동수당을 나누어서 각자 받을 수 있는데, 아동수당을 나누어서 각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부부가 서로 50%씩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 ② 부부가 함께 살아서는 안된다. ③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 법적 보호자라야 한다. ④ 아동수당을 각자 나누어 받을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부부가 아동 수당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1자녀에 대하여 각각 525 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을 부부가 각자 나누어 받는 경우,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부부사이에 나누어 지급될 수 없으나, 부부가 각자 얼마나 받을지 재 산정되어야 한다. 아동 수당액을 나누어 지급 받기 전에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100크로나를 받은 경우, 아동 수당액을 나누어 받는다고 해서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50크로나씩 부부가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각기 지급받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아동 수당액을 지급 받는 자녀 몇 명을 각각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냐에 달려 있다.

〈표 4-4〉 스웨덴의 부부 공유 다자녀 가족 보조금액(2007년 8월 현재)  
단위: 크로나

| 자녀수 | 자녀 1명당<br>다자녀 가족 보조금액 | 부부가 공유하는 자녀 1명당<br>다자녀 가족 보조금액 |
|-----|-----------------------|--------------------------------|
| 1   | -                     | -                              |
| 2   | 100/2=50              | 50/2=25                        |
| 3   | 454/3=151             | 151/2=76                       |
| 4   | 1314/4=329            | 329/2=165                      |
| 5   | 2364/5=473            | 473/2=237                      |

자료: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alder/>

두 자녀 가정에 지불되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100 크로나 이다. 이것을 자녀 1명당으로 계산하면 50 크로나 이고, 이를 부부가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다고 하면 각기 25 크로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에 대한 아동 수당을 부부가 공유해서 갖는 경우,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25\text{크로나} \times 2\text{명} = 50$  크로나를 받게 된다. 세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부부간에 공유하여 받고, 나머지 한 자녀에 대해서는 온전히 받는 경우,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76\text{크로나} \times 2\text{명}) + (151\text{크로나} \times 1\text{명}) = 303$  크로나를 받게 된다. 교육 수당도 아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동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 [아동 수당 공유 예시 1]

#### ◎ 부부가 나누어 받기 이전

이혼한 부모인 Christina와 Mattias는 Filip을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다. Christina는 Filip에 대한 아동 수당 1,050 크로나를 받고 있다. Mattias는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Elin이라는 딸을 두고 있으며, Elin에 대하여 온전한 아동 수당 1,050 크로나를 받고 있다. Christina와 Mattias 모두 한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

#### ◎ 부부가 나누어 받은 이후

Christina와 Mattias는 Filip에 대한 아동수당을 나누어 받기로 합의하였다. Christina는 Filip에 대한 공유된 아동 수당으로서 525크로나를 받게 되었으며,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아동 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Mattias는 Filip에 대하여 공유된 아동수당 525 크로나를 받으며, Elin에 대하여 온전한 아동수당 1,050 크로나를 받는다. Mattias는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Filip에 대한 다자녀 가족 보조금 25 크로나와 Elin에 대한 다자녀 가족 보조금 50 크로나를 합쳐 75 크로나를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받는다.

### [아동 수당 공유 예시 2]

#### ◎ 부부가 나누어 받기 이전



이혼한 부부인 Sophia와 Gustav는 William과 Moa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다. Sophia는 William과 Moa에 대한 온전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며,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Kalle에 대해서도 온전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Sophia는 세 명의 자녀에 대해 아동 수당 3,150 크로나를 받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 보조금 454 크로나를 받고 있다.

◎ 부부가 나누어 받은 이후

아동수당을 Sophia와 Gustav가 나누어 받기로 합의한 후, Sophia는 William과 Moa에 대해 공유된 아동수당  $525\text{크로나} \times 2\text{명} = 1,050$  크로나와 Kalle에 대해 온전한 아동수당 1,050 크로나를 받게 되었다. (총 2,100 크로나). 세자녀에 대해 아동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Sophia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William과 Moa에 대해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76\text{크로나} \times 2\text{명} = 152$  크로나와 Kalle에 대한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151 크로나를 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총 303 크로나를 받게 된다. Gustav는 Sophia는 William과 Moa에 대한 공유된 아동수당  $525\text{크로나} \times 2\text{명} = 1,050$  크로나를 받으며,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25\text{크로나} \times 2\text{명} = 50$  크로나를 받게 된다.

② 아동 보호 수당 (Care allowance)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볼 경우 부모는 아동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수당 지급 조건은 16세 이하의 자녀가 질병, 학습장애, 기타 기능적 장애로 인해 최소 6개월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자녀의 질병 혹은 기능적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경우이다. 만일 부모가 질병을 가진 혹은 장애가 있는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보호 수당은 이러한 자녀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의 총합계에 준하여 지급된다.

아동보호수당은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지급이 가능하다. 아동보호수당은 자녀가 장애수당을 받게 되는 19세 6월 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병원 혹은 다른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아동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자녀가 심각하게 아플 경우, 아동

수당을 여기에서 6개월 더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수당은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가 원하는 경우 아동보호수당은 부부 모두에게 나누어서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는 모두 자녀의 공동 양육자이어야 하며, 자녀의 보호에 공동으로 동참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수당은 부모가 아픈 자녀를 특별하게 돌보는 노동에 대한 댓가이며, 자녀의 질병과 장애에 수발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아동보호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며, 연금 산정 시 적용되지만 질병 수혜금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고 있다.

아동보호수당은 일시금, 혹은 1/3, 1/2, 1/4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다. 가정 내에 장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총 보호 노력과 총 비용이 모두 합산되어 고려된다. 자녀를 개별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보호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합산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명이상의 아픈 자녀를 돌보고 있고 한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지급되는 수당과 비교하여 너무 클 경우, 아동보호수당액에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현재 아동보호수당의 최대 한도액은 월당 8,396 크로나이며 최소액은 최대 한도액의 1/4인 월당 2,099 크로나이다.

자녀를 병원에서 돌보고 있는 경우, 휴일에 집에서 부모가 일시적으로 직접 돌볼 때 부모는 돌보는 날수에 대하여 휴일자녀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자녀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3개월 동안 적어도 10일 (연속적이지 않아도 됨)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함, ② 3개월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연속적으로 적어도 10일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함. 휴일자녀보호수당액은 일당으로 하여 월 아동보호수당액의 1/30이 지급된다. 공공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집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수당이 지급된다.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부모는 아동보호수당의 일부를 자녀 사망일부터 8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 아동의 부모는 특별한 경우 장애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데 차량이 필요할 때 차량 지원(car support)을 받을 수 있다.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모는 특별한 경우 보조수당(assistance allowance) 및 병간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아동 연금 (Child pension)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은 17세까지 아동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계속 학교에 다니거나 연장아동수당 혹은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20세가 되는해의 6월까지 아동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연금에서 지급되는 아동연금 급여액수는 사망한 부모에 대한 기본 연금 금액의 25%가 지급된다. 2002년의 경우 월 790 크로나(원화로 약 114,000원)가 지급되고 있다. 보조적인 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아동연금 급여액수는 사망한 부모에 대한 보조적인 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다. 자녀가 형제가 있는 경우 각 형제 당 20% 추가해서 지급된다. 아동연금 지급액은 형제들 간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지급된다. 기본연금과 보조적인 연금을 합하여 아동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총 아동연금 지급액은 2002년에 월 1,200 크로나(원화로 172,8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 (Maintenance Support)

한부모가족지원은 이혼한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 양육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부부 양방의 이혼 합의

혹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녀 지원 필요 정도와 부모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양육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사회보험청이 자녀를 공식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한부모가족지원을 지급한다. ①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 ② 합의된 양육비용이 월 1,173 크로나 이하일 경우, ③ 부모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때, ④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아동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⑤ 한부모가 자녀를 입양하였을 때 이다.

사회보험청이 한부모가족지원을 지급하였을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제공된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갚아야 한다. 되갚아야 하는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된다.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은 보조적인 수당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한달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액수는 1자녀 당 월 1,173 크로나(원화로 168,912원)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를 때 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어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연장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자녀 연령이 20세가 된 6월까지 지급된다. 아동은 반드시 스웨덴에 거주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은 주소지가 배우자 중 일방 혹은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

#### ⑤ 주거수당 (Housing allowance)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없지만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 가정에 대해 주거 수당이 지급된다. 주거 수당 액수는 주택의 크기, 주거비용,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우자 중 한쪽 일방의 소득이 연간 58,500 크로나 혹은 월 소득이 5,000 크로나 이상인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감소한다. 한 부모가정일 경우 연간 소득이 117,000 크로나 이상 혹은 월 소득이 10,000 크로나 이상인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감소한다.

〈표 4-5〉 스웨덴의 주거수당 급여액 (2001년 1월 현재)

| 구분                         |     | 월 최대 급여액 (크로나) | 최대 주거지 넓이(m <sup>2</sup> ) |
|----------------------------|-----|----------------|----------------------------|
| 자녀가 있는 가정                  | 자녀수 | 2,500          | 80                         |
|                            | 1명  | 3,175          | 100                        |
|                            | 2명  | 3,900          | 120                        |
|                            | 3명  | 3,900          | 140                        |
|                            | 4명  | 3,900          | 160                        |
| 자녀가 없는 가정<br>(부부연령 18~28세) |     | 1,100          | 60                         |

자료: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2003)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 휴직관련 급여

① 육아 휴직 (Parental cash benefit for the birth of a child)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근로를 포기할 경우 육아 휴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육아 휴직 급여는 2002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480일 동안 주어지며, 200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450일 동안 주어진다. 육아 휴직은 부모 모두 240일씩 동등하게 나누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부 중 일방이 각자에게 주어진 240일의 육아 휴직일을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200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적어도 30일을, 2002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적어도 60일을 육아 휴직

기간으로 가져야 한다. 한 부모의 경우, 480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 60일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부모 훈련과 연계하여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자녀가 8살에 이르기 까지 혹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닐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직일은 하루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1/3일, 1/2일, 1/4일, 1/8일로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급여도 이에 준하여 지급한다.

1998년부터 휴직 급여는 소득의 8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수는 월 19,000 크로나이다 (원화로 약 2백7십만원).

## ② 병간호휴가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아픈 자녀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경우 병간호휴가가 주어 진다. 병간호 휴가는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자녀 나이 16세까지 대상이 된다. 병간호휴가에 따른 현금 급여는 자녀당 연간 60일 동안 지급된다. 병간호휴가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경우 부모 대신에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제 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특정한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Act on Support and Service의 적용을 받는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16세 이후 21세가 될 때까지도 병간호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15세 이하이면서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Act on Support and Service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자녀당 연간 10일(contact day)의 병간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일은 하루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1/3일, 1/2일, 1/4일, 1/8일로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급여도 이에 준하여 지급한다. 병간호휴직급여로 1997년에는 소득의 75%를 지급하였으나, 1998년부터 소득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③ 아버지 휴가 (Paternity leave)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였을 때 아버지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01년 7월부터 특정한 경우 아버지 대신에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버지 휴가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후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998년 1월부터 아버지 휴가의 급여는 소득의 8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④ 임신출산금부 (Pregnancy cash benefit)

임신출산금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임신 중에 하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일 할 수 없거나, Work Environment Act에 따라 업무를 일시적으로 그만두었을 때, 임산부는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관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업무를 재배치해 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임신출산금부를 받을 수 있다 ①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의 1/4이 감소하였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일을 하는 경우, ② 작업 환경이 위험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경우, 임신출산금부로서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최소 2달 이전에 최대 50일에 대하여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Work Environment Act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을 할 수 없게 된 날에 대하여 임신출산금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 10일 전에 대해서는 임신출산금부를 받을 수 없다. 부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임신출산금부를 노동 시간에 준하여 부분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부터 급여액으로 소득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달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19,000크로나이다.

### 제3절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1. 프랑스의 출산률 현황

프랑스의 출산율은 1980년도 평균 자녀수 1.9명에서 1997년 1.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평균수명은 남성 74.1세, 여성은 82세로 나타나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프랑스의 혼인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1,000명당 6.2건에서 1997년에는 1.9건으로 저하되었고, 이혼율은 1980년도의 22.5%에서 1996년에는 38.3%로 증가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60~1965년 2.85명이었으나, 1990~1995년에는 1.71명으로 줄어들었고, 2000~2005년에는 1.89명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프랑스 양육 지원 정책의 특징

프랑스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혼인 관계없는 남녀 관계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등은 사회적 양육에 대해서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프랑스의 분위기와 맞물려 비교적 일찍 출산 지원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1983년 의회가 인구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가장 먼저 저출산 대응책을 세운 국가로서 프랑스 정부는 출산 증가를 위한 가족 정책을 채택하여 왔고 현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국가이다. 가족 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 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고 가정 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여성의 모성 역할에 대한 인정과 가족 수당을 중심으로 가족 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은 보편적인 가족 수당 지급에서



선별적인 수당지급으로 가족집단 지원에서 가족 구성원들 개별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과 고용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는 보편적인 가족수당과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양육휴가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의 소득보전도 해주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수준도 높아 부모의 직접 양육과 시설을 통한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 3. 프랑스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sup>11)</sup>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수평적 재분배를 통하여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들은 일단 연금공단에 가입해 일정한 분담금을 내고, 연금가입자들은 공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혜택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연금공단은 몇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그 대상자도 각각 달리 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성 혜택은 의료수당, 가족수당, 출산수당, 주택수당, 실업수당 등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지급방식도 매우 복잡하다. 이들은 소득에 무관하게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프랑스의 ‘가족수당금고(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가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은 프랑스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일정한 조건, 즉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지속적인 체류를 한다면 국적이 어디든가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족수당금고’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11) 본 장의 내용은 프랑스의 가족수당금고(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에서 발간한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과 함께, 경우에 따라 보조금도 지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족수당’은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이다.

자녀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아이의 출생 이전인 임신부터 시작되어 출산, 보육, 취학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데 자녀는 친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입양수당) 등 반드시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또한 형제자매나 조카일 수도 있는, 다만 피부양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매우 유연한 피부양자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보육수당에 있어서는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일을 계속하면서 보육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지급되는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과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장애아 아이를 키우고 보살피기 위해 지급되는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수당’ 등이 있다. 또한 교육과 취학 수당으로 16세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학비가 들지 않는 대신 자녀들의 개학 시에 부모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해주기 위한 개학수당, 장애아의 교육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장애아 교육수당’ 등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세제혜택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당은 아이가 한 명이면 신청서를 내고 일일이 수속을 해야 하지만 둘째 아이부터는 출생이나 입양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세 명이상일 경우는 그 액수나 종류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그 조건과 종류가 매우 세밀하고 심도 있게 분류되어져 있다. 임신부터 출산이나 입양, 양육, 교육까지 부모들이 경제적인 근심 없이 애들을 낳고 키우는데 국가가 재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프랑스가 과거 한동안 세계적인 저 출산 국가였던 경험에서 나온

진지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프랑스는 현재 저 출산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재원이 적은 가정의 주택보조금(이사특별수당, 주거 개선을 위한 대출, 학생수당), 성인장애자 수당, 편부모 수당,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다양한 수당 내용이 ‘가족수당’에 포함되어 있다.

〈표 4-6〉 프랑스 가족 수당의 개관

| 자녀수 | 수당 종류  | 자녀 연령                             | 소득조사 수당 | 보편적 수당 |   |
|-----|--|-----------------------------------|---------|--------|---|
| 첫째아 | 출생·입양 특별수당<br>(La 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 0~3세                              | ○       |        |   |
|     | 기초수당 (L'allocation de base)  |                                   | ○       |        |   |
|     |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br>(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br>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                                   |         | ○      |   |
|     |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br>(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0~6세                              |         | ○      |   |
|     | 인가된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정 보조금<br>(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br>maternelle agréée)            | 3~6세                              |         | ○      |   |
|     | 가정내 보육수당<br>(L'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                                   |         | ○      |   |
|     | 가족지원수당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         | ○      |   |
|     | 장애아 교육수당<br>(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 0~20세                             |         | ○      |   |
|     |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를 위한 매일 수당<br>(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                                   |         | ○      |   |
|     | 개학수당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6~18세                             | ○       |        |   |
|     | 둘째아  | 가족수당 (Les allocations familiales) | 0~20세   |        | ○ |
|     | 셋째아 이상   | 가족보조금<br>(Le complément familial) | 3~21세   | ○      |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 1) 자녀 양육 수당의 지급 대상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 및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가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자녀 양육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조사 수당의 경우, 올해 회계연도의 수당액은 전년도에 소득에 기초하여 책정된다. 즉,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의 수당은 2005년도에 취득한 소득 신고에 기초하여 책정된다. 별거,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부터 예전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녀의 부양(의식주)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보장해야 하고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갖고 교육적인 책임을 인수해야 한다.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본인과 자녀 사이에 반드시 혈연관계가 필수적인 것을 아니다. 친생자, 사생아, 입양아, 입양이 아니면서 거두어들이는 아이, 형제자매, 조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는 반드시 프랑스 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만 하고, 유럽 연합이나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저촉된다.

자녀 연령이 0세부터 6세까지는 다른 어떤 조건 없이도 본인이 자녀를 부양한다고 간주된다. 6세부터 16세까지는 아이가 취학의무를 채우는 경우, 16세부터 20세까지는 아이가 직업 활동 없는 학생 혹은 수습생(견습공)이거나 아이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의 55%(768.7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자녀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족보조금과 주택보조금에 대한 권리는 자녀의 21번째 생일까지 유지된다. 만일 자녀가 그 자신이 수당 수령자가 된다면, 예를 들어 사회적인 주택수당이나 개별화된 주택수당을 받는다면 자녀는 더 이상 피부양자로 간주

되지 않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홀로 살면서 한명 또는 여러 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지원수당 혹은 편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에 대해서는 출생·입양 특별수당, 편부모수당,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현재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3세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입양한 아이가 있는 경우 “어린이 환대 수당”으로서 “출생·입양 특별수당”, “기초수당”,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 선택 보조금”,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7년 현재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3~6세 까지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이 날짜 이후에 다른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이 없다면 “인가받은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정 보조금”, “가정내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 자녀 양육 수당의 종류

### (1) 출생·입양 특별 수당 (La 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출생·입양 특별 수당은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 시 초기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수급 조건으로 임신한 경우 임신 초기 14주 이내에 임신사실을 “가족수당금고”와 “제1차 의료보험 금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20세 이하의 아이를 한명 혹은 여러 명 입양하거나 입양할 예정으로 아이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5년도 소득이 자녀 수 및 가족 유형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새로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임신기간 7개월 동안 855.25 유로를 받게 되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 만큼 이 액수를 받게 된다. 입양하거나 입양예정으로 맞아들이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1710.49 유로를 받게 된다.

〈표 4-7〉 프랑스의 자녀 양육 수당 수급 조건 소득 한도(2005년 연소득)

| 가정 내 자녀 수<br>(출생했거나 출생할) | 한 명만 직업활동하는<br>커플의 소득 | 편부모나 양쪽 모두<br>직업활동을 하는 커플의 소득 |
|--------------------------|-----------------------|-------------------------------|
| 1                        | 25,430유로              | 33,606유로                      |
| 2                        | 30,516유로              | 38,692유로                      |
| 3                        | 36,619유로              | 44,795유로                      |
| 한 명 추가 당                 | 6,103유로               | 6,103유로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 (2) 기초수당 (L'allocation de base)

기초 수당은 자녀를 위한 교육 관련 지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 조건으로 2007년 현재 자녀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경우이어야 하며 출생의 경우에는 3세 미만이어야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05년 소득이 자녀 양육 수당 수급 조건 소득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초 수당의 액수는 월 171.06 유로이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혹은 다수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한 혹은 입양한 아이 수 만큼 지급된다. 기초 수당은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세 번째 생일 한달 전까지 지급된다. 입양의 경우 아이가 집에 온 달 혹은 입양된 달부터 연속적으로 36개월간 아이의 20번째 생일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 (3)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업 활동을 중지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수급 조건으로 2007년 현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3세 이하의 자녀가 적어도 한명은 있어야 한다. 아

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것을 중지했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첫째 아이만 있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적어도 24개월의 노후분담금을, 둘째 아이를 낳았다면 최근 4년 이내에, 셋째 아이 부터는 최근 5년 이내에 노후 분담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직업 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매달 359.67 유로를 받으며 이 때 기초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530.72유로를 받는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그 이하의 시간으로 근무할 때 매달 232.52유로를 지급받으며,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매달 403.56 유로를 받는다. 근무시간의 50~80%를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달 134.13유로를 지급 받으며, 기초 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매달 305.17 유로를 받는다. 수당의 지급 기간은 한 명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혹은 모성이나 부성 육아 휴가, 입양휴가 혹은 병가가 끝나는 날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두 명 이상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막내 아이의 세 번째 생일 전달까지 지급된다. 한편,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2007년 현재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 혹은 입양된 자녀 한명을 포함하여 최소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동 수당은 출생일이나 입양 일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될 수 있다. 모성 육아, 부성 육아, 질병 등에 대한 매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매일 보상금이 끝나는 달부터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의 첫 돌 1개월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당액수는 월 758.95유로 이며, 기초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월 587.90 유로를 받는다.

(4)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6세 미만의 자녀를 인가받은 보육 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도우미에

게 보육을 맡기는 경우 부모가 지급하는 보육료의 일부분을 가족수당금고가 지급한다. 3세 미만의 아이들의 위해서는 월 395 유로 한도 내에서, 3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월 197유로의 한도 내에서 인가 받은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의 고용을 위해서는 100%, 가정 내 보육도우미 고용을 위해서는 50% 지급한다. 수급 조건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액이 최소 374.12 유로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최소 748.24 유로가 되어야 한다. 비급여자 혹은 파트타임 근무자인 경우에도 소득액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자녀를 위탁하는 보육시설은 “모성유아보호” 기구가 인가한 곳이어야 한다. 동 보육시설의 임금총액은 2007년 1월 1일 현재 하루에 그리고 보호하는 어린이 한 명당 41.35 유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가정 내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가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동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적어도 한달에 16시간 이상을 보육 받아야 한다. 보육인 고용 비용에 대해 가족수당금고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소득, 자녀수, 자녀 연령에 따라 좌우되며, 비용의 최소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표 4-8〉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소득 상한

| 피부양자 자녀 | 1종          | 2종              | 3종          |
|---------|-------------|-----------------|-------------|
| 1명      | 15,123유로 이하 | 15,123~33,606유로 | 33,606유로 이상 |
| 2명      | 17,411유로 이하 | 17,411~38,692유로 | 38,692유로 이상 |
| 3명      | 20,158유로 이하 | 20,158~44,795유로 | 44,795유로 이상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표 4-9〉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월간 최대 지급액수

| 자녀의 연령  | 소득 상한 | 피고용인     | 보육담당 사회복지사의 고용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 | 가정 내 보육도우미를 고용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 |
|---------|-------|----------|------------------------------|------------------------------|
| 3세 미만   | 1종    | 374.75유로 | 642.40유로                     | 776.25유로                     |
|         | 2종    | 267.69유로 | 535.33유로                     | 669.16유로                     |
|         | 3종    | 160.60유로 | 428.28유로                     | 562.10유로                     |
| 3~6세 까지 | 1종    | 187.39유로 | 321.20유로                     | 388.13유로                     |
|         | 2종    | 133.86유로 | 267.67유로                     | 334.58유로                     |
|         | 3종    | 80.30유로  | 214.15유로                     | 281.05유로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5) 인가받은 보육담당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 (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인가받은 보육담당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은 3~6세까지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동 보조금의 수급조건으로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각 도의 “모성유아보호” 기구가 인가한 독립적인 보육담당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야 한다. 하루에 그리고 어린이 한명 당 최저 임금의 5배가 넘지 않는 임금(41.35 유로)을 지불해야 한다.

가족수당금고는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를 고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분담해 준다. 이 보조금은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가 수령한 3분기 순수입의 85%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녀가 6세가 되는 3분기의 마지막까

지 보조금은 지급된다.

〈표 4-10〉 프랑스의 인가받은 보육담당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

| 소득 상한                | 월 보조금     |
|----------------------|-----------|
| 13,839 유로 이하         | 109.34 유로 |
| 13,839에서 19,029 유로까지 | 86.44 유로  |
| 19,029 유로 이상         | 71.63 유로  |

주: 한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이며 자녀 수에 따라 월 보조금 액수는 다름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 (6) 가정 내 보육수당 (L'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가정 내 보육 수당은 3~6세까지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집안에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수급 조건으로 부모가 직장 에서 일하는 동안 자택에서 3~6세 미만의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보육 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커플로 살고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는 최소한의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임금 노동자의 경우 각 개인은 3분기 순수 소득이 적어도 1,122.36 유로가 되어야 한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노후보장보험기관의 가입자여만 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는 중이어야 한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 내 보육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만일 부분적 비율의 “부모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 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3분기 당 553 유로 한도 내에서 지불해야할 액수의 50%이다. 지급 기간은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이 들어 있는 3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지급 된다.

피고용인의 수와 보육하는 아이의 수에 상관없이 한 가정은 단 하나의 수당 권리만을 가질 수 있다. 가족수당기금은 가정 내 보육수당을 직접 Urssaf(사회보장과 가족수당 분담금 징수 연합)에 지급하며, Urssaf는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을 알려 준다.

#### (7) 가족지원수당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가족지원수당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가 없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다. 수급 조건으로 적어도 한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고 혼자서 아이와 함께 살거나, 본인이 이 아이를 거두어들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산다할지라도 가족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잃었거나 한쪽 부모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가족지원수당”의 권리가 있다.

부모 중 한 편이 적어도 2개월을 계속해서 아이 부양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가족지원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 중 한쪽이 부양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이 본인에게 가족지원수당의 권리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수당금고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한 쪽 부모가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 4개월간 가족지원수당이 지급된다. 4개월 이상 가족지원수당에 대한 권리를 유지시키려면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①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면 부양료를 정하기 위해 본인 거주지 대법원의 가사 담당 판사에게 의뢰 한다 ② 재판을 했는데도 부양료를 정하지 못했다면 같은 판사에게 판결을 재검토하게 하는 행동을 취한다.

한 쪽 부모가 재판에 의해 정해진 부양료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금고가 본인을 대신하여 부양료를 회수하기 위

한 행동을 취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금고는 지불되어야 할 부양료의 선불금을 본인에게 지급한다.

가족지원수당액은 홀로 아이를 기를 경우 피부양자 아이 한명 당 83.76 유로, 부모의 도움을 상실한 아이를 거두어들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아이 한명당 111.68 유로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와 같이 선불금 명목으로 가족지원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족수당금고는 지불되지 않은 부양료를 회수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① 요구 당시 부양료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아이를 위해 지불되는 조건 하에서 ② 부양료를 회수하기 위해 민사상의 행동을 개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조건하에서

수당 수령자가 결혼, 재혼, 동거 혹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Pacs)을 한 경우 가족지원수당의 권리는 소멸된다.

#### (8) 장애아 교육수당 (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장애아 교육수당은 장애아인 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로써 특별교육수당을 대체한다. 수급조건으로 자녀의 연령이 20세 미만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능력 상실의 적어도 80%이어야 한다.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자녀의 상태가 특별 교육이나 가택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강력히 요구되는 경우 자녀의 능력 상실은 50%~80% 사이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의료보험제도나 국가 혹은 사회구제사업이 완전부담으로 체제비를 지불하는 기숙학교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장애아 교육수당의 기초 액수는 월 119.72 유로인데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금에 의해 증액될 수 있다. 부모의 직업 활동 (완전 혹은 부분적) 중지, 임금이 지급되는 제 3자의 고용, 자녀의 건강 상태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따라 다음 6개 형태로 분류된 보조금이 존재한다: ① 첫째 형태(89.79유로), ② 둘째 형태(243.18유로), ③ 셋째 형태(344.19유로),

④ 넷째 형태(533.38유로), ⑤ 다섯째 형태(681.68 유로), ⑥ 여섯째 형태(999.83 유로)이다.

지자체의 장애인 권리와 자립위원회가 최소 1년 그리고 최대 5년간 갱신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아 교육 수당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자녀가 기숙학교에 있는 경우 자녀가 집에 돌아와 있는 일수에 따라 장애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9)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은 심하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장애자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다. 수급 조건으로 피부양자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하고 그 곁에 반드시 한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혹은 사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봉급 생활자인 경우에는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휴가”의 일환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 활용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강제력이 있는 치료의 필요성, 자녀 곁에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 자녀의 예상 가능한 치료 기간을 명시하는 세부적인 의료 증명서 한 부를 제출해야만 한다.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휴가” 명목으로 매달 결근 횟수(최대 22일)에 해당하는 매일수당이 달마다 지급된다. 매일 수당 액수는 커플에게 일당 39.58 유로, 혼자인 경우 47.02 유로 이다. 아이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 몇몇 조건하에서 월간 101.22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매일수당은 3년 한도로 310일 동안 지급될 수 있다. 한편,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의 지급은 기간 내내 의료보험 수당과 노후보장 수당을 지급받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 (10) 개학수당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개학수당은 6세부터 18세까지 자녀의 학교 개학 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수급 조건으로 2007년 현재 1989년 9월 16일부터 2002년 1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6세부터 18세까지의 피부양자 아이를 한명 혹은 여러명 두어야 한다. 개학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소득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다.

〈표 4-11〉 개학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

| 피부양자 아이 수 | 소득 최대 액수 |
|-----------|----------|
| 1자녀       | 17,299유로 |
| 2자녀       | 21,291유로 |
| 3자녀       | 25,283유로 |
| 추가 한 명 당  | 3,992유로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개학수당은 2007년 개학때 자녀 한 명당 272.57 유로 이다. 개학 수당은 16~18세까지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개학 며칠 전에 지급된다. 소득이 최대 액수보다 약간 높은 가정에 대해서는 감소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서 개학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본인이 다른 어떤 수속을 하지 않아도 가족수당금고가 16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자동적으로 개학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현재 가족수당금고의 수혜자가 아니거나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해당 가족수당금고에 대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해서는 취학 증명서류나 견습 증명서류에 따라 “개학연금”이 지급된다.

(11) 가족 수당 (Les 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은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이다. 수급조건으로 20세 미만의 피부양자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가족수당 월 급여액은 가정 내 피부양자 자녀 수에 따라 ① 2명: 119.13 유로, ② 3명: 271.75 유로, ③ 4명: 424.37 유로, ④ 1명 추가 당 152.63 유로 가산과 같이 다양하다.

가족수당 액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증액되는데 아이 연령이 11세가 되면 아이를 위해 생일 다음 달부터 기초 가족수당 액수에다 월간 33.51 유로의 가산금을 받는다. 이 월간 가산금은 16세가 되는 다음날에 59.57유로로 상향조정된다.

가족수당은 둘째 자녀, 그 다음 셋째, 넷째...의 출생 혹은 아이를 입양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피부양자 아이가 더 이상 단 한 명만 있거나 단 한명도 없게 될 때 가족 수당은 이러한 상황변화가 있게 된 전 달 말에 중지된다. 월간 75.33 유로의 도급 수당이 만이가 20세가 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1년동안 지급된다. 두 자녀 가족의 만이나 피부양자 자녀가 두 명만 남은 가정의 큰 애를 위해서는 어떤 가산금도 지불되지 않는다.

아이가 부모 각자의 집에 번갈아 거주할 경우 가족 수당은 부모 양쪽에 나누어 지급될 수 있다. 가족 수당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새 아이가 생긴 사실을 가족수당금고에 알리면 두 번째 피부양자 자녀부터 자동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가족수당은 다른 모든 수당과 병행하여 지급될 수 있다.

## (12) 가족 보조금 (Le complément familial)

가족 보조금은 최소 세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 아이의 세 번째 생일 이후에 “기초수당” 이나 “어린아이를 위한 수당” 뒤에 지급된다.

수급 조건으로 3세 이상 21세 미만의 피부양자인 아이가 최소한 세명 있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가정내 아이 수에 따라 정해진 다음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혼자 사는 경우와 소득이 있는 커플이 함께 살며 각자 직업상의 소득이 실업수당, 질병수당과 같은 대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4,336 유로 이거나 그 이상을 벌어들인 경우 소득의 최대 액수는 더 높다.

〈표 4-12〉 프랑스의 가족 보조금 소득 제한 조건

| 자녀수     | 한쪽만<br>소득활동을 하는 커플 | 편부모나 양쪽 모두<br>소득 활동을 하는 커플 |
|---------|--------------------|----------------------------|
| 3       | 26,731유로           | 32,700유로                   |
| 4       | 31,186유로           | 37,155유로                   |
| 추가 1명 당 | 4,455유로            | 4,455유로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세 명 이상의 피부양자 아이가 있는 경우 매월 155.05 유로를 받게 되고 감소된 가족보조금을 받는 권리가 있다면 그보다 조금 덜 받게 된다.

가족보조금은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의 세 번째 생일부터 지급된다. 피부양자 자녀가 3세 이상이고 세 명 이하 남게 되는 때부터 혹은 새로운 자녀를 위해 기초수당을 받는 때부터 지급은 끝난다. 가족보조금은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을 충족시키고 가족수당금



고에 연간소득신고서를 보내는 경우 가족수당금고가 자동적으로 가족 보고금을 지급한다.

(13) 편부모수당 (L'allocation de parent isolé)

편부모수당은 출생하였거나 혹은 출생 예정의 적어도 한 명의 자녀와 혼자 살며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조건으로 임신 중이거나 적어도 한 명의 피부양자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사망이나 별거, 이혼 혹은 구류나 입원으로 인해 배우자나 동거인 혹은 pacs<sup>12)</sup>의 소득 없이 혼자 사는 경우이어야 한다. 최근 3개월 동안 월 평균 소득 액수가 편부모 수당의 최대 액수 이하이어야만 하며 이는 피부양자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새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편부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편부모 수당은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 아니며, 월 평균 소득과 편부모 수당 최대액수 간의 차액을 받게 된다.

〈표 4-13〉 편부모 수당의 월간 최대 액수

| 구분         | 편부모 수당 최대 액수 |
|------------|--------------|
| 자녀없는 임신부   | 561.18유로     |
| 자녀 1명의 편부모 | 748.24유로     |
| 추가 자녀 1명 당 | 187.06유로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07)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12)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이성간이나 동성 간의 성인 2인이 맺는 계약

이미 주택보조금의 혜택을 받거나 주택에 대한 어떤 지출도 하지 않는 경우(주택 소유주거나 무료 유숙자), 편부모 수당에서 주택 사정액이 공제된다. 주택 사정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52.90유로, 자녀 2인의 경우 105.81유로, 자녀 3인의 경우 130.94 유로이다.

편부모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3개월 마다 해당 가족수당금고가 다음 3분기 편부모 수당에 대한 권리를 재검토하기 위해 소득 신고서를 보낸다. 가족수당금고는 연속 12개월간 혹은 가장 나이 어린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전달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편부모 수당에 대한 권리가 없거나 더 이상 권리가 없게 되는 경우 “사회적응최소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다시 사는 경우 권리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가족수당금고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수당금고가 초과 수령한 액수의 환급을 요구한다.

## 제4절 일본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 1. 일본의 출산률 현황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1990년 일본 정부가 “자녀 출산, 양육 환경에 관련된 성청연락회의”를 구성하여 저출산의 원인과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육아휴직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모성 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 휴직을 제공하였다.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엔젤플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와 확대를 꾀하고 있다.

## 2. 일본 양육 지원 정책의 특징

일본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과 보호자에게 있으나 국가와 사회 또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는다는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적인 출산 증가 유인 정책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자녀 양육 환경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녀 출산에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본이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 정책에서 “남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여 이를 통해 가족내에서 남성과 여성간에 평등한 육아 분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의 취업여성에게 국한되던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이 자녀를 가진 가족 지원으로 확대되고 기업에 대해서도 직원의 가족 및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사과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1990년 출산율 1.57 쇼크 이후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년 계획으로 Angel Plan (1995~1999년)과 신Angel Plan (2000~2004년)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1.29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이제까지의 Angel Plan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실시 계획으로 확충한 “아이·아이키우기 응원 Plan (2005~2009년)”을 제시하였다. 아이·아이키우기 응원 Plan은 ① 젊은이의 자립과 튼튼한 아이 키우기, ②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일하는 방식의 제고, ③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④ 아이 키우기의 새로운 뒷받침과 연대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5년간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차세대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과 가족의 아이 키우기 지원, 일하는 방식에 관한 시책, 아동 수당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양과 질 양면에서의 서비스 기반 정비 (특히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등 3세 미만 아이의 탄력적인 보육 강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대처, 시책간의 정합성 및 연계, 정책의 일원성 및 서비스의 일관성을 추진하고 있다.

### 3. 일본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 시설 확충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3세 미만 아이에 대한 가정적 보육 (보육마마)의 내실화를 포함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보육의 확충, ② 양육 가정이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양육지원거점 등 양육 지원 서비스 정비, ③ 출산·육아 휴가에서 보육 서비스로의 이행 등 이용자 중심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 지원의 제도적 틀 구축이다.

#### (1) 아동수당제도

일본에서 아동수당제도는 미래 사회의 주체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을 도모하는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아동 양육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키는 소득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지급 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서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미만인자이다. 지급 대상은 의무 교육 취학 이전(만 6세)의 아동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아동을 감호하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이다. 지급액은 월단위로 지급되며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월 5,000엔, 의무 교육 종료 이전(만 15세 미만)의 셋째 자녀에게는 월 10,000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인정 청구서를 주소지의 시정촌장에게 제출하면 인정 청구

서를 수리한 시정촌장은 실제로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심사를 거쳐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해 수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시기는 매년 2월, 6월, 10월의 세 번에 걸쳐 각 전월까지의 4개월 분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재원조달은 사업주,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 3자가 부담한다. 한편, 아동수당이외에 기타 임신부 출산보조금으로서 임신 6개월 미만 9,230엔, 임신 6개월 이상 13,960엔, 산모에게는 8,580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한다.

## (2) 육아 휴직

육아 또는 가족간호를 하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신청 자격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아동이 1세에 이를 때 까지 희망하는 기간에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인 경우 전일제 육아 휴직이 원칙이나 공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분휴업도 가능하다. 전일육아휴업의 육아휴업기간은 자녀가 1세 되는 날까지 당해 직원이 청구하는 기간으로 한다. 육아 휴업기간 중에는 고용이 보장되며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부분휴업은 정규 근무시간이 시작해서 마치는 1일 중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탁아 형태, 통근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 30분 단위로 할 수 있다.

급여 내용을 보면 공공부분 전일육아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교직원과 간호사, 보모 등 특정 직종의 여직원에게 대해서는 유업휴업금을 지급한다. 부분휴업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만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민간부문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휴업 전 임금의 25% 상당액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건강보험법과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 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다. 출산 전 6주간(다태아 임신인 경우 10주), 출산 후 8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제공한다.

### (3) 모자가정지원정책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자립지원정책, 세제상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 보장으로 아동부양수당지급, 국민연금지급, 후생복지자금의 대부, 과부복지자금의 대부가 있다. 세제상 조치로는 소득공제,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이자비과세제도가 있다.

아동부양수당은 이혼 등으로 부친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모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의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급대상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아동(18세까지, 장애가 있는 경우 20세까지)을 감호 및 양육하는 모친이며, 수당액은 아동 1명의 경우 월 42,370엔, 2명의 경우 월 47,370엔, 3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000엔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득제한조건이 있어 수급자의 전년 연수입이 2인가구의 경우 204만 8천엔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방법으로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면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을 통해 연 3회(4, 8, 12월) 지불한다.

### (4) 보육 서비스

일본의 보육 서비스는 자녀 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기본 관점에서 도입되었다. 일본의 보육 시설에는 공립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미인가보육시설 등이 있다. 공립보육시설은 시정촌이 설치하고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보육시설은 개인, 법인, 단체 등에서 설치 가능하다. 보육시설의 정원미달 시 민간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조치한다. 미인가보육시설은 사업장내 보육시설, 벽지보육시설, 역형보육시설, 베이비호텔, 가정보육, 베이비시터, 재택 및 방문 보육이 있다. 미인가보육시설은 부족한 민간보육소를 보충하고 취업여성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러한 미인가보육시설은 야간보

육, 기숙보육, 시간제 보육, 유연한 이용시간, 영아 보육을 제공한다. 가정 지원센터는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과 유급자원 봉사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네트워크이다. 비용은 베이비 시터 요금의 30~50% 정도에 해당되고 사고에 대한 보험은 전액 정부와 구청이 반반씩 분담해서 가입하며 구청이 교육을 담당한다.

보육료는 균등화 방향으로 보육료를 소득이 아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보육시설 이용의 일반화, 임금 소득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

최근 신엔젤플랜의 보육 충실화 대책을 통해 시설보육 중심으로 추진되던 보육 정책을 보육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엔젤플랜은 다양화된 보육 욕구를 정책적 과제로 인지하고 종래의 제도에서 한정되었던 가정 보육이 결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설보육의 틀을 탈피하여 자녀양육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였다. 신엔젤플랜에서는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 아동의 해소, 연장보육 등 아동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인보육, 일시보육, 질병 중인 아동의 수용, 입소시기의 탄력화, 지역자녀양육지원 센터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적으로 보육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재택아동을 포함한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양육지원센터와 패밀리서포트센터를 새로이 정비하고 일시 보육도 확대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동 보육은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조적 지역네트워크나 보육운동을 통해 시행되었던 것을 ‘방과후 아동클럽’이라는 형태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제5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간 비교 분석

### 제1절 기본 구조 비교 분석

앞 장에서 각국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유형별 그리고 국가별로 고찰한 결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보육 서비스 제공, 수당 정책, 육아 휴가 정책 세 가지 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각국의 문화적인 특성과 정책 철학에 따라 세가지 분야 중 특히 강조되는 분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가지 분야 모두에 걸쳐 정책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나머지 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국의 정책 철학에 따라 수당 정책 혹은 육아 휴가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공공 보육 시설이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하에 스웨덴은 육아 휴가 정책을 강조하는 정책을, 프랑스는 수당 정책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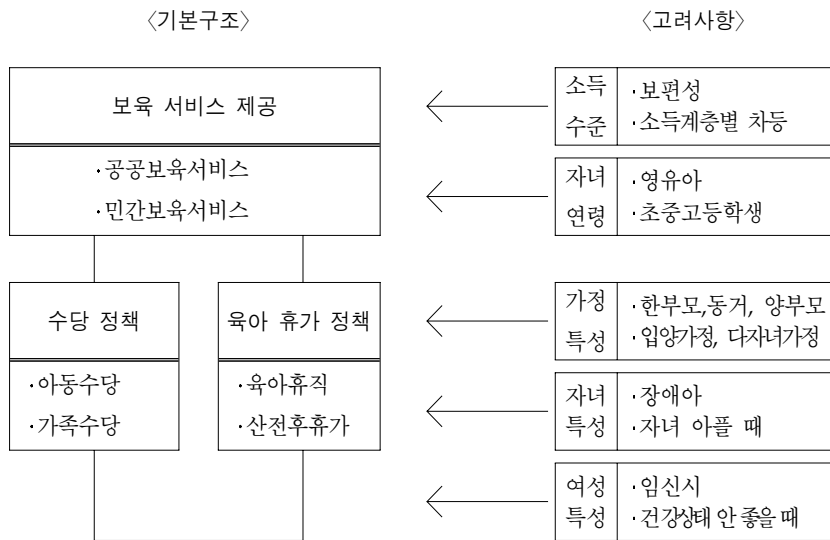
이러한 기본 구조 하에서 각국은 소득수준, 자녀 연령, 가정의 특성, 자녀의 특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을 다양화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은 소득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서 보편적인 성격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거나 혹은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자녀 연령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경우와 초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부양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취약 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출산률 제고의 목적으로 다자녀 가정 혹은 입양 가정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 복지 관점에서 장애아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녀가 아플때 지원되는 정책도 있다. 한편, 모성 보호와는 다른 차원에서 임신한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지원되는 정책도 있다.

[그림 5-1]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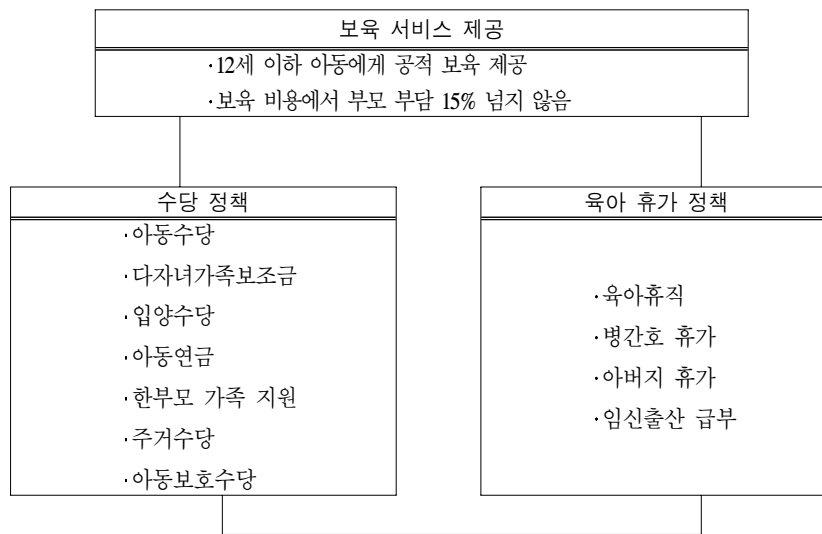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 하에 각국의 정책 유형을 도식화 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구조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스웨덴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에게 공적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보육 비용에서 부모 부담이 15% 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 외에 아동 수당과 육아 휴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육아 휴직,

병간휴가, 아버지휴가, 임신출산급부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수당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다자녀 가족 보조금, 입양수당, 아동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주거수당, 아동 보호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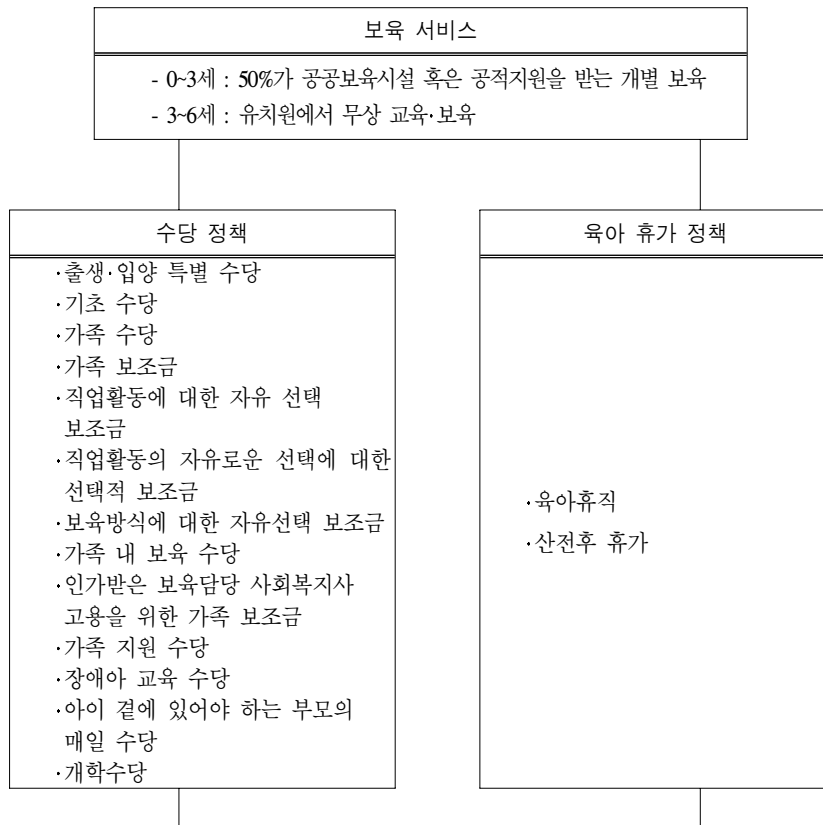
[그림 5-2]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프랑스의 경우 보육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스웨덴과 동일하다. 0~3세 경우 50%가 공공보육시설 혹은 공적지원을 받는 개별 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0~3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모성권 보호 측면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 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는 여성들은 다른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3~6세 아동에 대해서는 모든 아동들이 유치원에서 무상으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스웨덴과는 달리 프랑스는 육아 휴가 측면에서 그다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는 16주의 산전후휴가(셋째 이후 자녀는 26주)가 100% 임금보전과 함

게 지급된다. 육아 휴직(부모 휴가) 가능 기간은 3년이며 부모가 나누어 쓸 수 있다. 급여는 두 번째 이후 자녀부터 정액(2000년 현재 미화 \$462/월 정도)으로 받는다. 한편, 아동 수당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입양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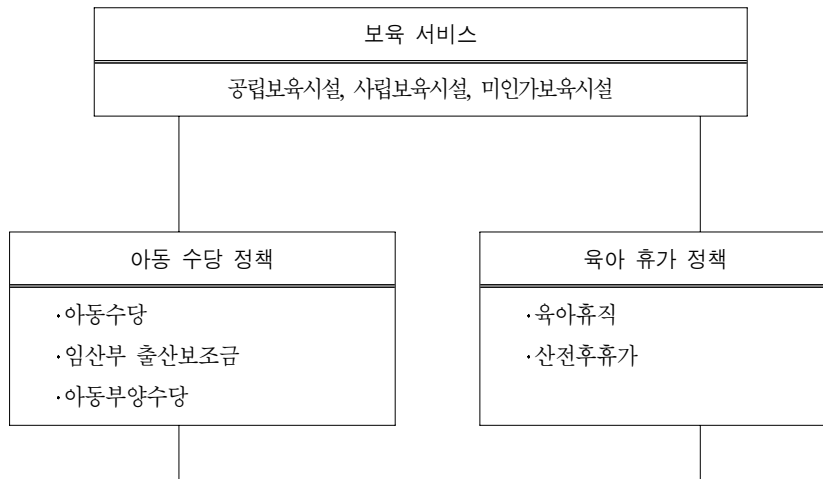
[그림 5-3] 프랑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일본에서는 공립 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미인가보육시설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비교하여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수당 정책으로서 아동수당 및 임신부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지원 측면에서 아동 부양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모성 휴가 정책으로 육아 휴직과 산전후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4] 일본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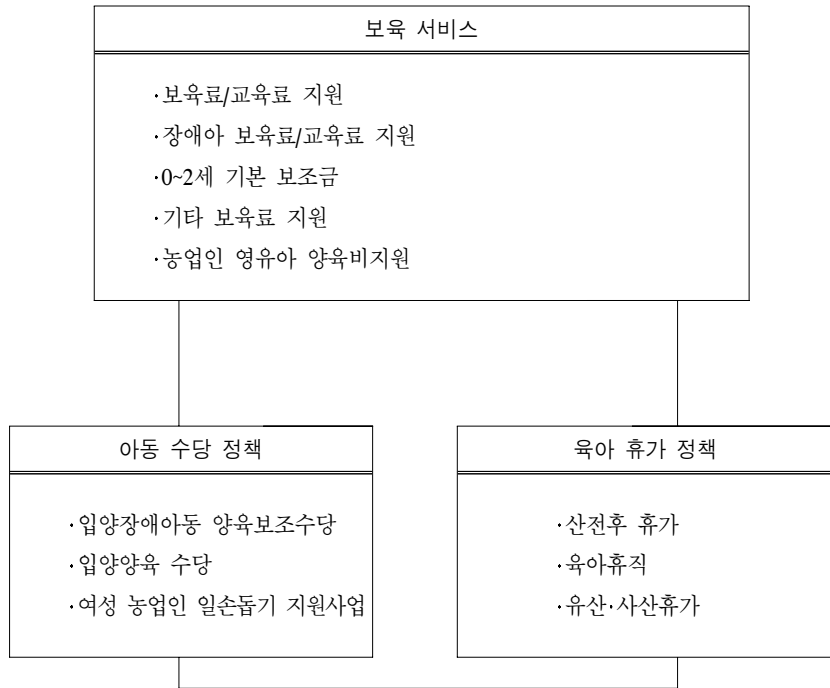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앞서 언급한 스웨덴, 프랑스,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동 양육 지원에 가장 많은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료 및 교육료 지원과 0~2세 영아 기본 보조금 제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적 지원이 보육 서비스 제공에 치우쳐져 있고 육아 휴가 정책은 기본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수당 정책은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아 휴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 휴직이 지원되고 있으며, 수당 정책은 입양아동, 장애아동,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

[그림 5-5] 한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 제2절 정책 대상별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아동 수당 정책과 육아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책이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한해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직접 수당이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엄밀하게 국내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수당 정책은 입양양육수당,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의 세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은 아니지만,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을 외국의 수당 정책과 함께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의 국가의 수당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부모가 아닌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육비/교육비 지원 정책은 수당 정책적인 성격에서 거리가 멀다. 스웨덴의 경우 각종 수당 정책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취약계층 등에 지급하는 수당은 프랑스 보다 다양하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는 출생·입양 특별 수당, 기초 수당, 가족 보조금과 같이 부양자녀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 계층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부모가 직업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임신부 등에 특별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당 정책이 출산률 회복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같이 다자녀 가정, 입양가정 등에 특별하게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 모성보호 측면에서 임신부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임신부에게 일정기간 동안 월단위로 지급하는 프랑스에 비교하면 지원 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료/교육료 지원은 모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만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보육시설로 지급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득계층별로 차등액을 지급하고 있다. 단, 장애아 지원과 입양아 지원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한해 직접 가정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평가된다.

〈표 5-1〉 각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별 비교: 수당 정책

| 구분                           | 보편성 | 소득 수준별 차등액 | 초중고 학생 지원 | 임신 시 | 입양 자녀 | 장애아 자녀 | 고아 | 자녀가 아플때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직업이 있는 경우 |
|------------------------------|-----|------------|-----------|------|-------|--------|----|---------|--------|--------|-----------|
| 아동수당                         | ○   |            | ○         |      |       |        |    |         |        |        |           |
| 다자녀가족보조금                     | ○   |            | ○         |      |       |        |    |         |        | ○      |           |
| 입양수당                         | ○   |            | ○         |      | ○     |        |    |         |        |        |           |
| 아동연금                         | ○   |            | ○         |      |       |        | ○  |         | ○      |        |           |
| 한부모가족지원                      |     | ○          | ○         |      |       |        |    |         | ○      |        |           |
| 주거수당                         |     | ○          |           |      |       |        |    |         |        |        |           |
| 아동보호수당                       | ○   |            | ○         |      |       |        |    | ○       |        |        |           |
| 출생·입양 특별 수당                  |     | ○          |           | ○    |       |        |    |         |        |        |           |
| 기초수당                         |     | ○          |           |      | ○     |        |    |         |        |        |           |
| 가족수당                         | ○   |            |           |      |       |        |    |         |        | ○      |           |
| 가족보조금                        |     | ○          |           |      |       |        |    |         |        | ○      |           |
|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 ○   |            |           |      |       |        |    |         |        |        | ○         |
|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    | ○   |            |           |      |       |        |    |         |        |        | ○         |
|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 ○   |            |           |      |       |        |    |         |        |        | ○         |
| 가족내 보육수당                     | ○   |            |           |      |       |        |    |         |        |        | ○         |
| 인가받은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보조금 | ○   |            |           |      |       |        |    |         |        |        |           |
| 가족 지원 수당                     | ○   |            |           |      |       |        |    |         | ○      |        |           |
| 장애아 교육 수당                    | ○   |            |           |      |       |        | ○  |         |        |        |           |
| 이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       | ○   |            |           |      |       |        |    | ○       |        |        |           |
| 개학 수당                        |     | ○          |           |      |       |        |    |         |        |        |           |
| 아동수당                         |     | ○          | ○         |      |       |        |    |         |        |        |           |
| 임산부출산보조금                     |     |            |           | ○    |       |        |    |         |        |        |           |
| 아동부양수당                       |     | ○          | ○         |      |       |        |    |         | ○      |        |           |
| 보육료/교육료지원*                   |     | ○          |           |      |       |        |    |         |        | ○      |           |
| 장애아지원                        | ○   |            |           |      |       | ○      |    |         |        |        |           |
| 입양아지원                        | ○   |            | ○         |      | ○     |        |    |         |        |        |           |
| 농업인자녀지원*                     |     | ○          |           |      |       |        |    |         |        |        |           |

주: \*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보육료/교육료 지원과 농업인자녀지원은 지원액이 부모가 아닌 보육/교육 시설에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수당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표에서는 외국 정책과의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같은 표에 정리하였다.

스웨덴, 프랑스, 일본 모두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아 지원을 제외하고는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까지만 보육료/교육료가 지급되는 실정이다.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13세 될 때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지만,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수업료와 입학금만이 지원되어 교육비 이외 일반 양육비 대한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주택지원으로 스웨덴과 프랑스 모두 소득과 주택 크기를 고려하여 주거 수당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입주권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주택 자금 대출에 있어서 우대금리와 대출 상한액 상향 조정을 조정해 주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보다는 실효성이 낮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성 휴가 정책은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 유산·사산 휴가가 있다. 우리나라 출산 관련 휴가일수와 급여 수준은 프랑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스웨덴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365일이 주어지는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13.5개월(약 410일)의 휴직기간이 주어진다. 이러한 출산 관련 휴가 일수는 프랑스,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스웨덴의 480일 보다는 적다. 우리나라에서는 육아 휴직 급여로 월 5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일본의 임금 25% 지급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의 80%(최대 19,000크로나: 원화로 약 2,700,000원)를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스웨덴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휴직 기간이 주어지는 자녀의 연령은 2008년 1월 1일 출생 이후부터 3세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스웨덴의 8세와 프랑스의 6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프랑스, 일본 모두 육아 휴직 기간을 주어진 자녀 연령 기간 동안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표 5-2〉 각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별 비교: 육아 휴가 관련 정책

|     | 휴가 일수  | 급여수준 | 자녀연령  | 부부<br>공동<br>사용                               | 분할<br>사용 | 자녀<br>아플<br>때 | 아버지<br>출산<br>휴가 | 임산부<br>휴가 |   |
|-----|--------|------|---|--|----------|---------------|-----------------|-----------|---|
| 스웨덴 | 육아휴직   | 480일 | 소득의 80%   | 8세<br>12세(보통)<br>16세(특별한 경우)<br>21세(기능적 장애아) | ○        | ○             |                 |           |   |
|     | 병간호휴가  | 60일  |   |  |          | ○             | ○               |           |   |
|     | 아버지휴가  | 10일  |   |  |          |               |                 | ○         |   |
|     | 임신출산급부 | 50일  |   |  |          |               |                 |           | ○ |
| 프랑스 | 산전후휴가  | 16주  | 100% 임금보전   |  |          |               |                 | ○         |   |
|     | 육아휴직   | 1년   |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 (약 \$462/월)                                  | 6세   | ○        | ○             | ○               |           |   |
| 일본  | 육아휴직   | 365일 | 무급<br>고용보험에서 임금의 25% 지급                                   | 1세   |          | ○             |                 |           |   |
|     | 산전후휴가  | 14주  |   |  |          |               |                 | ○         |   |
| 한국  | 육아휴직   | 365일 | 50만원  | 1세<br>3세(2008.1.1출생후)                        |          |               |                 |           |   |
|     | 산전후휴가  | 90일  | 최초 60일: 통상급여<br>고용보험: 405만원(우선<br>지원대상기업), 135만원<br>(대기업) |  |          |               |                 | ○         |   |

그리고 스웨덴, 프랑스, 일본은 육아휴직 기간을 주어진 자녀 연령 기간 동안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하루를 분할하여 반일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을 여성들이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

2008년부터 하루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육아 휴직기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아플 때 직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를 위한 매일 수당을 주고 육아 휴직과 같은 수준인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수당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자녀가 아플 때 보편적인 형태로 자녀 간병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지 않고 육아 휴직에 산전후휴가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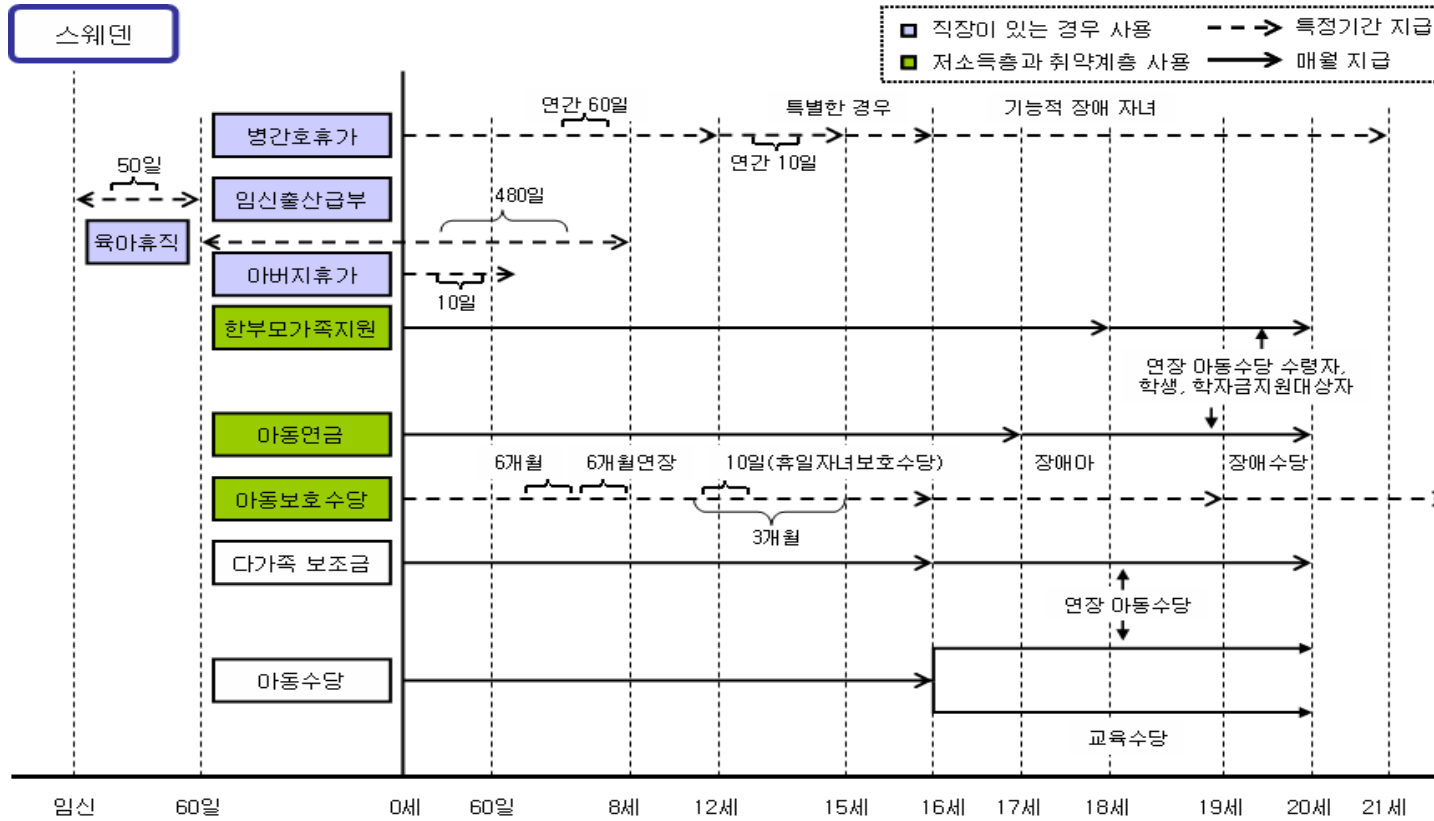
임신출산급부는 산전후휴가 이상의 개념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취업 여성 임신부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 혜택이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남편이 적어도 60일을 육아 휴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남편에게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등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육아 휴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제3절 생애 주기별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여성이 임신한 시점부터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때 까지 어떠한 정책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각 정책간의 중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정책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면서 취약 계층 혹은 다자녀 가정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보편적인 수당으로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2자녀 이상인 경우 다가족수당을,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 연금을,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 지원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림 5-6]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또한 자녀가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아동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수당들은 중복적인 측면이 없어 아동수당을 받는 상태에서 다른 수당들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동수당, 다가족 보조금, 아동보호수당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 출생 시 접부터 자녀의 의무 교육 기간이 끝나는 연령인 16세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자녀가 16세 이후에도 의무 교육기관을 다닌다든지 혹은 정신지체아동의 의무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고자 연장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을 20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자녀가 16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만기가 되더라도 상위 2차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교육수당을 자녀가 20세 되는 해 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당은 의무교육 기간은 끝났지만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는 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수당은 일반적인 경우 16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19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장애 수당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웨덴은 자녀가 부모의 부양하에 있을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연금 및 한부모가족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간도 아동 수당보다 조금 더 길다. 아동연금은 자녀가 17세 될 때까지 지급되며 한부모가족지원은 자녀가 18세 될 때 까지 지급된다. 이후에는 연장아동수당 대상자, 학생, 혹은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녀에 한해 20세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종합컨대 자녀에 대한 모든 수당들은 특별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자녀 연령 20세까지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수당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정책인 반면, 육아휴직, 아버지휴가, 임신출산급부, 병간호휴가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원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육아 휴직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책이 지원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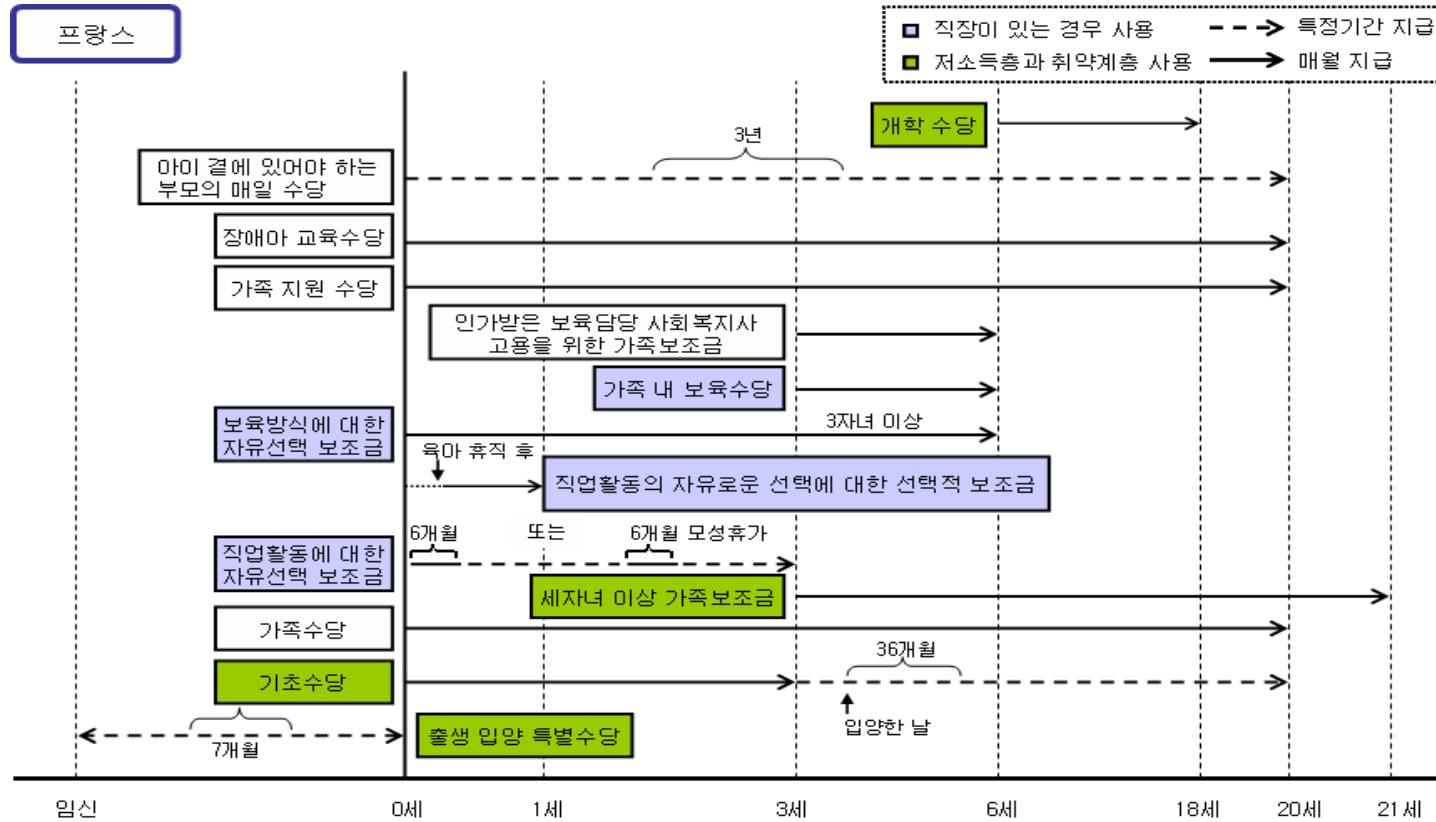
직장에 다니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 출생 60일 전부터 자녀의 연령이 8세가 될 때 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임신부터 자녀 출생 60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임신부에 대해 50일간의 임신출산급부를 지급한다.

기간 상으로 보았을 때 임신출산급부와 육아휴직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설계되어 있어 자격이 되는 한 두 가지 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자녀 출산 이후 자녀 연령이 12세 될 때까지 아픈 자녀로 인해 직장을 잠시 그만 둘 경우 병간호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 16세 까지 그리고 자녀가 기능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21세 될 때 까지 병간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중복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반면, 프랑스의 경우 각 지원 정책간 중복적인 성격이 강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의 정책은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차별을 두어라도 소득 조사(means-tested)보다는 필요에 따른 욕구 조사(needs-tested)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특히 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 없이 부양 자녀가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지원하는 정책(출생·입양 특별 수당, 기초수당, 가족수당, 가족보조금),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가정내 보육수당, 인가받은 보육담당 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 장애아 교육수당, 가족지원수당).

[그림 5-7] 프랑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프랑스의 수당 정책은 여성이 임신한 순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수혜 지급 대상이 일정 소득 수준이하의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임신한 여성에 한해 7개월간 자녀 출산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출생·입양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를 출생하고 난 후 역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부모에 한해 자녀가 3세 될 때 까지 기초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자녀 연령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막내의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족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라면야 보편적인 성격으로 소득 계층에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서 프랑스의 아동 수당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쌍둥이 출산이나 동시 입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개의 기초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3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두 명의 자녀에게 모두 기초 수당이 지급될 수 없고, 첫째아에 대해서 기초 수당이 지급되고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지급되는 가족보조금은 기초수당,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보조금,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등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과 동시에 지급될 수 없다. 한편,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해 자녀 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육과 관련된 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련 없이 자녀를 보육 한다는 조건하에 (needs-tested) 지급된다. 이러한 수당 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직업을 가진 여성이 가정에 남아 있으면서 자녀를 돌보는 댓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보육시설이나 보육 도우미 이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직업 활동을 잠시 그만 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 선택 보조금(clicca)”을 6개월 동안 자녀가 3세가 되

기 이전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1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되는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colca)”을 받을 수 있다. clca와 colca는 중복되어 지급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모두 모성 휴가, 부성 휴가, 입양 휴가, 병가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러한 휴가 등이 끝나는 날부터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는 최대 비율의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을 각각 받을 수 없으며, 최대 비율의 보조금 액수 한도 내에서 부분적 비율 보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은 양육을 위하여 직업 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최대 비율 액수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분적인 비율로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준하여 부분적 비율 보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상기의 조치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양육을 위하여 직업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둘 중 한 명만이 완전히 중지하는 경우 혹은 두 명 모두 부분적으로만 근로시간을 감소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질병, 모성육아휴가 등에 대한 매일 수당, 장애 및 은퇴 연금, 실업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 선택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질병, 모성육아휴가 등에 대한 매일 수당, 장애 및 은퇴 연금,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 활동을 중지하고 자녀를 집에서 돌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따라서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 선택 보조금과 어느 정도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동시 수령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가정 도우미에게 맡기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는다. 이러한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은 최대 비율의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과 병행될 수 없으며, 부분적 비율의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의 몇가지 조건하에서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보조금이 동시에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업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고 이에 대한 보조



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도우미를 맡기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보육하는 댓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나 제3자가 자녀를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중복적인 수당 지급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모가 부분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고 있어 부분적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선택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보육 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은 몇가지 조건하에서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가 부분적으로나마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 보육 시설 및 제3자에 소요되는 보육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직업 활동을 재개할 경우 최고 비율의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은 아이가 18개월에서 30개월(또는 세 쌍둥이 이상인 경우 60개월) 미만이면 2개월간 지급이 병행될 수 있다. 한편, 아이가 첫돌 1개월 전까지 지급될 수 있는 직업활동 자유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6세 연령의 자녀에 대해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가정내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가정내 보육 수당이 지급되며, 부모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보육 담당 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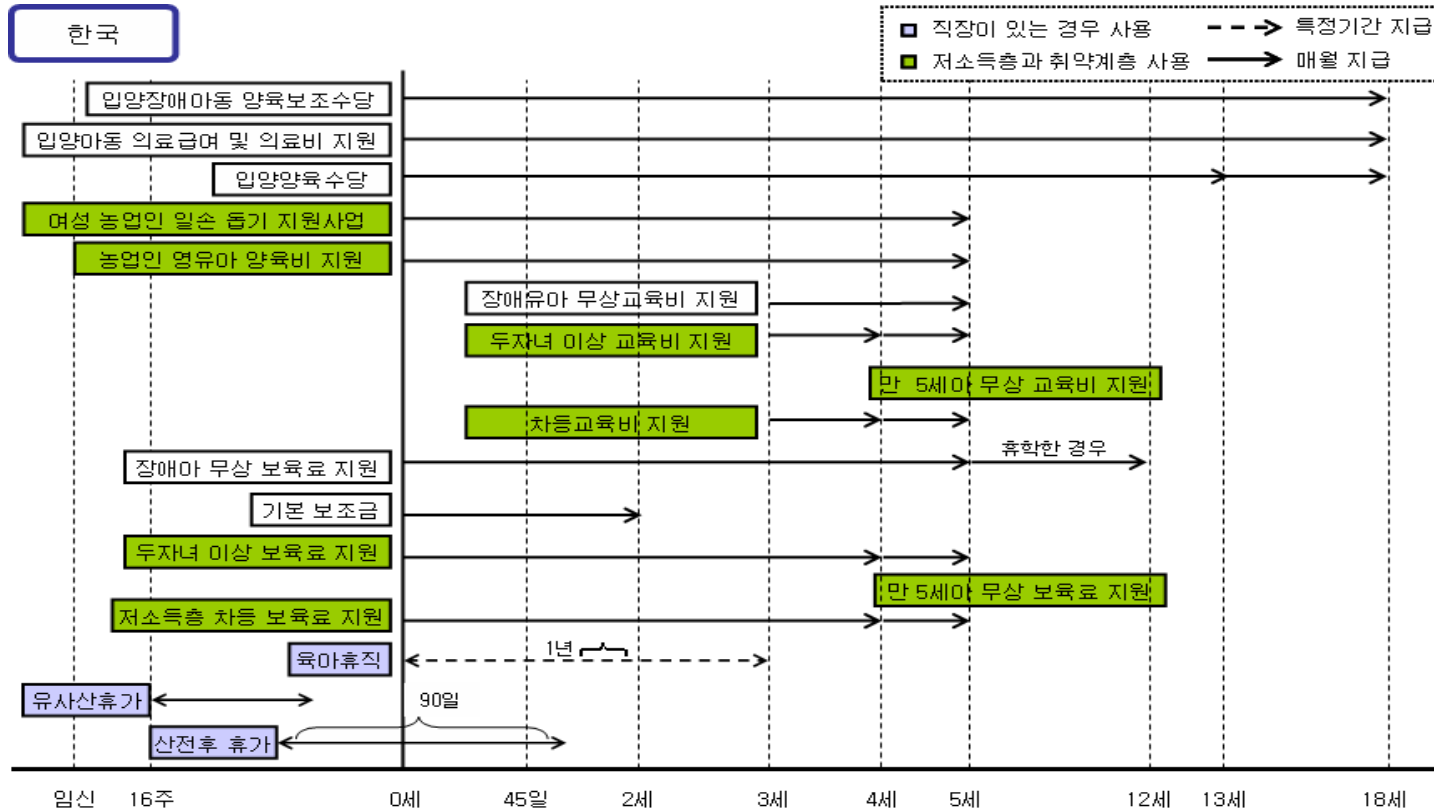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정책으로는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자인 경우 지급되는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 자녀가 장애아인 경우에 지급되는 “장애아 교육수당”,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가족지원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가 개학 준비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개학수당”이 있다. 장애아 교육 수당과 가족지원수당은 자녀 출생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은 출생부터 2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서 3년 동안 지급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우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

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학수당은 자녀가 자녀 연령 6~18세 까지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에 지급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수당 정책은 별다른 중복 규제 없이 다른 수당과 함께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크게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 출산·육아 휴가, 입양 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 연령 만 5세 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 및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두 자녀 모두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촌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금을 직접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이 만 3세~5세이며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양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입양양육수당, 입양 아동 의료급여 혜택 및 의료비 지원,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이 있는데 보통 입양 시점부터 자녀 연령이 18세 될 때 까지 지원이 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보육료/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녀 연령 5세가 될 때 까지만 지급되며, 장애아인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면 5세 까지만 지원이 된다. 다만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 18세 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 육아 휴직은 과거에 자녀의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 최대 1년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08년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는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이 될 때 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다. 출산 전 혜택에 대해서는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한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전후 휴가로서 산후에 45일 이상을 포함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5-8] 한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 제6장 결론

###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 1.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가적 지향 수립

본 장은 결론으로 앞장에서 검토한 사항을 기초로 향후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 이러한 정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대두된 것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가 심각하게 인식하기 전까지 아동 양육의 문제는 요보호 아동 대상을 중심으로 아동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개별 가정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대해 이미 그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겪어 오고 있었다.

프랑스와 스웨덴 같이 아동 양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실로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정 중에서 많은 논란과 시행 착오를 거쳤으며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도 그 만큼의 고통이 수반되었었다. 이 들 국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국가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에 영향을 끼쳐 지금의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스웨덴의 경우 복지 정책이 확장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사회 구조가 우리사회와 비슷하게 보수적인 문화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성 평등과 공보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이 질적으로 우수한 공공 보육 시스템, 높은 여성 고용률, 그리고 양성 평등적인 문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한 국가의 미래상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와 의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어떠한 지향과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인가는 실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그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미래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아동 양육 지원을 할 것인가, 혹은 모성 보호 차원에서 집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아동 양육 지원을 할 것인가, 혹은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떠한 국가상을 위하여 아동 양육 지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미래는 다른 모습과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향점을 수립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의 국제 사회

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하여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극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지향점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지향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저출산 정책 추진을 시작했던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라이프 스타일과 여성들의 사고 방식은 서구의 양성 평등 사상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전통이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이러한 문화지체적인 측면에서 유도된 바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지향점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아동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

앞서 국가간의 비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만 5세까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다.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지원이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확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역시 갖고 있는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부 모두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 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강하고 민간 보육 시설이 공공 보육 시설 보다 낙후된 시설을 갖고 있는 등 인프라에 많은 문

제점을 갖고 있다. 보육 시설의 질적 제고와 접근성 강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실효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층과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수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자녀 가족, 장애아 자녀 가족 혹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농가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단계별로 초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기본적인 수당 외에도 장애아, 입양아, 한부모, 고아 가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당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 수당 지원 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아동 수당을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남아 있을 때 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자녀가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6세가 될 때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부양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남아 있는 연령인 20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수당을 도입할 때 그 대상 연령을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있을 때 까지의 시점으로 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절실하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육아 휴직, 산전후휴가, 그리고 유산사산

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성 보호를 위한 측면과 여성의 육아에 따른 기회 비용 보상 측면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산전후휴가와는 별도의 휴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 출생 후 영아와 산모의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 한해 역시 추가적인 휴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여성의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측면에서도 보다 강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전 후 급여, 육아 휴직의 급여 수준을 현재의 수준에서 보다 높이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다른 육아 관련 휴직을 마련할 때에도 이에 준한 휴직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을 자녀 연령 3세에서 자녀가 보육이 필요한 연령인 만 5세 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육아에 대한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스웨덴과 비슷하게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부인이 출산한 후 필요한 도움 제공을 위해 아버지 출산 휴가 등을 마련해 볼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3.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조직 구축

우리나라에 아동 양육을 위한 정책은 많은 부처가 혼재되어 담당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육료/교육비 지원만 보더라도 보육 시설 이용과 관련한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유치원 이용과 관련한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농어업인 자녀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나 장애아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육가 휴가와 관련한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경우 비슷한 정책이 관할 부처에 따라 나누어져서 추진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스웨덴의 경우, 육아 휴가 정책과 수



당 정책을 스웨덴 국립 사회 보험청에서 일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금고가 아동 수당과 관련한 제반 수당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책에 대해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 각 부처의 의견 조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행정의 비효율을 양산시킬 수 있다.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처가 일관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전국민 대상의 교육과 홍보 강화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 수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현실과 전통적인 문화 사이의 괴리에 의해 촉발된 것이 적지 않은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국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보다 많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리사회 역시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점점 더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여전히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저출산 문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만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아동 양육 지원 정책도 제한적인 효과만을 볼 것이다.

실제로 현재 여성의 육아 휴직 사용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휴가 정책을 마련해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이상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이전에 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저출산 현상 및 양성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 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공익 광고를 통한 홍보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양성 평등적인 가사 및 육아가 필수적인 바 홍보 내용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여성의 육아 휴직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2007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2008년에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동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은 보고서가 쓰여진 2007년 시점에서의 현황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의 양육 지원 정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새로운 양육 지원 정책은 향후 과제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를 언급하였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비교 분석한 것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책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국가 이외 다른 국가 정책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정책을 고찰함에 있어 스웨덴은 주로 스웨덴 국립 사회보험청이 담당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정책은 프랑스 가족수당기금에서 담당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그리고 프랑스는 수당 정책을 중심으로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본 고에서 언급한 정책 이외에도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누락된 스웨덴과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들은 스웨덴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족 정책이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효율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보다 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연명,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투자정책 적용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중앙대 사회복지학과, 2007.
- 류연규,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3호, pp. 233~262, 2005.
- 박세경,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비 부담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111호, pp. 33~49, 2006.
- 박정선, 「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보육 정책의 형성과 발달 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 제5권, pp. 64~96, 1998.
- 손승영, 「여성의 삶의 과정과 남녀관계의 변화」, 『젠더리뷰』, 2007 여름,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07.
- 육아정책개발센터,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2006: 출산과 육아,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
-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포럼, 2007 가을, 6호, 2007.
- 은기수,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02호, pp. 25-35, 2005.
- 이경희 외 공저,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pp. 75~76, 1996.
-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의 미래와 비전」, 정책포럼 자료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7.
- 이선주·박선주·김은정, 『아동수당 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이은아·마경희,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가족’에서 ‘공동체’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문화 정책방향 및 실천적 대안 찾기 토론회 자료집, 2006.
- 이재경, 『저출산의 젠더분석 및 정책대안연구』, 대통령자문고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 이진숙, 연구논문-독일의 공적 가족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한국가족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14집 제3호, pp. 131 ~ 161, 2002.
- 이혜경, 「21세기 복기국가 재편과 여성: 탈가부장적, 다원주의적 사회투자모형을 향하여」, 여성부,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2004.
-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김수정,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 조영자, 저출산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5.
- 주재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3, 2006.
- 최병호·조남훈·김미숙 외,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 홍승아, 「복지국가 모성정책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OECD 18개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스웨덴국립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_\_\_\_\_,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Annual Report 2006”, 2007.
- 싱가포르교육부,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The Edusave Scheme, <http://www1.moe.edu.sg/edusave.htm>, 2004.
- \_\_\_\_\_,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Endowment Scheme - Annual Report for financial year 2004/2005, <http://www.moe.gov.sg/finance/>

- [edusave/report/EdusaveAnnualReport2004.pdf](http://www.edusave.gov.sg/edusave/report/EdusaveAnnualReport2004.pdf), 2005a.
- \_\_\_\_\_,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The Edusave Scheme Fact Sheet, [http://www.moe.gov.sg/corporate/edusave\\_factsheet.pdf](http://www.moe.gov.sg/corporate/edusave_factsheet.pdf), 2005b.
- \_\_\_\_\_,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 Additional support for Singaporeans to pursue further education. 2005c
- 영국 의회(U.K. Parliament), Explanatory notes to Child Trust Funds Act, [www.opsi.gov.uk/acts/en2004/2004en06.htm](http://www.opsi.gov.uk/acts/en2004/2004en06.htm), 2004.
- 프랑스 가족수당금고, “2007년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07)”, 2007.
- Bettio, F, & Prechal, S., *Care in Europe*, Europe Foundation, 1998.
-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cy Press, 1990.
- \_\_\_\_\_,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Gauthier, A. H., & Monna, B. Family Allowan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Historical Landmarks, [http://www.socil.ucalgary.ca/FYPP/images/DUCUMENTS/FA\\_Chronology.doc](http://www.socil.ucalgary.ca/FYPP/images/DUCUMENTS/FA_Chronology.doc), 2002.
- Goh, C. T., <http://stars.nhb.gov.sg/public/viewPDF.jsp?pdfno=gct19930309.pdf>, 1993.
- , <http://stars.nhb.gov.sg/data/pdfdoc/2000082001.htm>, 2000.
-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The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http://www.hrsdc.gc.ca/asp/gateway.asp?hr=en/hip/lld/cesg/publicsection/canada\\_education\\_savings\\_grant\\_general.shtml&hs=cgs](http://www.hrsdc.gc.ca/asp/gateway.asp?hr=en/hip/lld/cesg/publicsection/canada_education_savings_grant_general.shtml&hs=cgs), 2006a.
-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The Canada Learning Bond, [http://www.hrsdc.gc.ca/asp/gateway.asp?hr=en/hip/lld/cesg/publicsection/CESP/Canada\\_Learning\\_Bond\\_General.shtml&hs=cgs](http://www.hrsdc.gc.ca/asp/gateway.asp?hr=en/hip/lld/cesg/publicsection/CESP/Canada_Learning_Bond_General.shtml&hs=cgs), 2006b.
-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 Plan, [http://www.hrsdc.gc.ca/asp/gateway.asp?hr=en/hip/lld/cesg/publicsection/CESP/RESP\\_FAQs.shtml&hs=cgs](http://www.hrsdc.gc.ca/asp/gateway.asp?hr=en/hip/lld/cesg/publicsection/CESP/RESP_FAQs.shtml&hs=cgs), 2006c.
-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Sustainable Policies in an Ageing Europe: A Human Capital Response", 2004.
- Kammerman, S. and A. Kahan, "Child and family policies in an era of social policy retrenchment and restructuring", Paper prepared for the LIS conference on Child Well-being in Rich and Transition Countries, 1999.
- Korpi W.,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rtner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vol. 7(2): 127-191, 2000.
- Leira, A., "Concepts of Careing: Loving, Thinking, and Doing", *Social Service Review*, Vol. 68, pp. 185 ~ 201, 1994.
- Lewis, J.,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shgate, 1998.
- Nancy Folbre, *The Invisible Heart*(2001), "The Golden Eggs", 보이지 않는 가슴 : 돌봄 경제학, 낸시 폴브레 지음, 윤자영 역, 또하나의 문화, 2007.
-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OECD, Paris, 2005.
- OECD,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OECD, Paris, 2004.
- Sherraden, M.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Inc., 1991.
- Sipila, J., *Social Care Services: The Key to the Scandinavian Welfare Model*, Avebury, 1997.

